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이창호
공동연구원 최용환 도수관

N

Y

P

I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최용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도수관**(대구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 교수)
- ▶ 연구보조원 : **이승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작년에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은 정책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적 기틀이 준비되었습니다. 점차 높아지는 청소년 및 청년의 사회적 요구, 정책의 정당성 및 책임성 확보의 측면에서 이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법령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정책평가의 내실화일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실시될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주요 평가지표의 적절한 설정,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과 보상체계 등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이용하여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정책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배점, 청소년참여 및 활동영역에 대한 대표사업평가 강화, 일선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의 보상체계강화, 방문컨설팅강화 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초지자체단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년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의 만족도 등 관련 정책수혜대상 중심의 평가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정책은 현실 정책우선위의 특성상 예산배정의 경직성이 높은 현실입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한 그룹별 평가운영도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추진한 원내 연구진과 도움을 주신 공동연구원 및 전문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가 앞으로 청소년정책평가의 내실화에 기여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더 책임성 높은 정책 속에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2015년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를 토대로 2016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평가지표의 적절성이라든지 평가방법, 평가대상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떤 지표를 주요 평가지표로 설정할 것인지,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과 보상체계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어떤 사업들을 대표사업으로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청소년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10명과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배점 확대, 청소년참여 및 활동영역에 대한 대표사업평가 강화,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보상체계강화, 지자체방문컨설팅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단위까지 평가를 확대할 것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학부모와 청소년의 만족도 등 수용자 평가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대표사업평가지표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가 낮아 관련 지표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은 현실 정책우선위의 특성상 예산배정의 경직성이 높아, 지자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그 정책성과가 차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의 규모를 통제한 그룹별 평가운영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자주 담당자가 바뀌는 공무원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고서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자주 실시할 것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정책평가, AHP, 환류체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뿐 아니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6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하여 2017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청소년시행계획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업무를 시작할 예정임.
-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초점을 둠. 이를 위해 먼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도구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각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핵심과제의 성과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분석하고자 함. 아울러, 평가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환류체계도 파악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분석의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함. 아울러, 청소년정책평가의 특징 및 현황을 정리함.
- 국내외 사례분석 :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 등 사례분석을 통해 청소년정책분석평가체계와 방향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음. 아울러, 스웨덴과 스페인 등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청소년정책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었음.

- 설문조사 :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AHP 분석 실시. 아울러 중앙부처의 경우 52명, 지자체의 경우 시군구포함 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이를 통해 청소년정책평가지표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청소년정책성과나 환경 등을 측정함.
- 질적연구 : 청소년정책전문가 10명, 광역시도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요소, 청소년정책평가지표의 개선점, 청소년정책평가의 방향 등을 인터뷰 함.

3. 주요 연구결과

1) 전문가 대상 AHP 분석

- 청소년정책의 성과요인을 ‘인적 역량’, ‘물적 역량’, ‘제도적 역량’으로 구분했을 때, 전문가들은 ‘인적역량’의 가중치를 39.4%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음.
- 청소년정책의 과정영역에 대한 계층적 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정책성과’의 가중치를 39.7%로 가장 높게 부여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책형성’(가중치 32.7%)이었음. ‘정책집행’은 가중치가 27.6%로 정책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 전문가들은 성과달성도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특히 ‘성과지표의 적절성’의 적절성의 가중치는 63.5%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이는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성과달성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즉,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평가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타당성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2) 중앙부처 공무원대상 설문조사결과

-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명시된 15대 중점과제들이 청소년정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음. 이 중 위기청소년보호 및 지원강화(6.21점), 청소년진로체험 및 자립지원(5.94점),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강화(5.83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음. 반면, 범부처 정책총괄 및 조정기능강화(4.90점)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음. 글로벌, 다문화역량강화 역시 다른 과제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5.12점)를 나타냈음.
- 기존의 개별사업평가지표항목 외에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표로 청소년들의 정책인지도나 만족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에 관해 많이 언급함.
- 청소년정책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나 개선방안을 응답자들에게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청소년정책이 주가 아닌 부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부처별로 차별화된 정책분석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음. 또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정책수요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음. 이와 더불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따라서 부처간 사업의 중복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 지가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사업을 평가하는 주요 평가지표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임.

3) 지자체 공무원대상 설문조사결과

- 11개의 핵심지표에 대하여 CYS-Net 운영비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노력정도,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청소년전담부서운영 순으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반면, 청소년유해환경적발건수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율, 청소년수련시설설치율은 다소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들은 11가지 지표 외에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청소년전담공무원이나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청소년참여나 활동에 관련된 지표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음.

- 대표사업평가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공무원들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용자들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따라서 향후 지자체의 대표사업을 평가할 때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해당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평가요소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임.
-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우수기관에 대해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해외연수, 평가부진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청소년정책의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인적, 제도적 환경이 잘 갖춰졌다고 판단할수록 청소년정책성기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청소년정책의 전문성, 전담조직보유 그리고 청소년정책 홍보와 청소년의 높은 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였음.

4) 인터뷰 결과

- 정책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평가지표가 장기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특히 11개의 핵심성과지표를 상당수가 설치율 위주로 구성돼 있어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평가지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평가지표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음. 더불어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도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
- 반면, 직접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은 청소년정책평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인지 평가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쓸 여유가 없어 다소 평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음. 업무에 쫓겨 평가지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더러 있었음. 특히 공무원들은 대표사업평가지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음. 따라서 청소년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사업평가지표들을 보다 단순화하고 공무원들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들은 대통령표창이나 해외연수 등을 인센티브로 많이 바라고 있었지만 서열화된 평가보다는 컨설팅위주의 평가에 초점을 뒀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무원들도 일부 있었음.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지자체의 합동평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평가가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음.

4. 주요 정책제언

○ 본 연구가 제안한 정책제언은 아래와 같음.

대영역	소영역	정책방향
법제도	청소년기본법	- 정책평가와 관련된 청소년기본법의 보완
평가지표	개별사업평가 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배점 확대
	대표사업평가 지표	- 피평가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표내용을 단순화 - 대표사업보고서작성요령에 대한 교육 강화 - 청소년참여 및 활동영역에 대한 대표사업평가 강화
	핵심평가지표	- 설치를 위주의 평가가 아닌 성과위주의 평가 - 청소년활동이나 참여와 관련된 평가지표의 확대
환류체계	보상	-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보상체계 강화
	컨설팅	- 지자체방문컨설팅 강화
평가체계	평가대상	- 시군구 단위까지 평가를 확대
	평가방식	-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등 수용자 평가 강화
		- 중앙부처의 경우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을 점검
		- 평가대상의 그룹화를 통한 평가방식의 유연화
	평가운영	- '평가운영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운영을 내실화

목 차

제 I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제 II 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목적	13
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15
3. 청소년정책평가의 특징	25
4. 청소년정책분석평가 현황	28
제 III 장 정책평가 사례 분석	39
1. 국내사례 분석	41
2. 국외사례 분석	65
제 IV 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조사 분석	77
1. 청소년정책평가 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	79
2. 핵심평가지표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81
3. 소결	85
제 V 장 중앙부처 공무원 설문조사	87
1. 조사방법 및 내용	89
2. 설문조사결과	92
3. 소결	103

제 VI 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조사	107
1. 조사방법 및 내용	109
2. 설문조사결과	112
3. 소결	129
제 VII 장 전문가집단 및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 분석	131
1. 전문가집단 인터뷰 개요	133
2. 전문가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135
3. 공무원집단 인터뷰 개요	145
4. 공무원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146
5. 소결	156
제 VIII 장 정책제언	157
1. 법제도영역	160
2. 평가지표영역	164
3. 환류체계	175
4. 평가체계	177
참고문헌	185
부 록	191
1. 스페인 지방자치단체 주요 평가지표	191
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전문가 설문지)	199
3.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중앙부처 담당자 설문지)	206
4.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지자체 담당자 설문지)	212
5.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220
6.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공무원 인터뷰 질문지)	223

표 목 차

〈표 Ⅰ-1〉 국내외 사례분석 목록	6
〈표 Ⅰ-2〉 전문가 자문내용	7
〈표 Ⅰ-3〉 양적 연구개요	8
〈표 Ⅰ-4〉 질적 연구개요	8
〈표 Ⅱ-1〉 정책평가의 기준	14
〈표 Ⅱ-2〉 2007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정량평가지표 및 배점	16
〈표 Ⅱ-3〉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운영진단 및 평가모형표	18
〈표 Ⅱ-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지표	21
〈표 Ⅱ-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지표요약	23
〈표 Ⅱ-6〉 청소년정책평가영역	26
〈표 Ⅱ-7〉 중앙부처 시행계획 사업 수 및 예산	29
〈표 Ⅱ-8〉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사업 수 및 예산	30
〈표 Ⅱ-9〉 중앙부처 유형별 대표사업 평가대상 규모	31
〈표 Ⅱ-10〉 영역별 중앙행정기관 평가위원 수	32
〈표 Ⅱ-11〉 그룹별 과제수와 평가위원 수	33
〈표 Ⅱ-12〉 지자체 핵심 평가지표	34
〈표 Ⅱ-13〉 개별사업 평가지표	35
〈표 Ⅱ-14〉 대표사업 평가지표	36
〈표 Ⅲ-1〉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	42
〈표 Ⅲ-2〉 기본계획에 따른 대표지표	42
〈표 Ⅲ-3〉 저출산분야 핵심과제 평가지표	46
〈표 Ⅲ-4〉 시도교육청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50
〈표 Ⅲ-5〉 연도별 달성목표율	51
〈표 Ⅲ-6〉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54
〈표 Ⅲ-7〉 평가지표요소	60

〈표 III-8〉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지표	63
〈표 III-9〉 스웨덴 청소년 정책 평가지표	66
〈표 III-10〉 정량 지표 예시	70
〈표 III-11〉 정성지표 예시	71
〈표 III-12〉 주요 평가영역 및 지표	72
〈표 III-13〉 유럽청소년포럼의 11가지 청소년정책 지표	74
〈표 IV-1〉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지 문항출처	80
〈표 IV-2〉 응답자의 배경	81
〈표 IV-3〉 2016년 청소년정책 시범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 의견 ..	82
〈표 IV-4〉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 계층적 분석(AHP) 결과	83
〈표 V-1〉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90
〈표 V-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중앙부처 업무담당자 설문지 문항출처	91
〈표 V-3〉 청소년 기본법 개정 인지도	92
〈표 V-4〉 15개 중점과제 중요성 인식	94
〈표 V-5〉 개별사업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95
〈표 V-6〉 집단별 평가지표의 적절성 정도	96
〈표 V-7〉 청소년정책사업을 평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97
〈표 V-8〉 평가 환류체계	98
〈표 V-9〉 집단별 평가결과 환류체계	99
〈표 V-10〉 청소년정책 성과	100
〈표 V-11〉 청소년정책 환경	101
〈표 V-12〉 청소년정책 환경별 차이	101
〈표 V-13〉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를 위한 조치나 개선방안	102
〈표 VI-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110
〈표 VI-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설문지 문항출처 ...	111

〈표 VI-3〉 청소년 정책 평가 인지도	112
〈표 VI-4〉 15개 중점과제 중요성 인식	115
〈표 VI-5〉 청소년핵심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116
〈표 VI-6〉 기존지표에 대한 보완내용	117
〈표 VI-7〉 새로운 핵심평가지표 내용	117
〈표 VI-8〉 대표사업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119
〈표 VI-9〉 청소년정책평가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120
〈표 VI-10〉 평가 환류체계	121
〈표 VI-11〉 집단별 평가 환류체계	122
〈표 VI-12〉 청소년정책성과	124
〈표 VI-13〉 청소년정책환경	124
〈표 VI-14〉 청소년정책환경별 차이	125
〈표 VI-15〉 행정구역에 따른 인적 환경의 차이	126
〈표 VI-16〉 행정구역에 따른 물적 환경의 차이	126
〈표 VI-17〉 행정구역에 따른 제도적환경의 차이	127
〈표 VI-18〉 청소년정책성과 분석의 주요변수	127
〈표 VI-19〉 청소년정책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128
〈표 VII-1〉 전문가집단 인터뷰 참여자 인적 특성	134
〈표 VII-2〉 공무원집단 인터뷰 참여자 인적 특성	146
〈표 VIII-1〉 주요 영역별 정책제언 내용	159
〈표 VIII-2〉 바람직한 청소년정책평가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개정방향	161
〈표 VIII-3〉 바람직한 청소년정책평가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방향	162
〈표 VIII-4〉 개별사업 평가배점 조정	165
〈표 VIII-5〉 대표사업 평가항목 개선안	167
〈표 VIII-6〉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167
〈표 VIII-7〉 가칭 ‘평가운영실무위원회’의 기능	184

그 림 목 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9
[그림 II-1] 청소년정책 시범평가체계	35
[그림 III-1] 외국인정책 성과평가체계	43
[그림 III-2] 외국인정책 평가진행 절차	44
[그림 III-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	48
[그림 III-4] 시도교육청 평가체계	52
[그림 III-5] 시도교육청 평가진행절차	52
[그림 III-6] 지자체 합동평가절차	58
[그림 III-7]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절차	62
[그림 III-8]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절차	64
[그림 VI-1] 청소년정책평가 비율	121
[그림 VIII-1] 평가대상의 확대	178
[그림 VIII-2] 청소년평가 추진체계	180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 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뿐 아니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²⁾ 즉, 기존에는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만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있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만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1993년 9월 수립된 이래 현재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년)이 실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5차 기본계획은 크게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추진체계강화 등 모두 5개 영역 15대 중점과제,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12).

시행계획제출에 따라 2015년의 경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에 의거 총 28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계획을 제출하였다(여성가족부, 2015a). 이 기관들이 제출한 세부과제 수는 총 246개로 여성가족부가 80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37개, 문화체육관광부 22개, 보건복지부 18개 순이었다. 1개 과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도 9개에 달해 특정 중앙부처에 청소년정책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총 792개 과제를 제출하였고 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여성가족부, 2015b).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 위주로 사업을

1) 이 장은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최용환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2) 청소년기본법 제14조 참조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C1C5652070EE46339207542472C8AB18|0|K 에서 2016년 1월 21일 인출)

추진하였지만 이제 시행계획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제도화되면서 여성가족부는 2015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시행계획추진실적 분석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여성가족부, 백석대산학협력단, 2015). 이렇게 개발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시범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2장 4절 청소년정책분석평가현황 참조). 즉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개별사업들을 평가하였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별사업 뿐 아니라 대표사업평가, 핵심지표평가도 병행하였다. 당초 201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지만 올해 시범평가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내년도도 시범평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³⁾.

하지만, 시범평가 때 사용된 평가지표의 적절성이라든지 평가방법, 평가대상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청소년정책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및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진행과정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 어떤 지표를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할 것인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방식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보상체계 등 환류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과 관련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여가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범평가체계에 대한 분석을 일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청소년정책평가전반에 대한 평가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도구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핵심과제의 성과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환류체계도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부정책 평가사례를 먼저 파악하였다. 또한 평가지표의 적합성 및 환류체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10명과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면접조사도 실시하였다.

3) 여성가족부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16. 10. 27) 논의 내용임

2. 연구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의 평가는 의무적 활동이 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15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정책시행계획추진실적 분석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하여 2017년부터는 본격적인 청소년시행계획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6년 실시된 시범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각 부처가 연초 제출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로만 진행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7개 광역시, 도가 연초 제출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정량지표로 구성된 11개의 핵심평가지표(자세한 내용은 <표 II-12> 참조), 대표사업평가로 이뤄졌다. 대표사업평가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제5차청소년기본계획 15대 중점 과제 중 하나인 ‘위기청소년지원강화사업’을 지정해 실시되었다.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뉘 각 5명의 평가위원이 대표사업을 평가하였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따른 청소년정책평가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현안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한 평가도구의 타당성 검증과 적용가능성의 확인이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정책의 정부형태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처별 편중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이미 개발된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를 어떻게 조화하고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핵심과제의 성과지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다. 넷째, 이와 같이 실시된 청소년 정책평가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보상체계 등 환류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정책평가의 실천적 관점에서 평가주체인 여성가족부가 원활히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평가지표들이 얼마나 적절한지와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정책평가를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등을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정책분석의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정책분석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2) 국내외 사례분석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 등 사례분석을 통해 청소년정책분석평가체계와 방향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아울러, 스웨덴과 스페인 등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청소년정책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었다.

표 I -1 국내외 사례분석 목록

구분	사례분석
국내	· 법무부주관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보건복지부주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 · 교육부주관 17개 시도교육청 평가 ·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합동평가 · 국민안전처 재난평가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국외	· 스웨덴의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지표 · 스페인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3)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의 경우 모두 여섯 차례 실시하였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뤄진 자문회의는 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분석평가사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어서 일부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질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시된 정책자문회의는 청소년평가와 관련된 청소년기본법 조항의 개선점마련을 위해 법학 교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 I-2 전문가 자문내용

횟수	자문내용	자문진
1	법무부 외국인정책 평가 내용 자문	공무원
2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내용 자문	연구원
3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자문	연구원
4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 자문	연구원
5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설문지 검토자문	지자체 공무원 및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6	청소년평가 관련 청소년 기본법, 관련 시행령 등 개선점 자문	교수

4) 양적 연구

양적 조사의 경우 총 세 집단으로 나뉘 실시되었다. 먼저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정책성과를 위한 요인, 정책과정영역, 성과달성도 평가지표항목 등 여러 영역의 평가항목 중 전문가들이 어떤 영역을 중요시 하는지 측정하였다.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경우 시군구 포함 총 3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정책평가지표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청소년정책성과나 환경 등을 측정하였다.

표 I -3 양적 연구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내용
전문가 AHP 조사	전문가 30명	- 청소년정책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 조사
중앙부처 공무원 조사	공무원 52명	- 청소년정책 평가지표의 적절성, 청소년정책 성과 등 조사
지자체공무원 조사	시군구 포함 353명	- 청소년 정책 평가 지표의 적절성, 환류방안 등 조사

5) 질적 연구

인터뷰는 모두 두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전문가집단으로 정책평가전문가, 청소년학전문가, 현장전문가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청소년정책평가의 방향 등을 질문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17개 광역시, 도 청소년정책담당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모두 12명의 공무원이 인터뷰에 응했다. 대부분 올해 실시된 시범평가를 직접 준비한 공무원으로 구성됐고 인터뷰내용은 청소년정책평가의 필요성, 청소년정책평가방향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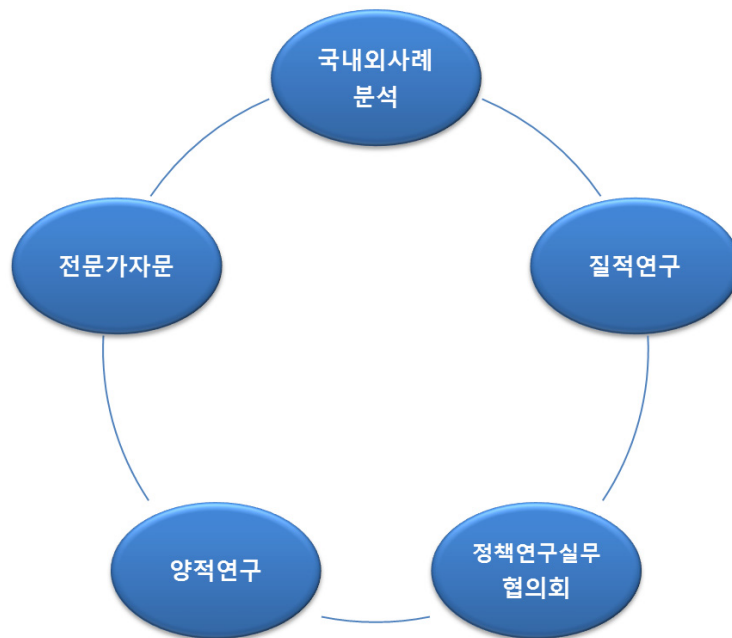
표 I -4 질적 연구개요

구분	대상	인터뷰 내용
전문가 인터뷰	청소년 정책 전문가 등 10명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한 요소, 청소년 정책 평가의 방향 등
공무원 인터뷰	광역시, 도 근무 공무원 12명	청소년정책평가의 필요성, 평가지표의 개선점, 청소년정책평가의 방향 등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공무원과 본원 연구진이 참여하는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한 차례 개최하여 올해 시범평가 현황과 내년도 청소년정책평가의 방향에 관해 협의하였다.

이상에서 추진된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 I-1]과 같다.



【그림 I -1】 연구추진체계

제 II 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목적
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3. 청소년정책평가의 특징
4. 청소년정책분석평가 현황

제 II 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⁴⁾

청소년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평가의 개념과 목적, 청소년정책평가의 특징 그리고 정책평가의 사례, 청소년정책분석 평가현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목적

정책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집행 이후에 실시되며 사회과학적으로 정교한 방법에 기반한 사정(assessing)활동이다(노화준, 2003: 454; 류지성, 2010). 정책평가는 정책기획과 정책개발과 달리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의 결과에 대한 회고적 평정이라는 특징이 있다(이윤식, 2011). 그러나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와 평가연구(evaluation research)는 서로 다르다. 구체적으로 평가연구는 정책평가보다 학술적 성격이 강하며 가설검증이 주요한 목적이다. 그러나 정책평가는 학술적 성격보다는 실제 집행된 정책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박홍윤, 2012).

정책평가는 평가주체, 평가성격, 평가횟수에 따라 구분된다(노화준, 2003: 458-459). 먼저, 평가주체에 따라 정책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분류한다. 그리고 내부평가는 정책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며, 외부평가는 정책결정과 집행을 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박홍윤, 2012).

다음으로 정책평가는 그 성격에 따라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로 나뉜다(노화준, 2003). 구체적으로 형성적 평가는 정책기획자에게 정책관련 프로그램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산출한다. 즉, 형성평가는 집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정책을

4) 이 장은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최용환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대상으로 그 활동을 모니터링 하여 정책프로그램의 수정과 개선을 탐색한다. 그리고 총괄적 평가는 정책프로그램의 일반적 효과성을 평가한다. 이는 이미 집행된 정책이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평가의 단계에 따라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로도 나뉘며 평가에 대한 횟수를 기준으로 1회성의 종합평가, 수시평가 그리고 주기적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노화준, 2003).

정책평가의 주목적은 각종 정책의 운영 및 방향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향상시키고 정책실무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해 왔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이윤식, 2011). 구체적으로 노화준(2003: 479)은 정책평가의 목표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한다. 그는 정책평가의 목적이 정책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정부전략의 효과성에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정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의 마련과 개선에 공헌하는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책임의식을 고양한다. 무엇보다도 공공조직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가장 큰 목적은 ‘효율성’, ‘책임성’, ‘집행’, ‘지식창출’, ‘제도와 공동체의 강화’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정책집행 및 프로그램 수행개선을 위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Scriven, 1995). 따라서 <표 II-1>에 나타난 것처럼,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효과성, 능률성, 적정성, 형평성, 반응성, 적절성 등이 고려된다(류지성, 2010).

표 II-1 정책평가의 기준

유형	평가를 위한 질문	평가기준의 예
효과성	의도한 가치는 성취되었는가?	서비스의 단위
능률성	의도한 가치창출을 위한 비용은?	비용의 단위, 순편익, 비용편익 비율
적정성	정책결과가 문제를 해결한 정도는?	고정비용, 고정효과
형평성	정책 대상 집단에게 비용과 편익은 공정하게 분배되었는가?	파레토 최적기준, 칼도 Hicks기준, 라울의 기준
반응성	정책결과는 정책 대상 집단의 요구, 기호, 가치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시민의 만족도, 조사와 일치정도
적절성	정책결과의 실질적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적합성과 효율성

출처: 류지성 (2010). 정책학, 487쪽을 재인용함.

끝으로 바람직한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계획의 수립과정이 필요한데 박홍운(2012)은 평가 배경, 평가대상, 평가목적, 평가목표, 평가윤리, 평가관리요소가 기본적으로 평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57쪽). 즉 평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평가내용을 정한 후 이에 부합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어떻게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며,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박홍운, 2012).

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선행연구고찰

청소년정책을 평가한 선행연구로서 국내외 다수의 문헌이 존재한다. 그러나 학술적 연구보다는 정책제언중심의 연구보고서가 주를 이룬다. 먼저 국외의 청소년정책평가들은 아동복지정책, 아동보호, 멘토링 프로그램, 청년실업정책 등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Tilbury(2004)는 아동복지정책(Child Welfare Policy)을 중심으로 국가수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책평가 기준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특히 그는 호주, 영국, 미국이 추진한 국가수준의 아동복지정책을 비교한 결과 ‘정책성과의 중요성’, ‘정책개발의 맥락’, ‘정책결과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차이로 청소년정책의 객관적 정책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Gilsing(2007)은 네덜란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대별되는 정부형태가 청소년정책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정책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청소년정책의 일련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는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Gilbert(2012)는 아동보호와 관련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10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아동보호정책의 정책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국가별 아동보호제도 정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그 반면에 가정 외 대리보호(out of home placement)가 필요한 아동은 더욱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객관적 행정정보를 통한 정책평가는 아동보호정책의 목표를 재탐색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De Anda(2001)는 로스앤젤레스 주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정성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청소년정책의 영향력을 분석한 정책평가도 있다. Dietrich(2013)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23개 유럽국이 경제위기상황에서 각 국가가 실시한 청년정책(15세부터 24세)의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및 청년정책은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실업률과 관련된 외적 기준으로만 정책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연구이다. 국내의 청소년정책은 과거 참여정부를 중심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먼저, 성운숙, 임희진(2007)은 전국의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성지표와 정량지표에 따른 정책평가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성평가는 ‘참신성’, ‘집행(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지속성’을 고려하였으며 정량평가는 여건 및 시설, 제도 및 운영분야를 평가하였다(표 II-2 참조). 그리고 각 지표간의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을 통한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소도시보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이 좀 더 성과가 높았으며 이중에서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정책의 성과는 높음에도 유해환경 시설에서는 제일 낮은 점수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성운숙, 임희진(2007)은 2007년 청소년정책평가 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량지표보다 정성지표의 활용을 높일 수밖에 없어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미래의 청소년정책평가는 정성지표보다 정량지표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제안하였다.

표 II-2 2007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정량평가지표 및 배점

분야	2007년도 평가지표	평가자료 작성여부	배 점	
			'07	'05
청소년정책 (제도 및 운영)	공무원 정원대비 청소년관련 담당공무원의 비율	○	11	11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년관련 담당부서의 예산액 비율	○	9	9
	청소년 유해업소관련 단속실적	○	11	11
	인구 1000인당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건수	○	5	5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실적(가중치 부여)	○	12	6

분야	2007년도 평가지표	평가자료 작성여부	배 점	
			'07	'05
	청소년정책 우수사례(제안) 및 체험담	○	6	5
	청소년업무 담당자 사기진작 실적	○	3	2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실적(신규)	○	3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신규)	○	3	—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영 실적(신규)	○	3	—
	소 계('05년 7개 → '07년 10개) <증 3>		66	49
청소년 유해환경 (여건 및 시설)	인구 1인당 담배판매량(삭제)	—	—	4
	인구 1000인당 청소년 범죄건수	—	8	9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	11	12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	○	6	8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의 수 및 객실수	○	3	3
	인구 1000인당 특수목욕장의 수(삭제)	○	—	3
	휴게음식점(다방) 업소수 대비 티켓영업 적발건수(삭제)	○	—	6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의 수	○	6	6
	소 계('05년 8개 → '07년 5개) <감 3>		34	51
합 계(15개)			100	100

출처 : 성윤숙, 임희진 (2007).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221~222쪽에서 인용함.

그리고 김승권 외(2008)는 참여정부의 아동종합대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와 관련한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은 ‘방과후 교실 운영’,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 확대’, ‘저소득층학생 e-learning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학교상담체계 혁신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종합장학정보시스템 구축’, ‘대학장 학제도 개편 및 생활비, 자원봉사 연계 지원’,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보호’, ‘가출청소년 구호 가정복귀’,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 제시’,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취업지원’ 등의 세부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을 ‘계획의 적절성’, ‘집행의 효율성’, ‘성과 달성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전술한 청소년정책들의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

평균 86.5점이었으며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내실화’가 가장 높은 성과의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반면에 그들은 ‘빈곤탈출을 위한 희망경로 제시’가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인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승권 외(2008)는 참여정부의 청소년정책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성격보다 사후처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종합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최재성 외(2004)는 가출, 폭력, 근로권 침해, 약물중독 등의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크게 청소년보호지원정책은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로 평가하였다(표 II-3 참조).

구체적으로 그들은 정성적 평가부문을 ‘조직운영영역(조직미션 및 목적에 대한 직원들의 공유정도, 조직관리, 인사관리)’과 ‘사업운영영역(상담사업, 긴급구조사업, 자활보호사업, 교육훈련사업, 네트워크 구축/홍보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부문은 ‘사업실적영역(상담사업, 긴급구조사업, 자활보호사업, 교육훈련사업, 네트워크구축사업)’과 ‘이용자만족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조직운영 20%, 사업운영과정 30%, 사업실적 25%, 이용자만족도 25%로 산정하였다.

평가결과, 최재성 외(2004)는 청소년보호지원정책이 단기적 관점에서 상당한 정책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조직구성과 인사관리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청소년보호지원정책의 평가모형이 전국적 성격과 서울지역의 성격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어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적시하였다.

표 II-3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운영진단 및 평가모형표

부문	영역(비중)	세부영역	세부기준	측정 방법	기타
정성적	조직운영(20%)	1. 미션·목적 공유도	1.1 명확성 및 이해도	직원 면담 또는 설문 조사	
			1.2 비전제시정도		
			1.3 공유정도		
			1.4 목적 우선순위 일치도		
			1.5 업무수행 중 미션 반영		
		2. 조직관리	2.1 업무분장 명확성		
			2.2 의사결정 합리성		

부문	영역(비중)	세부영역	세부기준	측정 방법	기타
			2.3 의사소통 통로		
			2.4 회의운영방식		
			2.5 문서관리		
			2.6 사업기획 체계성		
		3. 인사관리	3.1 인력충분성		
			3.2 전문성		
			3.3 역할 및 책임의 구분		
			3.4 인사평가방법		
			3.5 업무관리 및 통제		
			3.6 수퍼비전체계		
			3.7 보수교육		
			3.8 보상과 인정		
			3.9 직원사기		
	사업운영(25%)	4. 상담사업	4.1 사업 목표 적절성	직원 면담 및 문서 확인	
			4.2 사업수행 지침 구체성		
			4.3 서비스 및 C명확성		
			4.4 평가체계의 구체성		
		5. 긴급구조	5.1 사업목표 적절성		
			5.2 사업수행 지침 구체성		
			5.3 서비스 및 C명확성		
			5.4 평가체계의 구체성		
		6. 보호자활	6.1 사업목표 적절성		
			6.2 사업수행 지침 구체성		
			6.3 서비스 및 C명확성		
			6.4 평가체계의 구체성		
		7. 교육훈련	7.1 사업목표 적절성		
			7.2 사업수행 지침 구체성		
			7.3 서비스 및 C명확성		
			7.4 평가체계의 구체성		
		8. 네트워크구축	8.1 사업목표 적절성		
			8.2 사업수행 지침 구체성		
			8.3 서비스 및 C명확성		
			8.4 평가체계의 구체성		

부문	영역(비중)	세부영역	세부기준	측정 방법	기타
정량적	사업실적(25%)	9. 상담사업	9.1 1388 위기상담건수	문서 확인	
			9.2 내방상담건수		
			9.3 인터넷상담건수		
			9.4 거리상담건수		
		10. 긴급구조	10.1 성매매청소년구조		
			10.2 가출청소년구조		
			10.3 근로권구조		
			10.4 긴급구조		
			10.5 기타구조		
		11. 보호자활 (쉼터지원)	11.1 법률지원		
			11.2 취업지원		
			11.3 교육지원		
			11.4 인턴십지원		
		12. 교육훈련	12.1 성범죄자 교육		
			12.2 경찰 및 관련기관교육		
			12.3 쉼터, 그룹홈 등의 직원전문교육		
			12.4 기타교육		
		13. 네트워크구축 및 홍보	13.1 기관방문		
			13.2 긴급구조지원단 관리		
			13.3 네트워크 회의		
			13.4 홍보물제작사업		
			13.5 웹진발송		
			13.6 기타		
	이용자만족도 (30%)	14. 물리적 환경 (6문항)	평균 /4.00	전화 조사	전체평균 /4.00
		15. 직원태도 (6문항)	평균 /4.00		
		16. 서비스내용 (9문항)	평균 /4.00		
총계	/100점	16개 세부내용			

출처 : 최재성 외 (2004).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운영평가 및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서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8~10쪽에서 재구성함.

또한 김영모, 류중석(2003)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하여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정책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량지표는 ‘여건’, ‘시설’, ‘제도 및 운영’으로 측정하였으며 정성지표는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우수사례 선정의 방식으로 ‘참신성’, ‘집행(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다(〈표 II-4〉 참조). 그리고 각 평가 지표의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을 통한 계층화분석기법(AHP)을 활용하였다. 평가결과, 청소년유해환경과 관련한 청소년보호정책의 평가는 정량적 자료의 집계가 쉽지 않아 정성적 평가로 보완해야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영모, 류중석(2003)은 정량지표의 측정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정책의 평가는 특정한 소수의 정량지표 편차가 전체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설 및 허가와 같은 편차가 크지 않은 지표를 평가지표로 삼을 경우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표 II-4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지표

구분	분야	2003년 평가지표	평가방법	비고
정량 지표	여건	인구 1인당 담배판매량	전년 대비 증감율 50% 반영	
		인구 1000인당 청소년 범죄건수	전년 대비 증감율 50% 반영	
		인구 1000인당 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전년 대비 증감율 50% 반영	정보위 자체데이터 활용
	시설	인구 1000인당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수	전년 대비 증감율 50% 반영	
		인구 1000인당 숙박업소의 수	전년 대비 증감율 50% 반영	
		인구 1000인당 특수목욕장의 수	금년 데이터 100% 반영	
		휴게음식점(다방) 업소 수 대비 티켓영업 적발건수	금년 데이터 100% 반영	지표 평가방법 개선으로 전년도 데이터 부재
		인구 1000인당 비디오방의 수	전년 대비 증감율 50% 반영	
	제도 및 운영	청소년보호정책 우수사례	우수사례에 대한 관련문서를 제출받아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정성적 지표로 평가
		공무원 정원대비 청소년관련 담당공무원의 비율	담당공무원의 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보완	
		전체 예산액 대비 청소년관련 담당부서의 예산액 비율	예산액 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보완	

구분	분야	2003년 평가지표	평가방법	비고
		청소년 유해업소관련 단속실적	단속대상 유해업소의 수 대비 단속회수, 적발건수, 공무원 정원대비 단속참가인원 각 1/3 반영	
		학교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허가신청 대비 허가비율		신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비 징수실적	부과건수, 과징금 총액, 과징금 징수액수 각 1/3 반영	
정성 지표	참신성	다른 지자체의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얼마나 참신한 정책인가?	100점 만점 중 25점	
	집행 (실행) 가능성	해당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실행)가능한가?		
	파급 효과	정책이 집행되었을 경우 청소년보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가?		
	지속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집행될 수 있는 정책인가?		

출처 : 김영모, 류중석 (200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8쪽에서 인용함.

마지막으로 박수정 외(2013)는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사회안전망(CYS-Net)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보호정책을 평가하였다. 크게 성과지표는 ‘위기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센터의 사업인프라’ 그리고 ‘센터의 사업운영 성과’로 측정하여 49개의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표 II-5) 참조). 평가결과 그들은 충분한 평가예산의 확보, 평가자에 대한 사전교육,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표 II-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지표 요약

위기청소년 지원기반 (18점/16점)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지표성격	비고
1. 지자체장의 관심과 지원 (9점/7점)	1) 지자체장의 리더십과 발전전략	2	절대/정성	공통
	2) 지자체 조례 및 규칙	1	절대/정성	공통
	3) 지자체의 CYS-Net 예산편성 적정성	1	절대/정량	공통
	4) 지자체의 지방청소년상담 사업비 증액율	3	절대/정량	공통
	5) 시도내 시군구 센터 수	2	절대/정량	시도
2. CYS-Net구축 및 운영위원회 활성화(5점)	1) CYS-Net 필수연계기관 구축	1	절대/정량	공통
	2) CYS-Net 운영위원회 구성	1	절대/정성	공통
	3) CYS-Net 운영위원회 활성화	3	절대/정성	공통
3. 청소년정책 담당인력의 전문성(4점)	1)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담당인력의 전문성	2	절대/정성	공통
	2) 센터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감사)와 피드백	2	절대/정성	공통
센터의 사업 인프라 (26점/23점)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지표성격	비고
1. 센터 시설 및 입지(9점/7점)	1) 센터전용공간 기준 충족	2	절대/정량	공통
	2) 센터시설의 안전성	1	절대/정량	공통
	3) 센터시설의 접근성	1	절대/정량	공통
	4) 센터시설 설치 기준 및 운영기준	3	절대/정량	공통
	5) 일시보호시설의 운영	2	절대/정량	시도
2.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5점/4점)	1) 센터의 예산집행의 적정성	2	절대/정성	공통
	2) 센터의 회계관리 적정성	2	절대/정성	공통
	3) 시도센터의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지원	1	절대/정성	시도
3. 센터 인력의 적합성(7점)	1) 센터소장의 적격성	2	절대/정성	공통
	2) 센터직원의 적격성	2	절대/정성	공통
	3) 센터직원의 충분성	1	절대/정량	공통
	4) 센터직원의 고용안정성	1	절대/정량	공통
	5) 센터의 정규직 청소년상담사 수	1	절대/정량	공통
4. 센터의 조직 혁신 및 학습 (5점)	1) 조직혁신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2	절대/정성	공통
	2) 센터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	2	절대/정량	공통
	3) 성 인지 향상교육 이수	1	절대/정량	공통

센터의 사업운영 성과 (61점/54점)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지표성격	비고
1. 관련 기관과 사업연계실적 (9점/7점)	1) 실행위원회 구축 및 운영	2	절대/정량	공통
	2) 1388청소년지원단 활성화	2	절대/정성	공통
	3) 연계지원기관 활용 실적	3	절대/정량	공통
	4) 시도센터의 시군구센터 지원	2	절대/정성	시도
2. 목표달성 및 효과 : 사례 관리 실적 (15점)	1) 개별지원건수	10	절대/정량	공통
	2) 위기청소년 지원사례	5	절대/정량	공통
	3) 자동종결비율	-3	절대/정량	공통 (감점)
3. 목표달성 및 효과 : 사례 관리 실적 (15점)	1) 1388전화상담 건수 증가율	2	절대/정량	공통
	2) 1388모니터링 결과	3	절대/정량	공통
	3) 집단상담과 교육 및 연수서비스 제공시간 증가율	2	절대/정량	공통
	4) 센터홈페이지 활성화	1	절대/정량	공통
	5) 사이버상담 건수 증가율	2	절대/정량	시도
4. 목표달성 및 효과 : 센터 서비스 효과 및 홍보(10점)	1) 센터서비스의 만족도	4	절대/정량	공통
	2) 서비스 수혜자의 심리상태 변화정도	4	절대/정량	공통
	3) 센터의 홍보실적 증가율	2	절대/정량	공통
5. 목표달성 및 효과 : 기타 정책사업실적 (13점/10점)	1) 학교부적응 및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 진입 성과(시도센터 4점, 시군구센터 2점)	4/2	절대/정량	공통
	2) 청소년동반자사업 실적	3	절대/정량	공통
	3) 아웃리치사업실적	2	절대/정량	공통
	4) 또래상담사업 프로그램 실적	1	절대/정량	공통
	5) 연계상담실적	1	절대/정량	공통
	6)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실적	2	절대/정량	공통
	7)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운영	1	절대/정량	공통
6. 상황변화 대응성(4점)	1) 센터별 고유한 특성화사업 실적	2	절대/정성	시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대응	2	절대/정성	시군

출처 : 박수정 외 (2013). 청소년사회안전망 사업(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평가 지표개발, 서울: 여성가족부, 106~109쪽 인용

3. 청소년정책평가의 특징

지난 OECD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세계적으로 성과지향의 행정체계가 강화되었다. 이에 정책평가는 선택적인 활동이 아닌 필수적인 활동이 되었다(박홍운, 2012: 26). 그리고 청소년정책은 국가개발정책과 관련성이 높고 정부예산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착되어 있다(Yuldashev and Sahin, 2015). 또한 최근 청소년정책의 집행과 평가가 정부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은 사회문제의 복잡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Wilcox, 2003). 즉, 청소년과 관련한 사회적 복잡성의 증가는 증거에 기반을 둔 국가수준의 정책대안을 요구한다.

이에 청소년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무부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방정부, 다양한 사회주체들과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Yuldashev and Sahin(2015)은 청소년정책의 ‘집합적 메커니즘’을 강조하여 청소년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정책의 방향을 잘 이끌어야 함을 주장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점차 늘어 청소년정책평가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받아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화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청소년정책평가는 일반 정책평가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정책평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평가는 정책의 성과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촉진하고 청소년개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탐색한다(Morciano et al., 2014). 특히, Yuldashev and Sahin(2015)은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을 위한 근원으로서 건전한 청소년정책의 구조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들은 건전한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평가체계는 다원적 사고와 다문화 가치를 촉진하여 건설적 사회의 이행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Yuldashev and Sahin(2015)은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정책이 정치 환경에 따라 표리부동해서는 안 되며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의 평가와 분석을 강조한다.

이에 김형주 외(2009)는 청소년정책평가모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을 크게 정책추진체계와 고객친화성평가체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표 II-6> 참조). 즉 정책추진체계의 평가를 위해서 정책형성, 정책과정, 정책성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고객에 대한 평가에서 직접 정책수혜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책의 형성, 과정, 성과에 관한 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II-6 청소년정책평가영역

정책평가영역	대영역	소영역
정책추진체계	정책형성관리	- 정책목표의 타당성 - 계획의 충실성
	정책과정관리	- 집행과정 효율성 - 집행과정 적절성
	정책성과관리	- 목표달성도 - 정책효과성
고객친화성	정책집행상의 고객친화성	- 정책형성의 고객친화성 - 정책과정의 고객친화성 - 정책성과의 고객친화성
	정책고객의 평가 (정책수혜자대상 국민의견조사)	- 정책형성에 관한 고객의 평가 - 정책과정에 관한 고객의 평가 - 정책성과에 관한 고객의 평가

출처: 김형주 외 (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연구, 127-130쪽에서 재구성함.

둘째, 계량화되고 척도화된 도구를 통한 청소년정책평가는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기술하는 장점이 있으나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를 평가과정에서 누락할 가능성이 높다(Krenichyn et al., 2007). 현실적으로 청소년정책평가는 청소년들의 활동과 행태를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된다(Krenichyn et al., 2007). 그러나 청소년정책평가는 일반 정책과 달리 청소년을 둘러싼 복잡한 정책 환경이 존재하며 과학적 강직성(scientific rigor)이 높지 않아 학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s)을 통한 정책평가는 한계가 있다(Checkoway et al., 2003). 따라서 개인수준과 정책프로그램의 수준을 모두 고려한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정책평가는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다른 정책보다 평가의 측정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Tiffany et al., 2012). 물론 청소년정책평가의

바람직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은 잠재가치(implicit value)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를 통한 객관적 성과측정은 쉽지 않다(Tilbury, 2004).

넷째, 청소년정책평가는 청소년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반정책과 달리 참여자에 따른 정책효과의 차별성이 더 크다(Sinclair, 2004). 이론적으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수혜의 대상자가 되므로 청소년들이 정책기획과 정책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Cavet and Sloper, 2004). 그러나 이와 같은 청소년정책평가의 이론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잘 구현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헌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정책의 기획과 평가에 비공식적 혹은 자문정도로 참여하고 있다(Head, 2011). 실제로 Riggs and Greenberg(2004)는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평가하면서, 청소년들이 속한 학교의 이질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활동의 차이를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정책평가는 획일화된 평가보다 사업특성과 정책수혜 집단의 특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정책에 대한 단기적 평가는 정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Hotz et al., 2006). 따라서 청소년정책평가는 다른 정책평가와 달리 지속적으로 기간을 둔 정책평가가 필수적이다. 특히 Gilsing(2007)은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은 그 성과가 장기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정책평가에서 시차문제(time lag problem)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4. 청소년정책분석평가 현황

지금까지 정책평가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청소년정책평가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현재 국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정책평가가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청소년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이뤄져 왔다. 즉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이 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정책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평가가 아니라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었다. 그 결과, 시행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청소년정책평가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및 과제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15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사업 수 및 예산규모

2015년도의 경우 28개 중앙부처에서 모두 246개의 사업과제가 여성가족부로 제출되었다(〈표 II-7〉 참조). 이 가운데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등 9개 중앙부처가 단지 1건의 사업과제를 제출하였다. 여성가족부가 80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37개 과제, 문화체육관광부 22개 과제, 보건복지부 18개 과제 순이었다. 이들 4개 부처가 제안한 과제 수는 모두 157개 과제로 전체의 64% 가량을 차지하였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부처가 청소년정책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정부처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4조 8천 9백 여 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용노동부(546,814백만 원), 여성가족부(351,786백만 원), 문화체육관광부(342,394백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표 II-7 중앙부처 시행계획 사업 수 및 예산

구분	'15년 시행계획 과제수(단위: 개)	'15년 예산(단위: 백만원)
계	246	6,757,718
여성가족부	80	351,786
미래창조과학부	3	7,247
교육부	37	4,892,698
외교부	11	4,378
통일부	2	7,578
법무부	15	12,928
국방부	1	52
행정자치부	2	27,723
문화체육관광부	22	342,394
농림축산식품부	4	18,180
산업통상자원부	4	3,081
보건복지부	18	337,230
환경부	1	11,183
고용노동부	8	546,814
국토교통부	4	69,737
해양수산부	1	2,842
국가보훈처	1	3,249
식품의약품안전처	3	3,126
국민안전처	3	9,652
인사혁신처	1	없음
법제처	1	402
경찰청	8	30,160
문화재청	8	1,537
농촌진흥청	1	1,490
산림청	1	19,872
중소기업청	2	34,600
특허청	1	8,373
방송통신위원회	3	9,406

출처: 여성가족부 (2015a).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10쪽에서 재구성.

2)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사업 수 및 예산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5년도 시행계획 사업 수는 아래 <표 II-8>에서 나타나듯이 총 792개였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나누면 평균 46.6개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과제수로는 경북이 75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68개, 제주 64개, 광주 62개, 대구 60개 순이었다. 예산별로 보면 경기도가 62,258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266백만 원, 대전 21,652백만 원 순이었다. 세종시의 경우 과제 수나 예산 면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표 II-8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사업 수 및 예산

구분	'15년 시행계획 과제수(단위: 개)	'15년 예산(단위: 백만원)
계	792	253,090
서울	30	56,266
부산	45	8,863
대구	60	6,706
인천	40	11,250
광주	62	8,716
대전	32	21,652
울산	33	4,203
세종	24	255
경기	49	62,258
강원	55	7,034
충북	68	17,173
충남	33	4,348
전북	39	3,493
전남	49	15,173
경북	75	13,473
경남	34	7,892
제주	64	4,335

출처: 여성가족부 (2015b).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12쪽에서 재구성.

3) 청소년정책분석·평가 현황

(1) 중앙부처

앞서 살폈듯이, 중앙부처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특정 몇 개 부처에 청소년관련 사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사업수가 몇 개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사업수가 극소수에 불과한 기관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비교하여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 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자는 안이 제안되기도 했다(여성가족부, 백석대 산학협력단, 2015).

이 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세 그룹으로 나뉘고 각 그룹에 따라 대표사업을 평가하게 된다(표 II-9> 참조). 즉 I 그룹에 속한 세 개 부처는 부처 당 5건, II 그룹에 속하는 6개 부처는 부처당 3건, III 그룹에 속한 19개 부처는 부처 당 1건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식이다.

표 II-9 중앙부처 유형별 대표사업 평가대상 규모

구 분	대상 중앙부처	대표사업 평가대상 규모
I 그룹 (3개)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처당 5건
II 그룹 (6개)	보건복지부,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문화재청	부처당 3건
III 그룹 (19개)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부처당 1건
3개 그룹	28개 부처	총 52건

출처: 여성가족부, 백석대 산학협력단 (2015).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평가체계 구축 연구, 102쪽

결국 여러 논의 끝에 여성가족부는 2016년 시범평가 때 중앙부처의 개별사업들을 5차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5대 영역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래 <표 II-10>은 5대 영역별 과제수와 평가위원수를 보여주고 있다. 즉 5대 영역별로 각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표 II-10 영역별 중앙행정기관 평가위원 수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	과제 수	평가위원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38)	69개	3명
	1-2. 글로벌·다문화역량 강화(18)		
	1-3.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13)		
2. 청소년참여 및 권리증진	2-1.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6)	38개	3명
	2-2.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18)		
	2-3.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14)		
3. 청소년복지 및 자립지원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20)	61개	3명
	3-2.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17)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24)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11)	67개	3명
	4-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41)		
	4-3.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15)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강화	5-1. 범부처 정책총괄·조정기능 강화(3)	11개	3명
	5-2. 청소년지원 인프라 강화(5)		
	5-3.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3)		
총계		246개	15명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6쪽.

정리하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30개 부처에서 제출한 총 246개 각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만 이뤄지게 된다.

(2)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는 2016년 시범평가 때 17개 광역시도를 6개 그룹으로 묶어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중앙행정기관 개별사업평가와 마찬가지로 각 그룹별로 3명의 평가위원이 지자체가 제출한 2015년 실적자료 평가를 실시하였다(표 II-11 참조). 이에 따라, 18명의 평가위원들은 789개의 개별사업들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표 II -11 그룹별 과제수와 평가위원 수

지방자치단체		과제수	평가위원(단위: 명)
1 그룹	서울특별시(30)	135개	3명
	부산광역시(45)		
	대구광역시(60)		
2 그룹	인천광역시(40)	132개	3명
	대전광역시(32)		
	광주광역시(60)		
3 그룹	강원도(53)	135개	3명
	경기도(49)		
	울산광역시(33)		
4 그룹	세종특별자치시(22)	129개	3명
	충청북도(68)		
	전라북도(39)		
5 그룹	경상남도(32)	125개	3명
	전라남도(48)		
	충청남도(45)		
6 그룹	경상북도(75)	133개	3명
	제주특별자치도(58)		
총계		789개	18명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5).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7쪽.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량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⁵⁾(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구체적인 산식은 부록에 제시된 설문지 참조). 이 지표는 모두 11가지로 구성돼 있고 이 중 CYS-Net 운영비율, 학교밖청소년지원노력, 청소년유해환경적발건수,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등 4개 지표는 행정자치부가

5) 이 평가지표는 여성가족부가 백석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만든 지표(여성가족부·백석대 산학협력단, 2015)를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다듬은 것으로 2016년 시범평가때 사용되었다.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결과를 반영한 것이다(〈표 II-12〉 참조).

표 II-12 지자체 핵심 평가지표
핵심평가지표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율
2)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율
3)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율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율
5) CYS-Net 운영비율*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 (정성평가)*
7)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8)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 전년대비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
10)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여부
1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율

* 표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청소년정책분석·평가 가이드라인, 13쪽.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각 지자체에 5차 청소년기본계획 1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위기청소년보호지원강화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해 이를 정성적으로 평가했다.

정리하면, 지자체의 경우 개별사업평가, 핵심성과지표 평가, 대표사업평가 이렇게 세 영역에서 평가가 이뤄졌다.

위에서 언급한 청소년정책시범평가체계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청소년정책 시범평가체계

(3) 평가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각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래 <표 II-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평가영역은 사업기획(30점), 사업집행(30점), 성과달성도(40점)로 구성돼 있다. 사업기획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해당사업이 얼마나 부합하며 추진체계가 적절히 돼 있는지, 사업내용은 적합한 지로 평가한다. 사업집행은 추진일정이 얼마나 적정한지와 계획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가 얼마나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와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로 평가한다. 이 중 예산집행률과 목표달성률은 정량지표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평가지표들은 정성적인 평가지표로 볼 수 있다.

표 II-13 개별사업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사업기획(30점)	- 기본계획에의 부합성 (10) -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평가항목	평가지표
	- 사업내용의 적합성 (10)
2. 사업집행(30점)	-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 예산집행률 (20)
3. 성과달성도(40점)	- 성과지표의 적절성 (20) - 목표달성률 (20)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가이드라인, 13쪽.

대표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표 II-14 대표사업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정책형성(35점)	- 사전분석, 의견의 충실성 (5) -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성 (5)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적정성 (10) - 추진체계의 충실성 (5) - 자원배분의 적정성 (10)
2. 정책집행(30점)	- 추진일정의 충실성 (5) - 유관기관·정책과의 연계성 (10) -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10) - 정책소통, 홍보, 교육의 필요성 (10)
3. 정책성과(35점)	- 정책목표 및 달성도 (15) - 정책효과성 (20)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청소년정책분석·평가 가이드라인, 13쪽.

구체적으로 정책형성은 사전분석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와 지역특성을 얼마나 잘 살렸는지,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얼마나 적절한지, 추진체계는 충실히 만들었는지, 자원배분은 얼마나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정책집행은 추진일정을 충실히 지켰는지, 유관기관과 얼마나 잘 연계했는지,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잘 실시했는지, 정책소통 및 홍보는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는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와 정책이 정책수요자들에게 얼마나 효과를 미쳤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대표사업평가지표의 경우 대부분 정성지표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4) 청소년정책분석·평가와 관련된 이슈

2017년 본 평가를 앞두고 실시된 시범평가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개별사업을 일일이 평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이다. 엄격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사업에 대한 실적(가령, 예산집행실적, 성과달성률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백 개에 이르는 사업실적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두세 페이지 분량의 실적보고서로 개별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본 평가에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실적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피평가자인 공무원들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중앙행정기관 역시 연 초 제출한 두세 페이지 분량의 추진실적을 근거로 평가를 하고 있어 각 개별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평가나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여성가족부가 핵심평가지표로 제시한 11개의 지표가 과연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지표들 외에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자체의 대표사업을 평가하는 지표들도 대부분 정성지표로 구성돼 있어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평가위원들 간의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즉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는 주요 성과지표(정량지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외국인정책평가나 저출산고령사회정책평가는 부처가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지표들이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정책의 경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성과지표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아 핵심 성과지표들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평가와 관련된 문제 외에도 과연 청소년정책담당공무원들이 평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량, 정성지표의 적합성 등을 분석하였다.

제 III 장

정책평가 사례 분석

1. 국내사례 분석
2. 국외사례 분석

제 III 장

정책평가 사례 분석⁶⁾

청소년정책 성과평가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나 기관이 어떤 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정책평가를 실시하는 곳 중 몇 군데를 선택해 비교적 상세하게 평가진행과정을 기술하고 그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책평가사례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청소년정책분석평가 체계를 세우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1. 국내사례 분석

1) 법무부주관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⁷⁾

(1) 평가목적

본 평가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법무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데 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5).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에서 평가를 주관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평가대상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대상이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5).

(3) 평가기준

6) 이 장은 이창호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7) 평가진행과정에 관한 내용은 2016년 2월 29일 실시된 평가담당자와의 자문회의 내용에 기초한 것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 세부사업추진과제의 실적은 아래 <표 III-1>과 같이 계획수립, 추진과정, 성과목표달성도 등 총 3개 항목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표 III-1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예산과제 배점 (100점)	비예산 과제배점 (70점)
계획수립	과제목적 및 내용의 적절성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목표와 과제목적이 일치하는 지 여부 - 과제내용이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상 5개년 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30	30
추진과정	추진일정의 충실성	- 추진일정이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 정책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대응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10	10
성과목표 달성도	목표달성률	- 목표달성여부	30	30
	예산집행률	-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30	0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 (2015). 2014년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및 자체평가지침, 5쪽.

더불어 일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따른 대표지표에 따른 평가는 <표 III-2>와 같이 실시된다.

표 III-2 **기본계획에 따른 대표지표**

정책목표	대표지표	소관부처
I. 개방	외래 관광객 입국자수	문체부
	해외 전문인력 입국자 수	법무부
	유학생유치수 및 유학종료 후 체류 중인 인원	법무부
	GKS 초청학생 수	교육부
	외국인투자 유치액 (전체 FDI 신고기준)	산업부
II. 통합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및 만족도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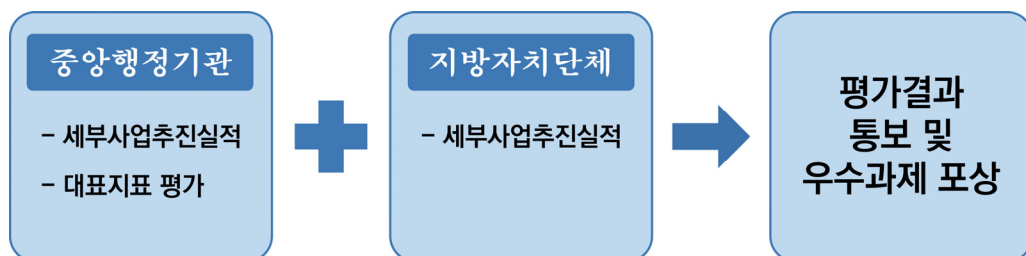
정책목표	대표지표	소관부처
	결혼이민자 경제활동실태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전담기구 운영 실적	행자부
Ⅲ. 인권	이민자 상담실적 및 만족도	법무부
	문화다양성 교육만족도	문체부
	문화다양성지수	문체부
Ⅳ. 안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건수	법무부
	불법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 단속 건수	법무부
	외국인 지문정보 활용 건수	경찰청
Ⅴ. 협력	이민관련 국제회의 참석 횟수	법무부
	출입국지원센터 입주인원	법무부
	재외동포(F-4) 자격 체류자 수	법무부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 (2015). 2014년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및 자체평가지침, 3쪽.

대표지표는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2014년 처음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다른 정부정책 평가처럼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달성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실시되는 2018년부터는 기본계획에 대표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국인들의 분포가 차이가 많이 나 대표지표를 만들지 않았다.

요약하면 중앙행정기관은 각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와 대표지표에 따른 평가를 병행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만 실시하고 있다([그림 III-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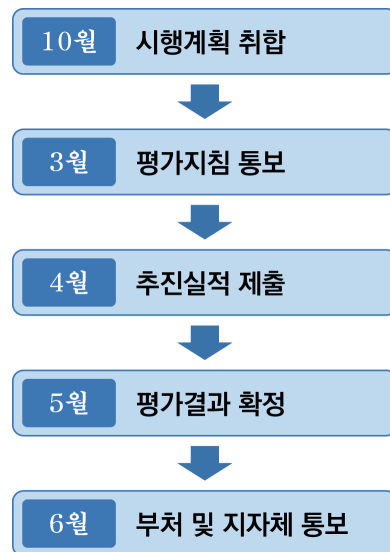


【그림 III-1】 외국인정책 성과평가체계

(4) 평가절차

평가절차는 [그림 Ⅲ-2]와 같이 진행된다. 즉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외국인정책시행계획은 매년 10월에 받는다. 이어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및 자체평가 지침이 통보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4월 중순까지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15). 평가결과는 당해 5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확정된 평가결과는 6월에 해당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된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정책과에서 담당공무원 2명이 평가를 맡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외부 연구기관에 평가용역을 맡길 계획이다.



【그림 Ⅲ-2】 외국인정책 평가진행 절차

출처: 외국인정책위원회(2015).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및 자체평가지침, 4쪽을 토대로 재구성함.

(5) 환류체계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6월 정도에 지자체 평가담당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법무부 외국인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가 마무리되면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사업 중에서 매우 우수한 과제를 3개 정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고 담당공무원 3명에게는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전체 등수는 매기지 않고 우수한 과제가 많은 부처는 어떤 부처인지 또한 우수한 과제가 많은 지자체는 어느 곳인지 발표하는 식으로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6) 시사점

앞서 살펴보듯이, 세부사업과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단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외국인정책 5개년기본계획의 목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와 추진일정의 충실성, 목표 및 예산달성여부로 평가된다. 2007년부터 평가를 실시해 왔지만 대표지표에 대한 평가는 2014년부터 실시돼 아직 평가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해볼 수 있다.

2) 보건복지부 주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평가⁸⁾

(1) 평가목적

이 평가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년~2010년)을 수립한 뒤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6년 현재 제3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이 수립돼 진행되고 있다.

(2) 평가대상

2012년의 경우 중앙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총 226개 과제가 평가대상이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분야별로는 저출산분야의 경우 82개 과제, 고령사회분야 84개 과제, 성장동력분야 60개 과제였다. 2014년의 경우 최종 평가과제수는 저출산분야 91개, 고령사회분야 80개, 성장동력분야 53개 등 총 224개였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2009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3) 평가기준

평가는 크게 실적평가(각 세부과제별 평가 + 부처별 핵심과제평가)와 효과성평가(국민인식조사+전문가조사)로 구분돼 실시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실적평가 중 세부과제 평가는 시행계획수립 시 해당부처에서 설정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느냐와 책정된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로 이뤄진다.

8) 평가진행과정에 관한 내용은 2016년 2월 16일 실시된 평가담당자와의 자문회의 내용에 기초한 것임.

부처별 핵심과제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시 설정된 핵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로 이뤄진다. 가령, 2012년도 핵심과제 성과평가 중 저출산 분야는 <표 III-3>과 같이 모두 18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표 III-3 저출산분야 핵심과제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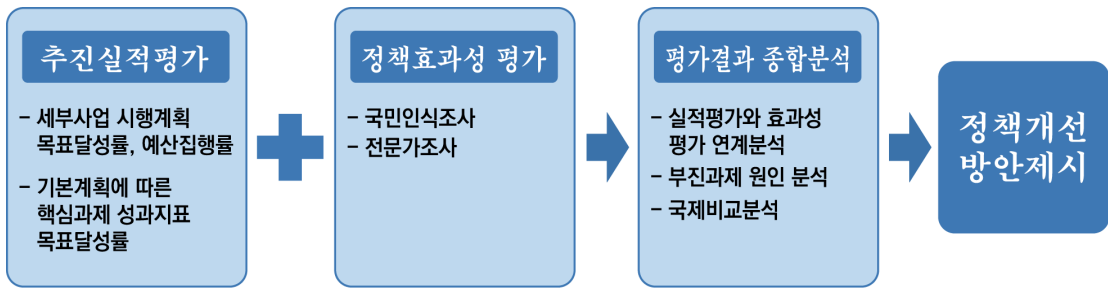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11, '12, '13, '14, '15)	소관 부처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 후 1년 이상 고용유지율(%)	71.8, 72.0, 72.2, 72.4, 72.6	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도입, 0.2, 0.5, 1.0, 2.0	노동부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유연근로제 확산	행정기관 유연근무제 이용률(%)	3, 5, 7, 9, 10	안행부
가족친화 직장·사회 환경조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설치 증가율(%)	7.0, 7.0, 7.0, 7.0, 7.0	복지부 노동부
	가족친화인증 에 기업등 참여 활성화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42, 80, 85, 90, 100	여성부
가족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지원 비율(%)	9.0, 9.5, 10.0, 10.0, 10.0	국토부
	결혼관련 교육 등 서비스	가족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천명)	356.0, 391.6, 430.7, 473.8, 521.2	여성부
임신·출산 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임신·분만 취약지역 수(개소)	48, 42, 36, 30, 25	복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수혜율	13.2, 13.3, 14.6, 16.1, 17.7	복지부
자녀양육 비용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42.3, 50.0, 56.5, 62.0, 62.0	복지부 교육부
다양하고 질 높은	민간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보육시설평가인증율(%)	70, 81.1, 84.3, 89.9, 95.9	복지부

영역	핵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11, '12, '13, '14, '15)	소관 부처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수요자중심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형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률(%)	20.7, 21.8, 22.3, 22.5, 22.6	복지부 교육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연계건수(만 건)	135, 135, 49, 164, 180	여성부
	취학아동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수혜율(%)	35.6, 37.4, 39.5, 42.0, 44.4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수혜율(%)	7, 9, 11, 13, 15	복지부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 지원	청소년시설이용 청소년 수(천명)	35.5, 35.7, 35.9, 36.0, 36.0	여성부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생 활안전 강화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10만명당 명)	5.0, 4.8, 4.7, 4.6, 4.5	복지부 안행부 교육부
	아동학대예방 보호강화	학대피해 아동보호율(%)	0.59, 0.62, 0.65, 0.68, 0.71	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179~180에서 재구성함.

효과성평가는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식이나 실천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영역별 사업이 얼마나 잘 이뤄졌는지도 함께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4년의 경우 미혼자 및 기혼자를 구분하여 저출산정책평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요약하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는 [그림 III-3]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III-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체계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6쪽에서 재구성함.

(4) 평가절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련의 평가과정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자문의견에 따르면, 보통 매년 7월 이후 평가지침을 해당부처에 통보한다. 전년도 예산집행실적이 6월은 돼야 최종 집계되기 때문이다. 이후 해당 부처로부터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받는데, 제출한 실적을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말은 돼서야 취합이 거의 마무리 된다고 한다.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이 부처에서 보내온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추진실적을 제출받는 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가 함께 실시된다.

(5) 환류체계

2월쯤 성과평가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위원회에 상정이 돼 관계부처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과가 공유된다. 중앙부처는 평가결과를 향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평가는 하지만 등급을 산정하거나 순위매기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낸 부처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실정이다.

(6) 시사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에서 눈에 띄는 것은 효과성평가이다. 즉 여러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여론조사와 전문가조사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평가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잘 수립하고 집행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면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체감도를 조사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 면에서 매우 의의 있는 작업이다.

3) 교육부주관 17개 시도교육청 평가⁹⁾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 평가목적

초·중등교육법 9조2항에 의거 교육부는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¹⁰⁾.

(2) 평가대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평가대상이다. 평가는 시교육청(8개)과 도교육청(9개)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3) 평가기준

주요 평가영역은 <표 III-4>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가점 및 감점사항을 제외하면 학교교육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사회기반구축, 교육비부담경감, 교육현장지원역량강화, 교육수요자만족도제고, 시도교육청특색사업 등 모두 7가지이다(교육부, 2015). 평가방식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자율적으로 1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시도 교육청 특색사업은 정성평가위주로 진행된다.

9) 평가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은 평가담당자와의 자문회의(2016년 2월 19일)내용에 기반을 둔 것이다.

10) http://www.lawr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09422974FA684F12A9DADB5B1416CAF10에서 2016년 2월 17일 인출

표 III-4 시도교육청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비고
① 학교교육 내실화 (22점)	1.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6	
	2.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노력	6	정성포함
	3.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4	정성포함
	4. 기초학력 향상 노력 및 학업중단 예방	5	정성포함
	5. 영재교육 활성화	1	
②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रो환경 조성 (21점)	1. 교육분야 안전관리 기반 구축	10	
	2.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8	
	3. 학생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노력	3	신설
③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11점)	1.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1	
	2. 직업교육 체제 강화	5	
	3. 진로탐색진로설계 지원	5	
④ 교육비 부담 경감 (13점)	1. 사교육비 부담 완화	6	정성포함
	2.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3	
	3. 방과후 학교 활성화 및 초등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4	
⑤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10점)	1.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3	
	2. 농어촌 교육지원 강화	2	
	3. 장애인 의무고용 및 편의시설 지원 강화	1	격년제평가
	4. 교장공모제 추진	1	
	5. 시도교육청 「정부3.0」 구현	1	정성
	6. 교원의 교육전념 만족도	2	
⑥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13점)	1. 교육수요자 만족도	8	
	2. 청렴도 및 향상도	5	
⑦ 시도교육청 특색사업 (10점)	1. 교육청 특색사업	10	정성
⑧ 가·감점사항	1. 우수 교육정책 추진 등(가점)	+5	
	2. 기관장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등(감점)	-5	
계		100	

출처: 교육부 (2015), 2016년('15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안), 1쪽.

평가방식은 각 평가지표별 달성목표를 정한 뒤 이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로 이뤄진다. 가령, 학교체육·예술교육활성화 평가지표의 경우 아래 <표 Ⅲ-5>와 같이 연도별 달성목표가 정해졌다. 따라서 2015년의 경우 달성목표가 45%이기 때문에 45% 이상을 달성했으면 매우 우수(1점), 40% 이상~45% 미만의 경우 우수(0.8점), 35% 이상~40% 미만 보통(0.6점), 30% 이상~35% 미만 미흡(0.4점), 30% 미만 매우 미흡(0.2점)으로 평가배점이 이뤄진다(교육부, 2015, 15쪽).

표 Ⅲ-5 연도별 달성목표율

평가지표	'13	'14	'15	'16	'17	'18
1-3-1.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40%	42%	45%	48%	50%	52%
1-3-2. 예술동아리 운영 학교수 비율	85%	88%	90%	95%	96%	97%
1-3-3. 초등체육전담교사지정비율	75%	80%	85%	90%	95%	100%
1-3-4.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노력(정성)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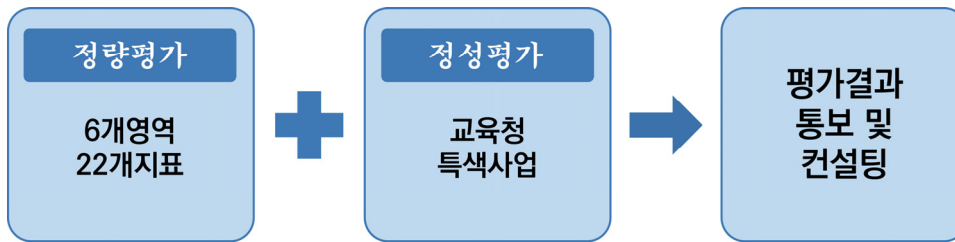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 (2015). 2016년('15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안), 12쪽.

2015년도의 경우 평가비중은 정량평가가 78.7%, 정성평가가 21.3%를 차지해 정량평가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5). 정량지표의 경우 교육통계연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재정회계시스템(Edufine)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참고해 평가가 이뤄진다.

흥미로운 것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인데 조사기관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학생만족도조사는 학생 생활행복도를 측정하는데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사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가 진행된다. 학부모조사의 경우 학생조사와 함께 실시되는데 해당 학생이 직접 집으로 설문지를 가져가 부모에게 부탁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교원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되고 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얼마나 경감됐는지에 대한 조사인데 전화조사로 이뤄지고 조사문항은 5문항이다.

이처럼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는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총 배점은 100점 중 8점이다.

시도교육청 평가체계를 정리해보면 [그림 Ⅲ-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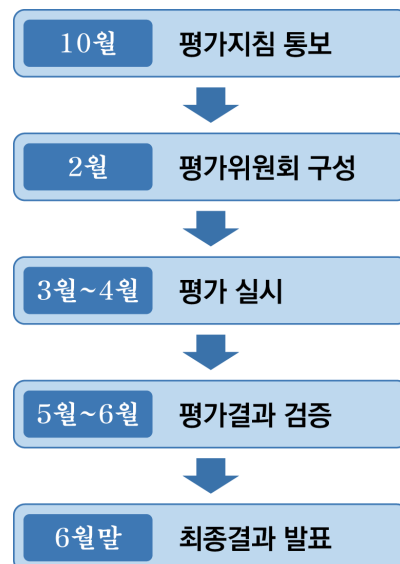


【그림 Ⅲ-4】 시도교육청 평가체계

출처: 연구자가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한 것임.

(4) 평가절차

시도교육청평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교육개발원에서 용역을 맡아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절차는 [그림 Ⅲ-5]에 정리돼 있다. 즉 늦어도 10월까지 평가에 대한 기본계획 및 평가편람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한다. 다음해 2월까지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며 3월~4월 최종평가가 마무리된다. 5월과 6월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6월말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한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이뤄진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두 그룹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7명씩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주로 시도교육청 특색사업과 같은 정성적인 내용이다.



【그림 Ⅲ-5】 시도교육청 평가진행절차

출처: 연구자가 평가담당자와의 지문내용에 기초하여 구성한 것임.

(5) 환류체계

평가가 끝나면 시도교육청별로 미흡한 점, 우수한 점을 분석해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담당자에게 제공한다. 2015년부터는 처음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평가위원 중에 2명을 선정하여 17개 시도교육청 평가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평가전반에 대한 총평과 교육청별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평가가 이뤄지면 평가결과에 따른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시 지역과 도 지역 별로 우수교육청만 발표를 하고 있다. 아울러 앞서 제시한 7개 평가영역별로 우수교육청을 발표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 마다 특별교부금에서 큰 차이가 난다.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과 최하점수를 받은 기관에서 70억 가량 특별교부금 차이가 난다고 한다.

(6) 시사점

평가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차이가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특색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흥미롭다. 각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우수 사업은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상호 공유되고 있고 그 결과물은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된다.

4)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합동평가

(1) 평가목적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지자체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

(2) 평가대상

17개 시도가 평가대상이며 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평가기준

<표 III-6>에 나타난바와 같이, '15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는 총 9개 분야 26개 시책, 91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안전행정부, 2014). 9개 분야는 일반행정, 복지사회,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 III-6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구 분	평가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1 일반 행정 분야	1-1. 인사·재정관리 (12)	1-1-1. 균형인사실적	3	12.0
		1-1-2. 공무원 노사관계	3(2)	4.2
		1-1-3.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2	5.0
		1-1-4.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효율화	4	14.7
	1-2. 대민서비스 개선 (8)	1-2-1.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및 만족도	4	16.6
		1-2-2. 자원봉사 활성화	1	4.5
		1-2-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3	12.2
	1-3. 행정역량 제고 (10)	1-3-1. 갈등해소 노력	1	5.3
		1-3-2. 정보화 추진 노력도	4	14.1
		1-3-3. 기록관리 운영실적	3	7.9
		1-3-4. 행정지식 활용실적	2(1)	3.5
	소계(3개 시책)	안행부 등 3개 부처, 11개 지표	30(3)개	100%
2 복지 사회 분야	2-1. 지역복지기반 확충 (6)	2-1-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3	14.7
		2-1-2. 자활사업 활성화	2	9.8
		2-1-3.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1	7.6
	2-2. 기초적 복지서비스 추진 (8)	2-2-1. 기초생활보장 업무 적절성	4	21.4
		2-2-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1	5.8
		2-2-3.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	2	14.4
		2-2-4. 요보호아동 서비스	1	4.1
	2-3. 법질서 확립 (6)	2-3-1. 과태료 징수 실적	2	8.9
		2-3-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실적	2	6.7
		2-3-3. 셉테드 운영 실적	2	6.6
	소계(3개 시책)	여가부 등 3개 부처, 10개 지표	20개	100%

구 분	평가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3 보건 위생 분야	3-1. 응급의료 관리(5)	3-1-1. 응급의료 적정 관리	3	11.8
		3-1-2. 적정 응급환자 이송실적	2	7.1
	3-2. 건강 증진 및 식·의약품 관리 (11)	3-2-1. 건강증진 사업 운영실적	3	15.6
		3-2-2.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실적	1	4.0
		3-2-3. 정신보건 관리	3	10.1
		3-2-4. 식·의약품 관리	3(1)	13.5
	3-3. 질병관리(11)	3-3-1. 감염병 관리실적	6	15.1
		3-3-2. 예방접종 실적율	2	8.7
		3-3-3. 암·결핵관리	3	10.4
		3-3-4. 극한기온 감시체계 운영실적	1	3.7
	소계(3개 시책)	복지부 등 2개 부처, 10개 지표	27(1)개	100%
4 지역 경제 분야	4-1. 중소기업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8)	4-1-1. 중소기업 지원실적	5	20.3
		4-1-2. 사회적 기업 육성	3	12.3
	4-2. 지역경제 기반강화(11)	4-2-1. 지역 노사민정 협력확대	2	8.5
		4-2-2.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실적	2	8.3
		4-2-3. 과학기술 진흥 및 지역통계 활성화	4(1)	11.9
		4-2-4. 공정거래질서 확립	3	9.6
	4-3. 서민생활 안정(4)	4-3-1. 전통시장 및 직거래 장터 확대	2	10.2
		4-3-2. 지역물가 관리실적	2	18.9
	소계(3개 시책)	노동부 등 10개 부처, 8개 지표	23(1)개	100%
5 지역 개발 분야	5-1. 지역 인프라 강화(9)	5-1-1. 지하시설물 전산화 및 지적재조사 추진실적	2(1)	7.6
		5-1-2. 지역발전 정책 추진실적	2	14.0
		5-1-3.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실적	3	21.4
		5-1-4.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자전거 사업 추진실적	2(1)	8.7
	5-2. 농축산 발전(20)	5-2-1. 농정업무추진 실적	5(4)	7.2
		5-2-2. 농촌지도사업(부분평가)	4(4)	0.0
		5-2-3. 대가축 방역관리	2(1)	9.8
		5-2-4. 중가축 방역관리	2	16.5
		5-2-5. 소가축 방역관리(부분평가)	2(2)	0.0
		5-2-6. 구제역 방역	3(1)	14.8
		5-2-7. 축산물 관리(부분평가)	2(2)	0.0
	소계(2개 시책)	국토부 등 6개 부처, 11개 지표	29 (16)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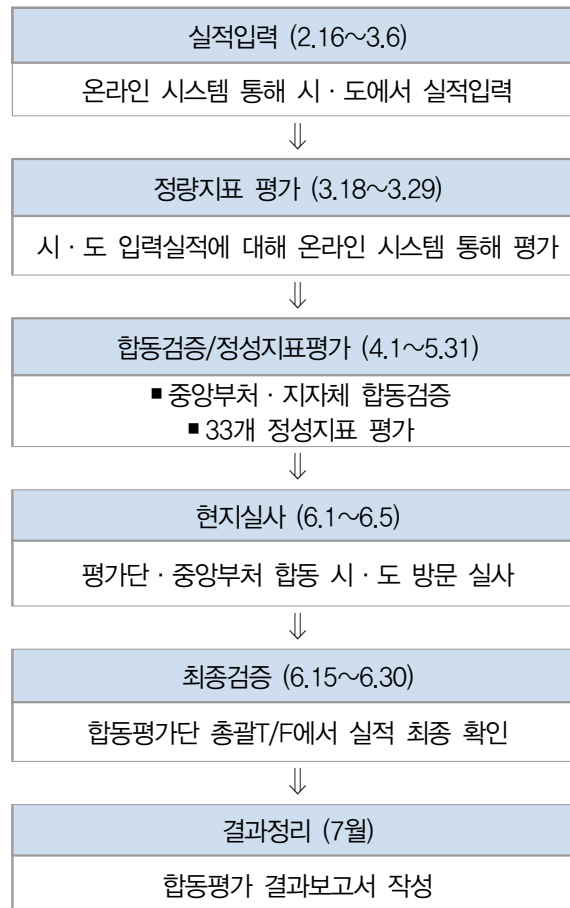
구 분	평가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6 문화 여성 분야	6-1.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7)	6-1-1.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 활성화	2	9.4
		6-1-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2	7.4
		6-1-3. 지역 문화·예술 육성	2	13.8
		6-1-4. 국어사용 활성화	1	4.7
	6-2. 지역 체육·관광 활성화(6)	6-2-1.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	1	5.7
		6-2-2. 스포츠강좌 이용권 추진실적	1	4.7
		6-2-3. 주요경기장 운영활성화(부분평가)	3(3)	0.0
		6-2-4. 관광객 유치 노력	1	7.7
	6-3. 여성·가정 시책 강화 (12)	6-3-1. 일과 가정의 양립	3	12.6
		6-3-2. 여성 권익증진	2	9.2
		6-3-3. 청소년 보호서비스	3	12.1
		6-3-4. 양성평등 추진실적	4	12.7
	소계(3개 시책)	문광부 등 3개 부처, 12개 지표	25(3)개	100%
7 환경 산림 분야	7-1. 환경관리 일반(8)	7-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	2	8.8
		7-1-2. 친환경 시책 추진 실적	3	9.2
		7-1-3. 전력소비 절감 및 기후변화 대응	3	14.6
	7-2. 대기·수질· 폐기물 관리(8)	7-2-1. 대기질 개선 추진성과	2	10.0
		7-2-2. 사업장 대기·수질관리 실적	2	9.7
		7-2-3.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정책 추진	4	12.2
	7-3.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방지(10)	7-3-1.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실적	3(1)	12.0
		7-3-2. 산림휴양복지 및 도시녹화 추진실적	2(1)	6.4
		7-3-3. 산림재해 방지	5(1)	17.1
	소계(3개 시책)	환경부 등 3개 부처, 9개 지표	26(3)개	100%

구 분	평가시책 (세부평가 지표수)	평가지표	세부 지표수	가중치 (%)
8 안전 관리 분야	8-1. 안전문화 정착(11)	8-1-1. 안전모니터 운영실적	2	7.8
		8-1-2. 공공부문 산업재해 예방	2	9.7
		8-1-3.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안전	4	22.1
		8-1-4. 풍수해 및 농업재해 예방	3(2)	6.0
	8-2. 소방안전 기반강화 (3)	8-2-1. 소방장비 보강	1	7.4
		8-2-2. 소방대원의 전문성 향상	2	11.6
	8-3. 비상대비 강화(11)	8-3-1. 비상대비 기반구축	5(1)	19.1
		8-3-2. 민방위 운영 효율화	3	7.4
		8-3-3. 비상대비 자원관리	3	8.9
	소계(3개 시책)	소방방재청 등 7개 부처, 9개 지표	25(3)개	100%
9 중점 과제 분야	9-1. 비정상상의 정상화(9)	9-1-1. 공공부문 윤리 확립	2	12.9
		9-1-2. 재정낭비 근절	3	11.2
		9-1-3. 불공정관행 등 기업활동 개선	4(1)	7.9
	9-2. 일자리 창출(9)	9-2-1. 지역일자리 창출	7	21.9
		9-2-2. 여성취업 지원	2	7.1
	9-3. 사이버 및 재난안전 관리(15)	9-3-1. 재난관리 재정기반 구축	3(1)	7.3
		9-3-2. 재난징후 정보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	2(1)	4.7
		9-3-3. 재난대응 협력역량 강화	3	9.9
		9-3-4.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실적	2	6.0
		9-3-5. 유도선 및 해양안전 관리실적	3(2)	3.3
		9-3-6. 사이버 안전관리	2	7.8
	소계(3개 시책)	국민권익위 등 10개 부처, 11개 지표	33(5)개	100%

출처: 안전행정부 (2014). 20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10~13쪽.

(4) 평가절차

평가는 [그림 Ⅲ-6]에 나타난대로 진행된다. 즉 시도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입력하면 합동검증이 이뤄지고 이어서 현지 실사가 진행된다. 실사가 끝나면 합동평가단이 실적을 최종 확인하게 된다. 평가지표가 많다보니 평가위원도 거의 200명에 달한다. 평가는 2월부터 7월까지 거의 6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그림 Ⅲ-6】 지자체 합동평가절차

출처: 안전행정부 (2014). 20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7쪽에서 재구성.

(5) 환류체계

평가가 끝나면 평가결과는 시와 도를 구분하여 분야별, 시책별 등급(가, 나, 다 등급으로 구성)이 공개된다(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2015). 아울러,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컨퍼런스가 개최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한해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우수사례는 책자로 발간돼 각 시도의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된다.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지급되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된다. 재정인센티브 지원액은 2011년 300억, 2012년 300억, 2013년 140억, 2014년 185억이었다(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2015).

(6) 시사점

지자체 합동평가는 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논의한 시도교육청 평가처럼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등급도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5단계가 아닌 3단계(가, 나, 다 등급)이다(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2015).

5) 국민안전처 재난관리평가

(1) 평가목적

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지자체의 재난관리업무를 2005년부터 매년 점검하고 있다(국민안전처, 2016). 동법 제33조 2항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명시화하고 있다.

제33조의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6,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2. 제25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3.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

출처: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D695BB2F16874DD5BE92A88C8EFBB170|0|K 에서 2016년 3월 18일 인출

(2) 평가대상

2015년도 지자체 평가의 경우 17개 시도 및 우수 시·군·구 30개 등 총 4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국민안전처, 2016).

(3) 평가기준

평가지표는 <표 III-7>에 나타난바와 같이, 개인역량, 재난관리 부서역량, 재난관리 네트워크역량, 기관역량, 가·감점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75개 지표로 구성돼 있고 대부분 정량지표이다(국민안전처, 2016).

표 III-7 평가지표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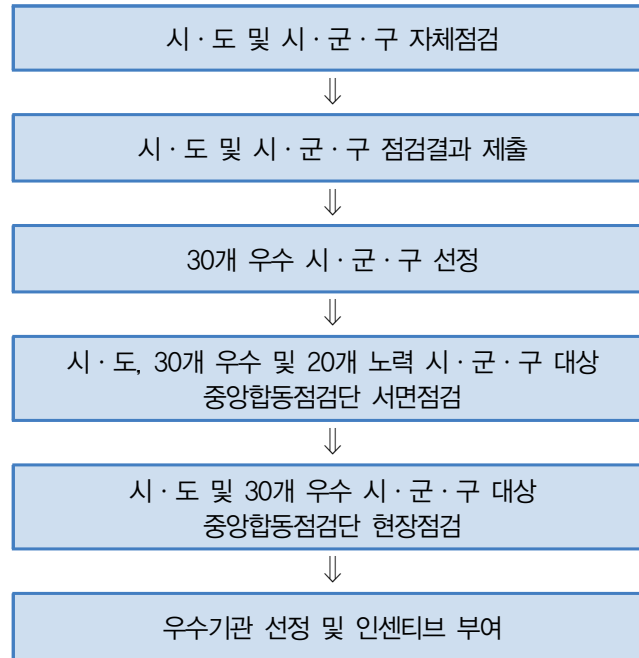
구 분		역량 구성요소	주요지표	지표수
계				75
1.개인 역량	1-1. 개인역량	재난대비 업무관련 공무원의 업무지식 능력, 전문성 재난관리부서 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 등	- 재난발생 시 재난업무 담당자 책임과 역할 사전숙지 정도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적 등	4
2.재난 관리 부서 역량	2-1.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수립	재난대비 비전 및 목표(계획) 재난대비 비전달성 위한 핵심전략 이해/실천 역량	-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대책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 등	27
	2-2. 재난관리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	재난대비 수요에 대응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작물리적 토대 재난대비 관련 조직 및 인사관리 재난대비 관련 업무의 시스템, 의사소통 구조	- 재난관리 업무담당자 전문화 실적 - 기상특보시 재난관리시스템 17개 분야 SOP가동 실적 - 안전신문고 처리 활성화 실적 등	
3.재난 관리 네트 워크 역량	3-1.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국민과 유관기관단체 간 필요한 지식, 기술, 자질의 효율적 활용	- 재난경험자 심리안정지원 실적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실적 등	18
	3-2. 구성원 간 상호협력 체계	재난대비 단체 등이나 주민들이 참여와 활동 요구,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등	- 유관기관 합동근무 실적 - 안전문화운동 추진실적 - 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 실적 등	

구 분	역량 구성요소	주요지표	지표수
4.기관 역량	4-1. 기관장 리더십	기관장 리더십 등 - 부기관장 이상 풍수해폭염 등 취약지역 점검 및 홍보실적 - 부기관장 이상 인터뷰 실적 등	16
	4-2. 행·재정적 지원	재난대비 위한 예산확보 실적 등 - 재해예방사업 예산투자실적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등	
	4-3. 교육훈련 개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실적 등 - 대국민 및 공무원에 대한 재난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 교육프로그램 개발실적 등	
	4-4. 혁신	국내외적 재난환경 변화 대응능력 -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여부 - 미흡사항 개선실적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사업장 점검결과 지적사항 개선실적 등	
5. 가감점	5-1. 가점	재난관련 수범사례 및 특수시책 - UN ISDR캠페인 추진실적 등	10
	5-2. 감점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 재난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	

출처: 국민안전처(2016). 국민안전처, 2015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결과 공개, 6쪽.

(4) 평가절차

점검대상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등 총 243개이지만 자체점검결과를 토대로 시도에서 30개 우수 시군구를 추천하면 17개 시도 및 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단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그림 III-7) 참조). 현장평가는 1월말쯤 진행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3월 중순에 발표된다. 중앙합동평가단은 민간전문가 10명, 공무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국민안전처, 2016).



【그림 III-7】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절차

출처: 국민안전처(2016), 국민안전처, 2015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결과공개, 5쪽.

(5) 환류체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는 크게 재정인센티브와 행정인센티브로 나뉘어 진행된다(국민안전처, 2016).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 8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기관표창이 이뤄진다. 평가결과 는 광역 시·도, 시·군, 자치구로 구분해 각각으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장려기관을 발표한다.

(6) 시사점

시군구 평가의 경우 226개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각 광역시도가 추천한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광역시도, 시군, 자치구로 구분해 우수기관을 발표하는 것도 참고할만하다.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정량지표로 구성돼 있어 평가기간이 3개월도 채 안 걸리는 것도 다른 평가와 구분되는 점이다.

6)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¹¹⁾

(1) 평가목적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에 의한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정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실시되고 있다(사회보장위원회, 2016. 1).

(2) 평가대상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며 2015년도 시행계획 평가의 경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40개 과제, 일을 통한 자립지원평가 37개 과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23개 과제 등 모두 200개 과제가 평가대상이었다(사회보장위원회, 2016. 1). 담당자에 따르면 1년 동안의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다음 연도 2월 정도에 별도로 추진실적을 제출받았다고 한다. 실적자료의 분량은 사업별로 3~4페이지이다.

(3)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표 III-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3개 분야 9개 평가지표로 구성돼 있다. 즉 사업개요, 사업추진과정, 사업성과 달성도 등 3개 영역에서 양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표 III-8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지표

평가부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1.사업개요(30)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10)	- 기본계획과 사업 목적·내용의 적합성 여부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10)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 사업 추진체계의 구체성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10)	- 세부사업 추진내용의 적합성
2.추진과정(30)	추진일정의 적절성(10)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관리의 적정성(10)	- 사업 추진상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예산집행 실적(10)	- 계획대로 예산 집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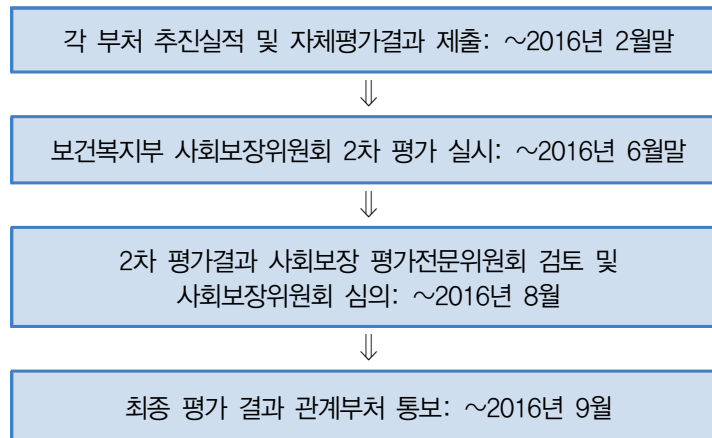
11) 평가진행과정에 대한 내용은 평가담당자와의 이메일 자문(2016년 4월 25일)내용에 기반을 둔 것이다.

평가부분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3.성과 달성도(40)	성과지표의 적절성(15)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의 수준(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10)	- 성과목표치 산정의 합리성 및 적극성
	목표달성도(15)	- 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출처 : 사회보장위원회(2016.3).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중간평가 제안요청서.

(4) 평가절차

평가절차는 [그림 Ⅲ-8]에 나타난 것처럼, 관계부처의 1차 평가와 보건복지부의 2차 평가로 진행된다(사회보장위원회, 2016. 1). 즉 소관부서에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한 뒤 평가결과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평가를 맡은 담당자에 따르면 2015년도의 경우 영역별로 평가를 실시했고 각 영역별 평가위원은 3~4명으로 구성했으며 평가위원에 대한 집단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평가책임자가 평가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림 Ⅲ-8】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절차

출처: 사회보장위원회(2016.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20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4쪽.

(5) 환류체계

시행계획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돼 심의되고 확정된다(사회보장위원회, 2016. 1). 이후 최종평가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되며 관련부처는 평가결과를 내년도 시행계획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6) 시사점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각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를 세분화된 지표로 포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시행계획 외에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국외사례 분석

1) 스웨덴의 청소년정책 분석 · 평가지표

스웨덴은 13세~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다(Youth Partnership, 2014). 정부기구인 스웨덴 청소년과 시민사회위원회(The Swedish Agency for Youth and Civil Society)가 스웨덴 청소년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래 <표 III-9>에 나타나듯이, 근로와 주거, 경제와 사회적 취약성, 신체 및 정신건강, 영향과 대의권, 문화와 여가, 교육 및 학습 등 모두 6가지 영역에서 50여개의 지표가 청소년정책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영향과 대의권 영역에 가장 많은 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정치적 활동참여정도, 정치나 사회, 국제이슈에 대한 관심정도, 선거에서 후보로 출마하거나 당선되는 여부, 선거투표참여정도, 지역정책개발에 대한 참여정도가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근로와 주거영역도 많은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주거형태, 실업기간, 회사운영여부, 니트족 비율 등이 주요 평가항목들이다.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에는 마약경험정도, 자살경험여부, 차별경험정도, 주관적 삶의 질 수준, 일일 흡연량, 도박여부, 알코올섭취 등이 주요 평가항목들이다.

표 III-9 스웨덴 청소년 정책 평가지표

구분	지표
근로와 주거 (Work and accommodation)	노동시장 프로그램 참여 후의 근로 또는 학업 (In work or in studies after participating a labour market program)
	3개월 이상의 실업 (Unemployed for more than three months)
	주거 (Lodging):
	· 세입자 (Tenant)
	· 세입기간 (Tenancy)
	· 소유권 (Ownership)
	부모님과의 동거 (Still living in the parental home)
	회사운영 (Runs own company)
	직장경험에 따른 영향 (Experienced influence at the workplace)
	실업 (Unemployed)
	실업의 평균 시간 (Median time of unemployment)
	이웃 간의 불안감 (Precarious in the neighborhood)
	생활비용을 포함한 학자금 대출 경험 (Finds that student loan covers the costs for living)
	근로와 학업을 모두 하지 않음 (Neither work nor study) (NEET)
경제와 사회적 취약성 (Economic and social vulnerability)	부채 (In dept)
	구치소 경험 (In detention center)
	사회적 지원을 받음 (Receive social support)
	근로능력 저하에 따른 보상 (Gets compensation for reduced work capacity)
	범죄경력 (Guilty of crime)
	저소득계층 (Low financial standard)
	부채 회생 (Subject of debt recovery)
	범죄의 피해자 (Victim of crime):
	· 거친 폭력 (Rough violence)
	· 위협 (Threat)
	· 가벼운 폭력 (Mild violence)
	· 폭행 (Assault)
	· 강도 (Robbery)

구분	지표
	· 절도(Theft)
	· (범죄대상)사기 ((Subject to) fraud)
	· (범죄대상)성범죄 ((Subject to) sexual offenses)
	치명적 폭력 노출 (Exposed to lethal violence)
	퇴거 또는 퇴거 위협 (Evicted or threatened with eviction):
	· 퇴거위협 (Threatened with eviction)
	· 퇴거 (evicted)
신체 및 정신 건강 (Physical and mental health)	마약경험 (using drugs)
	자살시도 (committed suicide)
	BMI 수치 30이상 (BMI over 30)
	클라미디아 (AIDS와 매독 외에 유일하게 STI형태로 등록정보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Has chlamydia (the only form of STI we have register based information on, besides AIDS and syphilis))
	차별의 경험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주관적 삶의 질 (Subjective well-being)
	심리적 · 정서적 증상 (Psychological and psychosomatic symptoms):
	· 심리적 증상 (Psychiatric symptoms)
	· 정서적 증상 (Psychosomatic symptoms)
	알코올 위험의 위험소비자 (Risk consumer risk of alcohol)
	1일 흡연량 (Smokes daily)
	도박 (Gambling)
	여가시간 내 신체적 비 활동 (Physically inactive during leisure time)
	자살시도이후 치료간호 (Nursed in hospital after suicide attempt)
영향과 대의권 (Influence and representation)	위임 기간 중 사임 (Resigned during the mandate period from):
	· 시의회 (City council)
	· 군 · 구의회 (The County Council)
	· 국회 (Parliament)
	정치적 활동 참여 (Participated in political activities):
	· 정치적 신조 소유 (Carries political symbols)

구분	지표
	· 인터넷 상 토론 (Debates on the internet)
	· 시위 참여 (Participates in demonstrations)
	· 불매운동 참여 (Participates in boycotts)
	· 정치적 모임 참여 (Participates in political meetings)
	· 기관에 지원금 지원 (Gives money to an organization)
	· 정치인과 교우 (Contacts a politician)
	· 공직자와 교우 (Contacts a civil servant)
	· 기구의 회원 (Member of a Organization)
	· 의식적 소비 (Conscious consumption)
	· 신문 게재를 위한 편지 작성 (Writes letters to be published in a newspaper)
	· 청원 (Signs a petition)
	· 인터넷 상 (정치적)의견 공유 (Shares (political) opinions on the Internet)
	가족에서의 영향 경험 (Experienced influence in the family)
	정치·사회·국제이슈에 대한 관심 (Interested in politics, society and international issues):
	· 국제 이슈에 대한 관심 (Interested in international issues)
	· 사회에 대한 관심 (Interested in society)
	· 정치에 대한 관심 (Interested in politics)
	지역수준에서 정치적 효능감 경험 (Experiences political efficacy, at local level)
	정치적 모임, 청소년 모임의 회원 (Member of a political party /youth league)
	선거에서 후보 또는 당선 (Nominated and/or elected in general elections):
	· 시의회 후보 (Nominated for City Council)
	· 군·구의회 후보 (Nominated for county council)
	· 국회 후보 (Nominated to Parliament)
	· 시의회위원 당선 (Elected to City Council)
	· 군·구의회위원 당선 (Elected to the county council)
	· 국회의원 당선 (Elected to Parliament)
	선거 투표 (Voted in general elections):
	· 지방 선거 (Municipal elections)

구분	지표
	· 군 · 구 선거 (County Elections)
	· 국회의원 선거 (Parliamentary Elections)
	· 유럽선거 (European elections)
	지역정책개발 참여의사 (Want to take part in local policy development)
	학교에서의 영향 경험 (Experiences influence in school)
문화와 여가 (Culture and leisure)	문화소비 (Consuming culture)
	독서 (Reads books)
	협회 회원 (Member of an association)
	주간 운동량 (Exercises weekly)
교육 및 학습 (Education and learning)	학교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느낌 (Feels that girls and boys are equally treated in school)
	중 · 고등학교 졸업 (Qualified to high school/upper secondary school)
	대학교 졸업 (Qualified to college/university)
	학생들한테 따돌림 (Bullied by students)
	교사한테 따돌림 (Bullied by teachers)
	유학 (studying abroad)
	대학재학 (Studying at college/university)
	학교안전에 대한 느낌 (Feels safe at school)
	중등교육을 받지 않음 (Without secondary education)

출처 : Swedish Agency for Youth and Civil Society (이 자료는 담당자 Tina Ekman (tina.ekman@mucf.se)이 저자의 요청으로 2016년 3월 30일 이메일로 보내준 영문자료를 번역한 것임).

2) 스페인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Planas et al. (2014)은 스페인의 지방정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지표는 전체 12개 영역 83개 지표(정량지표 31개, 정성지표 52개)로 구성돼 있다¹²⁾. 이 12개 영역은 교육, 고용, 주거, 건강, 문화, 참여와 사회통합, 스포츠, 청소년정보, 지도(guidance), 이동(mobility), 청소년정책실행을 위한 방법론적 양상 분석, 청소년정책실행에 필요한 자원분석

12) 지표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http://siapjove.udg.edu/> 참조. 정량지표 9개는 번역을 의뢰하여 본 보고서의 부록에 실음.

등이다(Planas et al., 2014).

<표 III-10>에 나와 있는 청소년정책실행에 필요한 자원 지표는 위 논문에 소개된 정량지표의 한 예이다. 이 지표는 청소년시설면적이 지역의 청소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I-10 정량 지표 예시

영역 12	청소년정책실행에 필요한 자원
목표 12.1	지역 청소년시설수와 성격에 대한 연구
지표 12.1.1	지역별 총 청소년인구대비 청소년 시설 면적 비율
산식	(총 지역 청소년시설 m^2 /청소년 총인구) $\times 100$
구조와 기술적 자료	이 지표는 지역 청소년 인구 대비 지역 청소년 시설 공간비율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화된 시설은 청소년의 정체성공간이 되고 있는 특정영역을 장려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청소년 시설은 지역 청소년의 특정 요구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적 권한을 가진 시설이다. 청소년 시설은 서비스와 자원이 구체적, 명시적으로 청소년을 위해 설립된 보편적인 시설이다. 청소년 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품, 인력, 경제적 자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청소년시설은 보편적인 것에서 전문화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다음은 지방정부가 촉진시킬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의 일부이다 : 청소년 정보거점, 청소년 클럽, 청소년 음악 연습장, 청소년을 위한 다목적 센터(예: 시민센터, 스포츠센터), 청소년건강센터, 청소년의 창의성을 위한 공간, 청소년이 전념할 수 있는 유형의 청소년 스포츠센터(예: 클라이밍, 스케이트공원) 등. 너무 작은 수치를 피하기 위해, 이 지표는 청소년 100명당 m^2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가능하다면, 시설의 시공면적이 아닌 시설에 사용된 가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용어	청소년시설
해석	2006년 바르셀로나 : 청소년 100명 당 $4.5m^2$. 제곱미터 대신에, Montes(2008)은 청소년수 대비 최대 수용인원을 제시한다. 즉 지역 청소년 인구의 7%를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제약	이 지표에서 청소년이 이용하지만 주이용자가 청소년이 아닌 시설(시민센터, 스포츠센터, 예술학교 등)은 제외하였다.
관련지표	6.2.1 지역정부의 청소년 창의성 촉진과 지원을 위한 전략

출처 : doi:10.1016/j.evalprogplan.2014.03.003에서 2016년 4월 1일 인출한 후 번역

아울러, 이 논문에 제시된 대표적인 정성지표인 문화영역은 <표 III-11>과 같다. 이 지표의 경우 지방정부가 청소년문화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표 III-11 정성지표 예시

영역 6		문화									
목표 6.1		지방정부가 청소년조직과 지원을 제공하는 문화활동 범위를 연구하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문화적 활동을 조직화하고 촉진시키는 것									
지표 6.1.3		제3자(third parties)에 의해 조직된 문화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									
서술		지방정부는 지역 내에서 문화활동의 독점적 제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지표는 지방정부가 제3자 및 민간영역에서 청소년 문화에 대한 개발제의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PNJCat 2010~2020 프로그램은 통합적 지역사회 관점을 통하여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도구인 공공 공간 사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지지와 제3자에 의해 조직된 문화적 활동 시설, 단순한 소비자 활동을 멈추고 문화정책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정부는 제3자와 민간영역이 청소년문화 개발제의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다 : 기구와 민간 기관과의 협력 협정 수립, 제3자에 의해 조직된 기구의 활동을 위한 공간 배정, 지방협회 지원, 기술적 지원 등									
용어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지표		5.1.1 청소년 협회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 5.1.2 법적 지위가 없는 청소년 그룹에 대한 관심과 지원 11.1.5 지역적 수준에 따른 청소년정책과 다른 지방정부 간의 상호 기관 업무전략 11.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기구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 기관 업무전략									
없음		미흡			보통			우수			
0		1	2	3	4	5	6	7	8	9	
지방정부에서 제3자에 의해 조직된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과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음.		지방정부가 제3자에 의해 조직된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비상시적 지원전략을 갖고 있음. 그러나 절차, 지원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이 없음.			지방정부가 제3자에 의해 조직된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안정된 지원전략을 갖고 있으며 공식화된 절차와 지원조건이 있음.			지방정부가 제3자에 의해 조직된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전략을 갖고 있음. 이 전략은 명확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짐. 대부분의 지원과 촉진전략은 고려되며 일부는 장기적임.			

출처 : doi:10.1016/j.evalprogplan.2014.03.003에서 2016년 4월 1일 인출한 후 번역

이 외에도 부록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자체가 지원한 청소년문화활동의 비율,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소년창작지원활동으로 혜택을 입은 청소년의 비율 등 청소년활동 및 참여 영역에서 다양한 정량지표가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조직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는 스포츠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정도도 주요 정량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했는지도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다.

3)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유럽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으로서 <표 III-12>에서처럼 총 8가지를 제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1). 각 영역마다 그 영역에 알맞은 정책평가지표가 제시돼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범주에 대학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교육, 직업훈련, 고용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와 정치참여 등 지역사회나 국가에 대한 청소년참여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표들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설문조사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표 III-12 주요 평가영역 및 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교육과 훈련	-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 - 대학교육 이수 - 고등학교(upper secondary education)를 마친 청소년
고용과 취업	- 청소년 실업 - 창업청소년 - 자영업종사 청소년 - 일시적으로 고용된 청소년
건강과 복지	- 흡연자 - 비만 - 음주 - 청소년인구 10만명당 자살률 - 심리적 우울 - 교통사고

평가영역	평가지표
사회적 포섭 (Social Inclusion)	- 청소년빈곤율 - 재정부담등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NEET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문화와 창조	- 청소년 예술활동 참여 (악기연주, 영화감상, 댄싱, 사진촬영 등) -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고궁방문, 오페라 감상 등) - 청소년 스포츠클럽 참여 - 최소 2개의 외국어 학습
청소년 참여	- 정치적 조직이나 환경단체에 참여한 청소년 - 청소년의 선거 참여 (지방선거, 중앙선거 등) - 유럽의회에 선출된 청소년 - 정치인 등과 인터넷을 이용해 상호작용한 청소년 -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견해를 피력한 청소년의 수
자원봉사활동	-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의 비율 - 자원봉사를 위해 해외에 머물렀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 - 자원봉사활동참여로 인증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
청소년과 세계	- 청소년의 비정부조직 참여 (기후변화나 인권신장과 같은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정도) - 다른 국가의 청소년 활동이나 프로젝트 참여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1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EU indicators in the field of youth에서 정리함. http://ec.europa.eu/youth/library/publications/indicator-dashbord_en.pdf에서 2016년 3월 28일 인출한 후 번역

유럽청소년포럼 또한 11가지 청소년정책지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The European Youth Forum, 2011). <표 III-13>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지표들이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나 인프라구축과 관련돼 있다. 즉 청소년관련 법적 기반의 확보, 청소년관련 예산, 정부부처 간 협력, 지역정부와의 협력 등 청소년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성과지표는 없는 실정이다.

표 III-13 유럽청소년포럼의 11가지 청소년정책 지표

지표	설명
1) 비공식적 교육 (non-formal education)	청소년의 자립적 · 긍정적인 사회화를 위한 교과과정 이외의 교육
2) 청소년관련 지도자 훈련정책 (youth training policy)	청소년의 인식과 다양성을 육성시킬 수 있는 청소년 분야 관련 지도자 육성 정책
3) 청소년 관련 법률제정 (youth legislation)	청소년 관련 정책 계획 및 수립에 청소년과 비정부기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 보장
4) 청소년 관련 예산 (youth budget)	비정부청소년조직, 청소년 활동 관련 단체 등을 육성 · 지원 할 수 있는 예산
5) 청소년 정보관련 정책 (youth information)	청소년잡지의 발행과 같이 청소년들이 청소년정책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의 구축
6) 다차원 정책(multi-level policy)	지역적 특색과 수준에 맞는 지역별 정책 운영
7) 청소년 연구(youth research)	청소년 분야의 현황 및 문제 파악을 통한 청소년 정책 계획 및 수립을 위한 연구 활동
8) 참여(participation)	청소년들의 정책과정 참여와 정책관련 활동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
9) 정부부처 간 연계협력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교육, 근로, 보호, 건강 등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별 부처 간의 협력 체계
10) 혁신(innovation)	청소년 문제에 대한 창의적 · 혁신적 방법 및 청소년의 창의성 촉진정책
11) 청소년 자문기구 (youth advising bodies)	청소년, 청소년 단체 등과 정부 간 협의와 협력이 보장되는 자문기구체계

출처 : The European Youth Forum(2011), '11 indicators of a (national) youth policy,' http://www.un.org/esa/socdev/unyin/documents/CoE_indicators.pdf 에서 2016년 3월 30일 인출한 후 번역.

4) 시사점

앞서 살펴 본대로, 유럽위원회, 스페인, 스웨덴의 청소년정책평가지표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정치사회적 참여, 봉사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용, 건강, 학습관련 지표들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앞서 2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평가지표들이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건수, 비디오방의 수, 담배판매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즉 유럽의 청소년정책은 보호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청소년의 시민참여나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고 문화, 예술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고 그들의 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청소년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기후변화나 빈곤문제 등 세계화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제 IV 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조사 분석

1. 청소년정책평가 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
2. 핵심평가지표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3. 소결

제 IV 장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조사 분석¹³⁾

지금까지 청소년정책평가의 체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앞장의 문헌연구이외에 전문가집단과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적연구도 수행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소년정책평가의 체계화에 대한 처방적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업무담당자, 실무자, 관련 법 전문가 등에 대한 심층면접도 병행한다. 이에 먼저 본 장에서는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청소년정책평가 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평가 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정책평가관련 전문가 15인, 청소년학 관련 전문가 15인 등 총 30명이며 전문설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에게 청소년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확보와 개선방안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는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전술한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다루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와 비교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방법이다(Saaty, 1990). 즉, AHP는 쌍별비교와 항목 간 부분구조에서의 최적결과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감소시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이끈다(Vashist and Dey, 2016). 실제로 Korpela and Tuominen (1996)은 이 기법이 의사결정 전략관리에서 유용하며 정책의 성과수준을 높이는 결정적 영향요인

13) 이 장은 최용환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는 효과적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은 정책집행과 평가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우선순위 분석과 체계화 연구에 AHP방법을 준용하고 있다(Hwang et al., 2005; Vijayvargiya and Dey, 2010). 이 같은 AHP기법은 정책평가지표 간의 우선순위 혹은 가중치 산정에 장점이 있으며, 김영모, 류중석(2003)과 성윤숙, 임희진(2007) 등의 청소년정책 평가 연구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의견조사 중에서 AHP설문은 일반적인 정책과정의 영역, 2012년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5대사업개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전문가의견조사는 2016년 예비평가에 활용된 청소년정책 시범평가 지표의 타당성도 확인한다(부록 2. 설문지 참조). 세부적으로 AHP설문의 일반정책과정의 영역은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기반 확보수준’의 정책형성영역, ‘정책추진 과정의 효율성’ 및 ‘정책소통 노력’의 정책집행 영역, ‘추진된 정책의 성과 및 효과성’의 정책성과영역이다. 그리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5대사업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이며 설문을 통해 어떤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산정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전문가의견조사의 AHP설문은 성과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그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지 문항은 이승중 외(2008), 관계부처합동(2016.4.29), 여성가족부(2012),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5)을 출처로 구성하였으며, 그 외의 문항은 자체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 설문지 문항의 출처는 아래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지 문항출처

구 분	출처
청소년정책환경의 요소별 중요도(3문항)	이승중 외(2008)를 참조하여 자체개발
청소년정책과정의 영역별 중요도(3문항)	관계부처합동(2016.4.29)
청소년정책 사업개요의 중요도(10문항)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정책의 성과달성도 지표의 중요도(3문항)	관계부처합동(2016.4.29)
청소년정책평가지표의 타당성(11문항)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5)
청소년정책평가지표의 개선방향(1문항)	자체개발

2. 핵심평가지표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1) 핵심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먼저, 전문가 응답자 30명의 인구배경학적 특징을 보면 남성이 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3.33%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5명으로 전체 응답의 16.67%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를 보면 전문가 의견의 응답자는 주로 남성이다. 또한 전문분야로 나누어 보면, 정책평가 전문가가 21명으로 70%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청소년학 전문가는 2명으로 전체의 6.67%이다. 현장전문가는 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3.33%였다. 즉,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은 주로 정책평가 영역의 학술전문가와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가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평균 46세로 나타났다.

표 IV-2 응답자의 배경

구분	인적특성	빈도	비율	평균
성	남성	25명	83.33%	—
	여성	5명	16.67%	—
전문분야	정책평가 전문가	21명	70.00%	—
	청소년학 전문가	2명	6.67%	—
	현장 전문가	7명	23.33%	—
연령	—	—	—	46세

다음으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016년 청소년정책 시범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이는 아래의 <표 IV-3>과 같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청소년 전담부서의 운영 여부’의 적절성을 7점 척도 중 평균 5.20로 응답하여 청소년정책평가 지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년대비 청소년정책자체사업 예산증가율’과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각각 평균 4.93과 4.87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 ‘전문성 높은 조직보유’와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확보’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율’의 적절성을 7점 척도 중 평균 3.93로 응답하여 평가지표 중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율’의 적절성도 7점 척도 중 평균 4.00으로 그 다지 높은 적절성을 보이지 못했다.

표 IV-3 2016년 청소년정책 시범평가에 활용된 평가지표에 대한 적절성 의견

주요 지표	7점 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율	4.00	1.26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율	4.10	1.42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율	4.20	1.5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설치율	4.40	1.43
CYS-Net운영비율	4.27	1.41
학교밖 청소년지원 노력도	4.53	1.48
청소년유해환경적발건수	4.40	1.48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4.87	1.31
전년대비 청소년정책자체사업 예산증가율	4.93	1.53
청소년전담부서운영 여부	5.20	1.2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율	3.93	1.36

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

무엇보다도 본 전문가 의견조사는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이 주요목적이며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계층적 조사결과에 대한 일관성 여부를 검증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계층적 분석에서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는 0에 가까울수록 양호하며,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은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를 임의 계수(Random Index)로 나눈 값이다. 특히 일관성 지수가 0.1(10%)이하이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Saaty, 2008). 본 연구는 Saaty(2008)의 임의계수(Random Index)에 따라 분석항목이 3개이면 0.52, 5개이면 1.11으로 임의계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정책 성과를 위한 요인들’의 일관성 지수는 0.04%, ‘정책과정 영역’은 0.64%, ‘사업개요 평가지표 항목’은 0.59%, ‘성과달성도 평가지표 항목’은 3.18%로 모두 10%에 미치지 못하여 그 일관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4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 계층적 분석(AHP) 결과

구분	평가항목	가중치	CI (일관성 지수)	순위
청소년정책 성과를 위한 요인들	인적 역량	0.394	0.0002	1
	물적 역량	0.254		3
	제도적 역량	0.352		2
정책과정 영역	정책형성	0.327	0.0033	2
	정책집행	0.276		3
	정책성과	0.397		1
사업개요 평가지표 항목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0.241	0.0066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0.228		2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0.161		5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0.188		3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0.181		4
성과달성도 평가지표 항목	성과지표의 적절성	0.635	0.0165	1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0.225		2
	목표달성도	0.140		3

그 결과, 전문가 계층적 분석(AHP)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성과요인을 ‘인적 역량’, ‘물적 역량’, ‘제도적 역량’으로 구분했을 때, 전문가들은 ‘인적역량’의 가중치를 39.4%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제도적 역량’이 35.2%이었으며 ‘물적 역량’에 가장 낮은 25.4%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를 보면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인력수급, 청소년정책의 전문성, 정규인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평가하였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과정영역에 대한 계층적 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정책성과’의 가중치를 39.7%로 가장 높게 부여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책형성’(가중치 32.7%)이었다. ‘정책집행’은

가중치가 27.6%로 정책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를 보면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의 기획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전문가들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정책영역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24.1%의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다음으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22.8%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이는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에도 ‘청소년 역량, 청소년 참여와 권리’가 상대적으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은 16.1%의 가중치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청소년의 복지와 자립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즉, ‘청소년의 복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에 현실적 중요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전문가들은 성과달성도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특히 ‘성과지표의 적절성’의 적절성의 가중치는 63.5%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 다음으로는 ‘성과목표치의 적정성’(가중치 22.5%), ‘목표달성도’(가중치 14.0%)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성과달성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평가가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타당성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3)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기타 전문가 의견

기타 청소년정책평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 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평가 전문가들은 기타의견으로 ‘청소년의 참여자수’의 반영,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서로 다른 지표 개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율’을 제언하였다. 또한 운영성과와 관계없이 설치건수로 평가하는 것은 형식적 설치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을 평가하는 경우 ‘청소년 1인당 예산 배부액’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한편, 청소년학 전문가는 ‘교육기관과의 협력의 정도’ 또는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실적’ 등으로 반영한 정성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실무전문가들은 평가지표에 ‘청소년참여기구(참여위원회 등)이 주관한 사업 수’, ‘청소년지도사 배치율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회’, ‘청소년지도사(1~3급) 채용율’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3. 소결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바람직한 청소년정책평가를 위해 정책평가 및 청소년학 전문가 그리고 실무전문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조직의 확보와 청소년정책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계층적 분석(AHP) 결과를 보면, ‘인적 역량’, ‘물적 역량’, ‘제도적 역량’으로 구분된 청소년정책의 성과요인 중에서 ‘인적역량’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면 앞으로 청소년정책평가가 일선 공무원들의 청소년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선 지자체의 청소년관련 업무수준에 준하는 충분한 인력배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정책과정영역 중에서 ‘정책성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책형성’, ‘정책집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5대 정책영역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정책영역이라고 인식하였다. 단,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제일 낮았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참여와 권리의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소 가중치를 두어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 달성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보면,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평가지표의 적절성’ 확보가 청소년정책평가의 안정적 제도화로 직결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충분히 공감하는 객관적 지표의 선정 그리고 지속적인 지표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기타의견을 고려할 때, 청소년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청소년의 참여수준과 청소년의 인식에 대한 반영 그리고 일선에서 청소년정책을 직접 구현하는 지도사에 관한 내용도 평가사항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1인당 예산 배부액’ 등을 반영하여 청소년정책평가의 정량적 성과들이 지자체의 규모에 좌우되어 평가의 본질이 흐려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제 V 장

중양부처 공무원 설문조사

1. 조사방법 및 내용
2. 설문조사결과
3. 소결

제 V 장

중앙부처 공무원 설문조사¹⁴⁾

앞서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및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실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평가의 현황과 정책 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청소년정책 업무담당자 설문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앙부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청소년정책평가의 현황과 체계에 대한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한다.

1.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중앙행정기관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청소년정책평가지표와 평가 현황 및 체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 7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조사원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문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했지만 응답자가 원할 경우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모두 22개 부처에서 52명의 공무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가 청소년정책평가분석 및 평가제도에 관한 인식조사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조사 당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V-1>과 같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6.2%, 여성이 53.8%로 여성이 약간 더 많았다. 연령대는 30대(40.4%)와 40대(32.7%)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청소년정책관련 부서에서 일한 경험은 2년이상인 44.3%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경력은 5년미만 23.1%, 5년이상 ~ 10년미만 26.9%, 10년이상 ~ 20년미만 26.9%, 20년이상 23.1%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14) 이 장은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도수관 교수가 집필함.

표 V-1 응답자의 인구학적 배경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52	100.0
성별	남성	24	46.2
	여성	28	53.8
연령대 (평균 39.2세)	30세 미만	7	13.5
	30대	21	40.4
	40대	17	32.7
	50대 이상	7	13.5
소속부처	부 단위	40	76.9
	처 단위	5	9.6
	청 단위	7	13.5
청소년정책 업무기간 (평균 3.2년)	1년 미만	15	28.8
	1년 이상 ~ 2년 미만	14	26.9
	2년 이상	23	44.3
공무원 근무기간 (평균 12.5년)	5년 미만	12	23.1
	5년 이상 ~ 10년 미만	14	26.9
	10년 이상 ~ 15년 미만	5	9.6
	15년 이상 ~ 20년 미만	9	17.3
	20년 이상	12	23.1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표 V-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인지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15대 중점과제에 대한 중요성, 개별사업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환류체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사업의 성과와 환경에 대한 분석도 포함돼 있다.

개별사업평가지표는 올해 시범평가시 중앙행정기관의 개별사업을 평가할 때 사용된 지표로 예산집행률, 성과지표의 적절성여부, 목표달성률 등 모두 7가지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평가자들이 이들 지표가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정책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제공 등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질문하였다.

한편, 이승중 외(2008) 연구를 참조하여 인적 역량, 물적 역량, 제도적 역량이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잘 뒷받침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승중 외(2008)는 정부의 정책역량을 ‘인적 역량’, ‘물적 역량’, ‘제도적 역량’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인력의 규모와 청소년분야의 전문성 등을 인적 역량으로, 예산확보, 전문조직운영, 부서장 리더십, 부서의 자원확보 능력 등을 물적 역량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타부처와의 협업, 지역사회와의 협력, 청소년 참여제도 및 홍보를 제도적 역량으로 간주하여 이들 세 가지 정책 환경을 측정하였다.

이밖에 인적사항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공무원경력, 청소년정책부서에서 일한 경력 등을 질문하였다. 연령, 공무원경력, 청소년정책부서경력은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나 분석을 위해 연령은 4개로 범주화(30세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하였으며 공무원경력은 5개(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15년미만, 15년이상~20년미만, 20년이상)로, 청소년정책부서 경력은 3개(1년미만, 1년~2년미만, 2년이상)로 범주화하였다. 근무처는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등 부처단위는 부로, 법제처 등은 처로, 소방방재청 등은 청단위로 분류하였다.

표 V-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중앙부처 업무담당자 설문지 문항출처**

구 분	출처
청소년정책평가제도의 인지도 (1문항)	자체개발
청소년정책의 15대 중점과제의 중요성 (15문항)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정책평가지표의 타당성 (7문항)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정책평가지표의 개선방향 (1문항)	자체개발
청소년정책평가의 환류체계 (4문항)	자체개발
청소년정책 성과 (13문항)	이승중 외(2008)를 참조하여 자체개발
청소년정책 환경 (15문항)	이승중 외(2008)를 참조하여 자체개발

2. 설문조사결과

1)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인지도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된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52명 중 단지 3명만이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고 거의 알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5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표 V-3 청소년 기본법 개정 인지도

		전혀 모른다	거의 알지 못한다	약간 알고 있다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	계
전체		3	5	24	17	3	52
		5.8%	9.6%	46.2%	32.7%	5.8%	100.0%
성별	남	1	1	10	10	2	24
		4.2%	4.2%	41.7%	41.7%	8.3%	100.0%
	여	2	4	14	7	1	28
		7.1%	14.3%	50.0%	25.0%	3.6%	100.0%
연령	30세 미만	0	2	4	1	0	7
		0.0%	28.6%	57.1%	14.3%	0.0%	100.0%
	30대	2	1	9	8	1	21
		9.5%	4.8%	42.9%	38.1%	4.8%	100.0%
	40대	1	2	8	4	2	17
		5.9%	11.8%	47.1%	23.5%	11.8%	100.0%
	50세 이상	0	0	3	4	0	7
		0.0%	0.0%	42.9%	57.1%	0.0%	100.0%
공무원 경력	5년 미만	0	2	5	5	0	12
		0.0%	16.7%	41.7%	41.7%	0.0%	100.0%
	5년 이상~10년	1	1	6	5	1	14

		전혀 모른다	거의 알지 못한다	약간 알고 있다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	계
	미만	7.1%	7.1%	42.9%	35.7%	7.1%	1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	0	4	0	0	5
		20.0%	0.0%	80.0%	0.0%	0.0%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0	0	5	3	1	9
		0.0%	0.0%	55.6%	33.3%	11.1%	100.0%
	20년 이상	1	2	4	4	1	12
		8.3%	16.7%	33.3%	33.3%	8.3%	100.0%
청소년 정책부서 경험	1년 미만	0	1	9	5	0	15
		0.0%	6.7%	60.0%	33.3%	0.0%	100.0%
	1년~2년 미만	1	2	7	3	1	14
		7.1%	14.3%	50.0%	21.4%	7.1%	100.0%
	2년 이상	2	2	8	9	2	23
		8.7%	8.7%	34.8%	39.1%	8.7%	100.0%
근무처	부 단위	3	4	16	15	2	40
		7.5%	10.0%	40.0%	37.5%	5.0%	100.0%
	처 단위	0	1	4	0	0	5
		0.0%	20.0%	80.0%	0.0%	0.0%	100.0%
	청 단위	0	0	4	2	1	7
		0.0%	0.0%	57.1%	28.6%	14.3%	100.0%

집단별로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공무원이 청소년기본법 개정 내용을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전혀 모르거나 거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세 이상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집단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경력의 경우에는 15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이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부서경험이 1년 미만인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청소년기본법개정에 대한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개정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40명 중 7명(17.5%)이 전혀 모르거나 거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부처 중 부 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제5차 기본계획 15대 중점과제의 중요도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명시된 15대 중점과제들이 청소년정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중 위기청소년보호 및 지원강화(6.21점), 청소년진로체험 및 자립지원(5.94점),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강화(5.83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범부처 정책총괄 및 조정기능강화(4.90점)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글로벌, 다문화역량강화 역시 다른 과제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5.12점)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중앙부처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진로체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등이 청소년정책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5차청소년정책 기본계획 5대 영역 중 하나인 청소년정책추진체계강화(범부처 정책총괄기능강화, 청소년지원인프라강화, 청소년정책추진기반강화 등 3개 중점과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V-4 15개 중점과제 중요성 인식

중점과제	평균	표준편차
1) 청소년 역량증진 강화	5.52	.93
2)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5.12	1.07
3)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5.83	1.23
4) 청소년참여 활성화	5.56	.97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5.75	1.06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5.54	.99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한부모, 저소득, 취약계층,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확대)	5.88	.92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6.21	.91
9) 청소년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5.94	.97

중점과제	평균	표준편차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5.67	1.13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75	1.11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5.56	1.22
13) 범부처 정책총괄·조정기능 강화 (지자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청소년전담공무원제추진 등)	4.90	1.45
14) 청소년지원 인프라 강화 (청소년지도지역량강화및처우개선, 청소년정책전달체계정비 등)	5.19	1.23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도입, 청소년정책재정기반확충 등)	5.21	1.30

3) 개별사업평가지표의 적절성

올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사업을 평가할 때 사용된 7개의 평가지표가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한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모든 지표들이 비교적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지표들이 평균(4점)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중에서도 예산집행률(4.94점)과 사업추진일정의 적절성(5.02점)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가 나왔다.

표 V-5 개별사업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평가지표	평균	표준편차
1) 사업목적 및 내용이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목적 및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	5.38	1.12
2) 사업추진체계가 사업목적 및 내용달성에 적합한 정도	5.44	.95
3) 사업내용의 구성이 사업목적달성에 적합한 정도	5.33	1.13
4) 사업추진일정이 사업목적 및 내용달성에 적합한 정도	5.02	1.05
5)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된 정도 (예산집행률)	4.94	1.05
6) 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정도	5.23	1.18
7)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정도 (목표달성률)	5.37	1.08

집단별로 평가지표의 적절성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과지표의 적절성과 사업추진체계의 적합성이 청소년정책평가에 좀 더 적절한 평가지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사업추진체계의 적합성이 가장 적절한 지표로 평가했고 30대의 경우 사업내용구성의 적합성, 40대는 사업목적 및 내용과의 일치성, 50대 이상은 사업추진체계의 적합성과 목표달성률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공무원 근무기간으로 보면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추진체계의 적합성 지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목표달성률 또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적절한 지표로 인식되었다. 청소년정책업무경험에 따른 커다란 차이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소속부처별로 살펴보면 부나 청 단위에서 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사업목적 및 내용이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목적 및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사업추진일정의 적합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달성률에 주목하였다.

표 V-6 집단별 평가지표의 적절성 정도

구분		사업 목적 및 내용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	사업 내용 구성의 적합성	사업 추진 일정의 적합성	예산 집행률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절성	목표 달성률
전체		5.38	5.44	5.33	5.02	4.94	5.23	5.37
성별	남성	5.46	5.33	5.29	5.08	4.71	4.96	5.33
	여성	5.32	5.54	5.36	4.96	5.14	5.46	5.39
연령대	30세 미만	5.43	5.57	5.29	4.86	5	5	5.14
	30대	5.24	5.29	5.33	5	4.71	5.05	5.29
	40대	5.65	5.59	5.41	5.24	5.12	5.53	5.53
	50대 이상	5.14	5.43	5.14	4.71	5.14	5.29	5.43
공무원 근무기간	5년 미만	5.33	5.33	5.25	4.67	4.67	4.92	5.08
	5년~10년 미만	5.29	5.5	5.29	5.21	4.60	5.07	5.36
	10년~ 15년 미만	5.0	4.80	5.20	4.80	4.60	5.20	5.20

구분		사업 목적 및 내용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	사업 내용 구성의 적합성	사업 추진 일정의 적합성	예산 집행률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절성	목표 달성률
	15년~ 20년 미만	5.78	5.67	5.56	5.22	5.11	5.56	5.67
	20년 이상	5.42	5.58	5.33	5.08	5.33	5.5	5.5
청소년 정책 업무경험	1년 미만	5.4	5.4	5.33	5.13	4.73	5	5.07
	2년 미만	5.36	5.43	5.43	5.21	5.21	5.36	5.5
	3년 미만	5.39	5.48	5.26	4.83	4.91	5.30	5.48
소속부처	부	5.48	5.6	5.38	5.03	5.08	5.3	5.48
	처	4.2	4.6	4.8	5	4.8	5	5
	청	5.71	5.14	5.43	5	4.29	5	5

이어서 위에 열거된 7개 지표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가지표를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정책인지도나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됐다. 이 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나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지표도 언급됐다. 즉 개별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 학부모의 반응이 주요한 평가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표 V-7 **청소년정책사업을 평가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청소년 삶의 질 만족도
청소년 만족도, 정책 참여율
일반국민 또는 청소년의 정책인지도
학부모대상 만족도 조사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현장적합성 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

4) 환류체계

다음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열거된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항목 간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중에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공이 5.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8 평가 환류체계

환류체계	평균	표준편차
1)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공	5.35	1.25
2) 우수 공무원 포상	5.29	1.21
3)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5.08	1.16
4) 평가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5.31	1.47

집단별로 환류체계를 살펴보면 성별로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우수공무원포상과 해외연수를 선호한 반면 여성의 경우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제공과 평가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제공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제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경력이 짧은 5년 미만의 경우와 공무원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 평가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경력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제공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부서경험이 많은 경우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제공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반면, 청소년정책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공무원 경험이 비교적 짧은 공무원일수록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속부처의 경우 작은 단위인 청에 속한 공무원일수록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가장 많이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V-9 집단별 평가결과 환류체계

구분		우수 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	우수 공무원 포상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평가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전체		5.35	5.29	5.08	5.31
성별	남성	5.21	5.38	5.17	4.88
	여성	5.46	5.21	5	5.68
연령대	20대	5	5.14	5.14	5.14
	30대	5.38	5.38	5.14	5.48
	40대	5.53	5.41	5.06	5.29
	50대 이상	5.14	4.86	4.86	5
공무원 으로서 근무기간	5년 미만	5.42	5	5	5.67
	5년 이상~ 10년 미만	5.07	5.64	5.43	5
	10년 이상~ 15년 미만	5.40	4.60	4.00	5.40
	15년 이상~ 20년 미만	5.78	5.67	5.33	5.11
	20년 이상	5.25	5.17	5	5.42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기간	1년 미만	5.4	5.47	5.2	5.33
	1년 이상 ~ 2년 미만	5.21	5.07	5.07	5.36
	2년 이상	5.39	5.30	5.00	5.26
소속부처	부	5.38	5.33	5.2	5.35
	처	4.6	4.2	4	5
	청	5.71	5.86	5.14	5.29

5) 청소년정책성과

응답자들이 속한 부서에서 추진된 청소년정책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중에서도 추진된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발생(5.58점)이 가장 높았고 정책기획시 의도한 정책효

과가 발생한 것(5.38점)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청소년정책이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부분(4.79점)과 청소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부분(5.04점)에 대해서는 점수가 비교적 낮았다. 즉 청소년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소년정책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청소년정책이 다른 성과에 비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V-10 **청소년정책 성과**

청소년정책성과	평균	표준편차
1) 청소년사업의 비중이 높은 정책기획	5.25	1.16
2) 청소년정책 의제의 중요도를 높게 설정	5.21	1.19
3) 적절한 청소년정책목표의 설정	5.31	1.11
4) 적절한 청소년정책추진계획 수립	5.17	1.08
5) 청소년정책추진계획에 따른 정책집행	5.21	1.09
6) 계획된 목표치의 달성	5.35	1.31
7)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질적 우수성 확보	5.27	.97
8) 추진된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	5.58	.97
9) 정책기획시 의도한 정책효과가 발생	5.38	.84
10)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성과에 대한 확산 노력	5.31	.87
11)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	4.79	1.14
12) 청소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	5.04	.96
13)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5.29	.95

6) 청소년정책 환경

최근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부분들이 잘 지원됐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업무담당자의 적극적 태도(5.38점), 담당부서장의 성공적인 리더십(5.37점), 전문가의 참여 및 활동(5.19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관련 예산의 충분한 편성은 4.1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더불어, 업무량에 적합한 인원배치도 4.31점으로 저조한 점수를 나타냈다. 업무에 적합한 인력운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V-11 청소년정책 환경

청소년정책 환경	평균	표준편차
1)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확보	4.71	1.22
2) 업무량에 적합한 인원배치	4.14	1.47
3) 부서의 효율적 업무분장	4.37	1.38
4) 업무담당자의 적극적 태도	5.44	1.05
5) 담당부서장의 성공적 리더십 발휘	5.19	1.14
6) 관련 예산의 충분한 편성	5.35	1.16
7)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4.69	1.29
8) 전문가의 참여 및 활동	5.27	1.09
9) 정책의 부작용발생에 대처가능한 신속한 의사결정	4.22	1.35
10) 정책추진시 타부처와의 협업	4.98	1.16
11) 정책집행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4.96	1.17
12) 청소년들에게 관련 정책을 충분히 홍보	5.00	1.14
13)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유도	5.17	1.11
14) 정책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	4.95	1.23
15) 정책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	4.60	1.26

위 항목들을 인적 환경(1번문항~5번문항), 물적 환경(6번문항~9번문항), 제도적 환경(10번문항~15번문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환경 사이에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V-12 청소년정책 환경별 차이

청소년정책환경	평균	표준편차
인적 환경	4.88	.96
물적 환경	4.83	.98
제도적 환경	4.81	1.01

7) 청소년정책평가제도체계화를 위한 조치나 개선방안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나 개선방안을 응답자들에게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비교적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정책이 주가 아닌 부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부처별로 차별화된 정책분석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정책수요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부처간 사업의 중복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 지가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사업을 평가하는 주요 평가지표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정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부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전체사업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1개의 사업만 제출한 곳도 총 28개의 중앙행정기관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9개 기관으로 드러난 바 있다.

표 V-13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를 위한 조치나 개선방안**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정책 추진
사업에 대한 홍보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정책수요 조사
중복사업의 경우 과감히 재조정
청소년정책이 주가 아닌 부처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부처별 차별화된 정책분석 평가제도 필요
정책별 평가시 ‘미흡’ 항목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지양

3. 소결

중앙부처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업무담당 공무원들 중심으로 청소년정책평가지표와 평가 현황 및 체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정책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평가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부 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처나 청 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청소년기본법 개정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향후 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15대 중점과제에 대한 중요성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청소년정책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명시된 15대 중점과제들이 청소년정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위기청소년지원, 청소년진로체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등이 청소년정책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5대 영역 중 하나인 청소년정책추진체계강화(법부처 정책총괄기능강화, 청소년지원인프라강화,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 3개 중점과제)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기본계획 5대 영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 시범 평가 시 중앙행정기관의 개별사업을 평가할 때 사용된 7가지의 개별사업평가지표의 경우 중앙부처 청소년정책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모든 지표들이 비교적 개별사업평가지표 항목으로써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나 청 단위에서 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사업목적 및 내용이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목적 및 내용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사업추진일정의 적합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달성률에 가장 주목하였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7가지의 개별사업평가지표 외에도 청소년들의 정책인지도나 만족도에 관한 지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나 사업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지표도 새로운 평가지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개별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정책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 및 학부모의 반응과 관련된 평가지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개별사업평가지표 항목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정책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중앙부처 청소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공, 우수 공무원 포상,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평가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등과 같은 항목들이 청소년정책평가 이후 활용 가능한 보상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평가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이러한 요구에 맞게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각 부처에서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전반적인 성과와 관련하여 13개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응답자들이 속한 부서에서 추진한 청소년정책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청소년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 발생과 정책기획 시 의도한 정책효과가 발생한 것 등의 성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청소년정책이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였는지 청소년층의 수요를 반영하였다는 항목들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청소년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는 청소년정책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제도적 환경 등 정책 환경과 관련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세 가지 환경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제도적 환경 등 15가지의 세부항목들 중에서 업무담당자의 적극적 태도, 담당부서장의 성공적인 리더십, 전문가의 참여 및 활동 등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련 예산의 충분한 편성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업무량에 적합한 인원배치도 저조한 점수를 보임으로써 최근까지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인력과 예산의 적절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정책의 추진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담당인력 배치와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절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청소년정책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청소년정책을 주로 추진하는 부처가 아닌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부처별로 차별화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정책수요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의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향후 부처 간 사업의 중복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있는지를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사업을 평가하는 주요 평가지표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정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부처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앙부처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의견들은 청소년정책평가과정에서 대상 기관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 VI 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조사

1. 조사방법 및 내용
2. 설문조사결과
3. 소결

제 VI 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설문조사¹⁵⁾

1.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청소년정책평가지표와 정책환경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6월 ~ 7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조사원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문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했지만 응답자가 원할 경우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자체 조사의 경우 전국 226개 시군구별로 최소 1명의 공무원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당하였고 그 결과 광역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두 353명의 공무원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당시 청소년관련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정책을 수행하지 않은 공무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VI-1>과 같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 공무원이 43.1%, 여자공무원이 56.9%로 나타나 여자공무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정책이 여성정책부서에 속하다보니 여성공무원이 더 많이 표집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0.2세로 나타났으며 30대(34.3%)와 40대(36.0%)가 주를 이뤘다. 지금까지의 공무원경력은 평균 13.5년이었으며 청소년정책관련 부서에서 일한 경험은 평균 1.5년으로 매우 짧았다. 광역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13.6%, 광역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4.7%였고 시 단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26.6%로 가장 많았다. 즉 광역시나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28.3%였고 시군구 등 기초 단위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71.7%였다.

15) 이 장은 이창호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표 VI-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구분		명 (%)	계
성별	남	152 (43.1)	353명 (100%)
	여	201 (56.9)	
연령 (평균 40.2세)	30세 미만	46 (13.0)	353명 (100%)
	30세~39세	121 (34.3)	
	40세~49세	127 (36.0)	
	50세 이상	59 (16.7)	
공무원 경력 (평균 13.5년)	5년 미만	100 (28.3)	353명 (100%)
	5년 이상~10년 미만	47 (13.3)	
	10년 이상~15년 미만	58 (16.4)	
	15년 이상~20년 미만	33 (9.3)	
	20년 이상	115 (32.6)	
청소년 정책부서 근무 경력 (평균 1.5년)	1년 미만	161 (45.6)	353명 (100%)
	1년 이상~2년 미만	119 (33.7)	
	2년 이상	73 (20.7)	
행정구역	광역시	48 (13.6)	353명 (100%)
	광역시도	52 (14.7)	
	시 단위	94 (26.6)	
	군 단위	85 (24.1)	
	구 단위	74 (21.0)	

2) 조사내용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아래 <표 VI-2>에 나타난 것처럼 크게 청소년정책평가제도에 관련된 내용, 청소년정책성과, 청소년정책환경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청소년정책평가제도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공무원들이 올해 시범 실시되는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아울러, 11개의 핵심평가지표가 얼마나 적절한 지도 물었다. 또한 지자체의 대표사업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평가항목들의 적절성 여부도 중요한 질문항목이었다. 공무원들이

어떤 평가환류체계를 원하는 지도 본 설문조사가 파악하고자 한 주요 내용이었다.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획에 따라 정책을 얼마나 잘 집행하였고 청소년층의 수요나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표 VI-2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 설문지 문항출처

구 분	출처
청소년정책평가제도의 인지도 (1문항)	자체개발
청소년정책의 15대 중점과제의 중요성 (15문항)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정책평가지표(정량지표)의 타당성 (11문항)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정책평가지표(정성지표)의 타당성 (10문항)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정책평가의 환류체계 (4문항)	자체개발
청소년정책 성과 (9문항)	이승종 외(2008)를 참조하여 자체개발
청소년정책 환경 (16문항)	이승종 외(2008)를 참조하여 문항은 자체개발

청소년정책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승종 외(2008) 연구를 참조하여 인적 역량, 물적 역량, 제도적 역량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잘 뒷받침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승종 외(2008)는 정부의 정책역량을 ‘인적 역량’, ‘물적 역량’, ‘제도적 역량’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인력의 규모와 청소년분야의 전문성 등을 인적 역량으로, 예산확보, 전문조직운영, 부서장 리더십, 부서의 자원확보 능력 등을 물적 역량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법적 지원체계, 지역사회의 참여, 청소년 참여제도 및 홍보를 제도적 역량으로 간주하여 이들 세 가지 정책 환경을 측정하였다.

이 외에도 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명시된 15대 중점과제가 청소년정책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아보았다.

이밖에 인적사항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공무원경력, 청소년정책부서에서 일한 경력 등을 질문하였다. 연령, 공무원경력, 청소년정책부서경력은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나 분석을 위해 연령은 4개로 범주화(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하였으며 공무원경력은 5개(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로, 청소년정책부서

경력은 3개(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 이상)로 범주화하였다. 근무처는 광역시, 광역도, 시단위, 군단위, 구단위 등 총 5가지로 분류하였다.

2. 설문조사결과

1)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인지도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된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의 응답자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2.3%) 거의 알지 못한다(8.5%)고 답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평가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50세 이상의 경우 23.7%가 청소년기본법개정내용에 대해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30세 미만은 4.3%, 30대는 7.4%, 40대는 15.0%였다.

표 VI-3 청소년 정책 평가 인지도

		전혀 모른다	거의 알지 못한다	약간 알고 있다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	계
전체		8	30	160	111	44	353
		2.3%	8.5%	45.3%	31.4%	12.5%	100.0%
성별	남	7	14	68	44	19	152
		4.6%	9.2%	44.7%	28.9%	12.5%	100.0%
	여	1	16	92	67	25	201
		0.5%	8.0%	45.8%	33.3%	12.4%	100.0%
연령	30세 미만	1	6	25	12	2	46
		2.2%	13.0%	54.3%	26.1%	4.3%	100.0%
	30대	4	14	59	35	9	121
		3.3%	11.6%	48.8%	28.9%	7.4%	100.0%
	40대	3	9	55	41	19	127
		2.4%	7.1%	43.3%	32.3%	15.0%	100.0%

		전혀 모른다	거의 알지 못한다	약간 알고 있다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	계
	50세 이상	0	1	21	23	14	59
		0.0%	1.7%	35.6%	39.0%	23.7%	100.0%
공무원 경력	5년 미만	2	11	54	29	4	100
		2.0%	11.0%	54.0%	29.0%	4.0%	100.0%
	5년 이상~ 10년 미만	2	9	24	10	2	47
		4.3%	19.1%	51.1%	21.3%	4.3%	1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2	5	23	18	10	58
		3.4%	8.6%	39.7%	31.0%	17.2%	100.0%
	15년 이상~ 20년 미만	0	1	13	13	6	33
		0.0%	3.0%	39.4%	39.4%	18.2%	100.0%
	20년 이상	2	4	46	41	22	115
		1.7%	3.5%	40.0%	35.7%	19.1%	100.0%
청소년 정책 부서 경력	1년 미만	4	21	82	45	9	161
		2.5%	13.0%	50.9%	28.0%	5.6%	100.0%
	1년~2년 미만	2	7	53	40	17	119
		1.7%	5.9%	44.5%	33.6%	14.3%	100.0%
	2년 이상	2	2	25	26	18	73
		2.7%	2.7%	34.2%	35.6%	24.7%	100.0%
근무처	광역시	0	6	13	19	10	48
		0.0%	12.5%	27.1%	39.6%	20.8%	100.0%
	광역시도	4	2	20	16	10	52
		7.7%	3.8%	38.5%	30.8%	19.2%	100.0%
	시 단위	1	7	48	30	8	94
		1.1%	7.4%	51.1%	31.9%	8.5%	100.0%
	군 단위	2	11	42	21	9	85
		2.4%	12.9%	49.4%	24.7%	10.6%	100.0%
	구 단위	1	4	37	25	7	74
		1.4%	5.4%	50.0%	33.8%	9.5%	100.0%

공무원경력의 면에서도 경력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기본법개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다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와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를 합친 비율)는 공무원경력이 15년 이상~20년 미만인 집단에서 57.6%로 가장 높았고 20년 이상 54.8%, 10년 이상~15년 미만 48.2%, 5년 미만 33%, 5년 이상~10년 미만 25.6%였다.

청소년정책부서경험에 따른 인식차이도 나타났다. 기본법개정의 내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거나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청소년정책부서경험이 2년 이상인 경우가 60.3%(35.6%+24.7%)였고 1년 이상~2년 미만 47.9%(33.6%+14.3%), 1년 미만 33.6%(28.0%+5.6%)였다. 즉 청소년정책부서에 오래 근무한 공무원일수록 청소년정책평가제도에 관해 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시, 군, 구 등 기초 지자체 공무원에 비해 광역시나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법개정의 내용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거나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광역시 공무원 집단이 60.4%(39.6%+20.8%)로 가장 높았고 광역도 50.0%(30.8%+19.2%), 구단위 공무원 43.3%(33.8%+9.5%), 시단위 공무원 40.4%(31.9%+8.5%), 군단위 공무원 35.3%(24.7%+10.6%) 순이었다.

한편, 청소년정책시행계획평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거의 알지 못하는 비율은 청소년정책담당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적은 집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정책담당부서에서 일한 경험이 1년이 안된 경우 그 비율은 15.5%였음에 반해 1년 이상~2년 미만 7.6%, 2년 이상 5.4%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 비율은 또한 광역시나 광역도에 비해 군단위 공무원에게서 15.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젊고 공무원경력이 짧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제도의 취지나 체계에 대해 더욱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제5차 기본계획 15대 중점과제의 중요도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명시된 15대 중점과제들이 청소년정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중 위기청소년보호 및 지원강화,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강화, 청소년진로체험 및 자립지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글로벌, 다문화역량강화는 다른 과제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위기청소년지원,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청소년진로체험 등이 청소년정책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4 15개 중점과제 중요성 인식

중점과제	평균	표준편차
1) 청소년 역량증진 강화	5.60	1.16
2)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4.99	1.19
3)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5.91	1.19
4) 청소년참여 활성화	5.76	1.04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5.67	1.10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5.61	1.09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한부모, 저소득, 취약계층,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확대)	5.50	1.12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6.03	1.04
9) 청소년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5.85	1.03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5.76	1.12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79	1.14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5.57	1.15
13) 범부처 정책총괄·조정기능 강화 (지자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청소년전담공무원제추진 등)	5.45	1.33
14) 청소년지원 인프라 강화 (청소년지도자역량강화및처우개선, 청소년정책전달체계정비 등)	5.57	1.21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도입, 청소년정책재정기반확충 등)	5.32	1.32

3) 청소년핵심평가지표의 적절성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평가 때 사용된 11개의 핵심지표가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한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CYS-Net 운영비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밖 청소년지원노력정도,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청소년전담부서운영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청소년유해환경적발건수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율,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율은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VI-5 **청소년핵심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핵심평가지표	평균	표준편차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율	4.45	1.42
2)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율	4.79	1.36
3)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율	4.82	1.35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율	4.72	1.44
5) CYS-Net 운영비율	5.06	1.41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성)	4.94	1.45
7)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4.22	1.69
8) 아동·청소년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4.89	1.29
9) 전년대비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	4.65	1.45
10)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여부	4.83	1.57
1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율	4.38	1.55

이어서 11개 핵심지표 외에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평가지표를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결과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크게 구분해 보면 기존지표에 대한 보완과 새로운 지표의 제시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기존 지표에 대한 보완내용으로는 설치율 뿐 아니라 운영여부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는 기존의 지표들이 설치율 위주로 구성돼 있다보니 구체적인 운영내용 중심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성폭력 뿐 아니라 학교폭력도 중요한만큼 이를 폭력예방교육참여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적발건수보다는 제도 및 예방캠페인이 더 적절한 지표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표 VI-6 기존지표에 대한 보완내용

예산수준과 청소년인구수를 고려하여 정책평가를 실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CYS-Net 설치율 뿐 아니라 개최실적도 함께 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평가결과를 포함
단순정량지표(설치율, 운영여부 등)가 아닌 정책의 목표, 구체적인 실현계획 등 평가
성폭력예방참여율 뿐 아니라 학교폭력예방참여율도 포함시켜야 함
청소년유해환경적발건수의 경우 가중치를 없애고 청소년 유해환경 적발건수를 늘려야 하는 평가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전년도 적발건수+현 년도 적발건수)/유해업소 수
청소년유해환경적발건수 보다는 계도 및 예방캠페인이 적절함

응답자들은 11가지 지표 외에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중 청소년전담공무원이나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청소년참여나 활동에 관련된 지표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가령, 청소년동아리활동이나 국제교류실적, 직업체험프로그램 등이 새로운 평가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입안하여 시군구에 건의해 채택된 건수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지표도 비교적 많이 나온 편이었다. 즉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비율로 지자체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 및 정부에 대한 청소년정책만족도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VI-7 새로운 핵심평가지표 내용

청소년전담공무원수
청소년전담공무원수/청소년수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
청소년참여예산운영 여부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시설운영 보조금
청소년시설에근무하는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비율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 실적,관련조례 개정여부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입안하여 시군구에 건의한 건수와 채택 건수
해당지자체 및 정부에 대한 청소년정책만족도
청소년자유활동(동아리,어울림마당등)지원
청소년문화체험활동지원사업비 예산편성 여부
청소년동아리육성 현황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실적
청소년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연계
청소년정서지원 프로그램
청소년직업체험프로그램
청소년특화시설 설치율
자유학기제 참여도
청소년예술제 개최
기관장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도 평가
청소년의 권리증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전문인력 확보 여부
청소년의식교육(법질서, 민주시민의식, 글로벌마인드 등)

4) 대표사업평가기준의 적절성

올해 지자체의 대표사업을 평가할 때 사용된 기준이 얼마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데 적절한지 질문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핵심평가지표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면 대표사업평가지표는 정성적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돼 있다.

조사결과, 10개의 지표는 모두 보통(4점)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다. 응답자들은 정책이 청소년

에게 실제로 미친 효과(5.50)를 가장 적절한 지표로 평가하였고 성과목표를 달성한 정도(5.22),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의 기획 및 추진(5.21), 정책계획수립시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5.19)을 적절한 지표로 판단하였다. 반면, 추진계획상의 일정준수는 가장 낮은 점수(4.67)를 받았다.

표 VI-8 대표사업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대표사업평가지표	평균	표준편차
1)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정책수요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	5.19	1.22
2)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5.15	1.27
3)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5.08	1.18
4)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의 기획 및 추진	5.21	1.38
5) 추진계획상의 일정 준수	4.67	1.14
6) 정책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5.05	1.15
7) 정책내용의 적극적 대국민 홍보	5.08	1.20
8) 계획된 예산을 실제 달성한 정도	4.95	1.16
9)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실제 달성한 정도	5.22	1.13
10) 정책이 청소년에게 실제로 미친 효과	5.50	1.31

이어서 위에서 열거한 10가지 지표 외에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적도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정책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청소년의 욕구, 의견, 선호도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지자체장의 청소년정책관심도 및 추진실적에 대한 지표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 청소년부모의 만족도 평가도 새로운 지표로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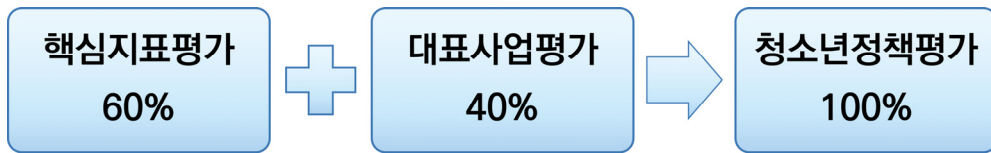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VI-9 청소년정책평가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

지자체 규모에 따른 청소년 담당 인원
청소년 업무 전문인력
청소년 업무 전담기구
청소년 복지 전문가 배치 및 활용
청소년 기본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에 대한 직렬 신설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표 신설
정책 수립과정에서 학생, 부모, 선생님 의견 수렴
청소년 사전 선호도 조사 실시
청소년 욕구, 의견, 선호도 정책 반영정도
청소년 정책의 청소년 인식 정도
청소년 활동 진흥 관련 평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 역할 참여 정도
정책에 의해 청소년이 실제로 참가한 수
청소년 참여율과 반응도
실제 청소년 시설 이용 비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률
청소년 상담 실적 달성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의 정책 효과 만족도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친 효과의 행동변화
청소년 부모의 만족도 평가
예산집행의 유연성
(단순 청소년 인구대비 실적이 아닌) 지역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지자체 장의 청소년 정책 관심도 및 추진 실적
교육청과 공조 정도

5) 핵심지표평가와 대표사업평가의 비율

지자체의 청소년정책평가시 핵심지표평가의 비율과 대표사업평가의 비율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핵심지표평가비율은 평균 59.14%(표준편차 14.64)로 나타났고 대표사업평가의 비율은 평균 40.86%(표준편차 14.64)이었다. 즉 응답자들은 6 대 4의 비율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VI-1】 청소년정책평가 비율

6) 환류체계

다음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열거된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항목 간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중에서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5.74) 점수가 그나마 약간 높았다. 공무원들은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뿐 아니라 평가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VI-10 평가 환류체계

환류체계	평균	표준편차
1)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공	5.71	1.29
2) 우수 공무원 포상	5.74	1.18
3)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5.56	1.40
4) 평가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5.57	1.28

집단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의 경우 모든 인센티브에 대한 필요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30대와 40대, 50대의 경우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다.

공무원경력에 경우 10년 이상 일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우수공무원포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느낀 집단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오래 근무한 공무원일수록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한편, 청소년정책관련 부서에서 2년 이상 일한 공무원 집단에게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근무처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광역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센티브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역시, 군 단위, 구 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센티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광역도나 시 단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평가결과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비교적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I-11 집단별 평가 환류체계

구분		우수 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	우수 공무원 포상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평가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성별	남성	5.77	5.73	5.55	5.64
	여성	5.66	5.75	5.56	5.51
연령대	20대	5.57	5.54	5.39	5.48
	30대	5.66	5.68	5.42	5.54
	40대	5.83	5.87	5.74	5.65

구분		우수 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	우수 공무원 포상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평가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50대 이상	5.63	5.76	5.56	5.53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	5년 미만	5.64	5.62	5.46	5.50
	5년 이상~ 10년 미만	5.43	5.40	5.06	5.43
	10년 이상~ 15년 미만	5.90	5.79	5.72	5.60
	15년 이상~ 20년 미만	5.67	5.94	5.82	5.67
	20년 이상	5.79	5.90	5.68	5.64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기간	1년 미만	5.69	5.75	5.51	5.56
	1년 이상 ~ 2년 미만	5.57	5.70	5.55	5.56
	2년 이상	5.96	5.81	5.66	5.60
근무처	광역시	5.50	5.52	5.54	5.46
	광역시도	6.04	6.02	5.75	6.04
	시단위	5.82	6.00	5.84	5.41
	군단위	5.65	5.68	5.44	5.53
	구단위	5.53	5.43	5.20	5.55

7) 청소년정책성과

추진된 청소년정책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중에서도 계획된 목표치의 달성이 가장 높았고 추진된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발생이 그 뒤를 이었다.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질적 우수성 확보와 정책기획시 의도한 정책효과 발생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VI-12 청소년정책성과

청소년정책성과	평균	표준편차
1) 추진계획에 따른 정책집행	5.39	1.03
2) 계획된 목표치의 달성	5.44	1.01
3)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질적 우수성 확보	5.24	1.07
4) 추진된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발생	5.43	1.06
5) 정책기획시 의도한 정책효과가 발생	5.25	1.07
6)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성과에 대한 확산 노력	5.36	1.07
7)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	5.30	1.13
8) 청소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	5.33	1.14
9)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5.31	1.06

8) 청소년정책 환경

최근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항목들이 잘 지원됐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업무담당자의 적극적 태도, 담당부서장의 리더십에 따른 업무성과증가, 관련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업무량에 적합한 인원배치, 부서의 효율적 업무분장, 전문가 조연 및 TF 운영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VI-13 청소년정책환경

청소년정책환경	평균	표준편차
1)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확보	4.71	1.22
2) 업무량에 적합한 인원배치	4.14	1.47
3) 부서의 효율적 업무분장	4.37	1.38
4) 업무담당자의 적극적 태도	5.44	1.05
5) 부서의 높은 업무추진력 발휘	5.19	1.14

청소년정책성과	평균	표준편차
6) 담당 부서장의 리더십에 따른 업무성과증가	5.35	1.16
7) 관련 예산의 충분한 편성	4.69	1.29
8)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5.27	1.09
9) 전문가 조언 및 TF운영	4.22	1.35
10) 신속한 의사결정	4.98	1.16
11) 부서는 정책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자원을 동원	4.96	1.17
12) 청소년들에게 관련 정책을 충분히 홍보	5.00	1.14
13)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유도	5.17	1.11
14) 정책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	4.95	1.23
15) 정책집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	5.06	1.12
16) 중앙부처의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4.60	1.26

위 항목들을 인적 환경(1번문항~6번문항), 물적 환경(7번문항~11번문항), 제도적 환경(12번문항~16번문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¹⁶⁾ 그 결과, 세 가지 환경 중에서 제도적 환경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4 청소년정책환경별 차이

청소년정책환경	평균	표준편차
인적 환경	4.86	.96
물적 환경	4.82	.99
제도적 환경	4.95	.97

16) 변수의 차원을 축소(data reduction)하는 경우 별도의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점수(factor score)와 문항평균을 이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요인점수는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요인)와 관계에서 측정오차를 제거한 후 순수한 요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 된다. 반면 문항평균은 데이터 자체로부터 직접 계산된 값으로 직관적이고, 그 값 자체를 이해하기 쉽고 해석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측정오차가 제거된 요인점수를 단일 지표로 변수화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요인점수 간 상관성 가정이 이미 변수 내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요인점수 간의 최적적합관계를 미리 가정하고 인과관계를 검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모형을 과대·과소적합하여 해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는 문항평균으로 변수를 축소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행정구역별로 각 환경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적 환경의 경우 광역시와 시 단위가 높게 나타났고 군 단위와 구 단위가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036$, $p<.05$).

표 VI-15 행정구역에 따른 인적 환경의 차이

행정구역	평균	표준편차
광역시	5.09	0.83
광역시도	4.98	0.72
시단위	5.09	0.98
군단위	4.59	1.09
구단위	4.64	0.91

물적 환경의 경우에도 광역시나 광역도가 높은 점수를 보였고 군 단위나 구 단위가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139$, $p<.05$).

표 VI-16 행정구역에 따른 물적 환경의 차이

행정구역	평균	표준편차
광역시	5.02	0.96
광역시도	5.02	0.81
시단위	5.00	0.98
군단위	4.59	1.09
구단위	4.58	0.94

행정구역에 따른 제도적 환경의 차이도 위와 유사한 패턴이었다. 즉 광역시나 광역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군이나 구 단위지역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65$, $p<.05$).

표 VI-17 행정구역에 따른 제도적환경의 차이

행정구역	평균	표준편차
광역시	5.17	0.91
광역시도	5.13	0.85
시단위	5.11	0.97
군단위	4.73	1.02
구단위	4.74	0.95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광역시나 광역도에 비해 군이나 구단위로 갈수록 청소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제도적 환경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제도적 환경으로 대별되는 청소년정책환경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식한 청소년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인식한 청소년정책성과이며, 통제변수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이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평가한 청소년정책환경으로 앞서 전술한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면 다음의 <표 VI-18>과 같다.

표 VI-18 청소년정책성과 분석의 주요변수

	표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정책성과	353	2.11	7.00	5.34	0.93
성별	353	1.00	2.00	1.57	0.50
연령	353	19.00	58.00	40.22	8.59
인적 환경	353	1.17	7.00	4.87	0.97
물적 환경	353	1.40	7.00	4.82	0.99
제도적 환경	353	1.20	7.00	4.96	0.97
지역 (0=광역시/도, 1=시군구)	353	0.00	1.00	0.86	0.34

〈표 VI-19〉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식한 청소년정책성과의 회귀분석결과이다. 본 모형의 수정된 R^2 은 0.492로 성별과 연령 그리고 인적 환경, 물적 환경, 제도적 환경의 청소년정책 환경은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약 49.2%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9 청소년정책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회귀계수			T값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상수)	1.449**	0.306		4.740
성별	0.025	0.072	0.013	0.345
연령	0.009*	0.004	0.080*	2.061
인적 환경	0.291**	0.055	0.303**	5.345
물적 환경	0.080	0.073	0.086	1.105
제도적 환경	0.354**	0.066	0.371**	5.381
지역(0=광역시/도, 1=시군구)	-0.066	0.104	-0.025	-0.638

주) $p<0.01^{**}$, $p<0.05^{*}$, 수정된 $R^2=0.492$

분석결과를 보면 공무원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정책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유의미한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성과의 영향요인을 보면, 인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이 개선되면 청소년정책성과가 높아지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물적 환경이 청소년정책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구체적으로 인적 환경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303, 제도적 환경은 0.371로 청소년정책의 제도적 환경 개선이 청소년정책성과를 높이는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볼 때, 인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정책의 전문성과 전담조직을 갖추수록 청소년정책의 홍보, 청소년의 높은 참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수록 청소년정책의 성과는 높아진다. 이는 앞선 전문가 의견조사의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결과와도 일치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위한 핵심요인으로 인적역량과 제도적 역량을 지적했으며 이들의 가중치는 각각 0.394와 0.352였다.

3. 소결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명시된 15대 중점과제들이 청소년정책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11개의 핵심지표에 대하여 CYS-Net 운영비율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노력정도,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청소년전담부서운영 순으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유해환경적발건수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율, 청소년수련시설설치율은 다소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11가지 지표 외에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지표로 청소년전담공무원이나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나 활동에 관련된 지표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향후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핵심평가지표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즉 기존의 청소년보호관련지표체계 위주에서 청소년참여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사업평가와 관련해서도 지자체공무원들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수용자들의 평가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해당정책에 대해 청소년이나 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요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의 대표사업을 평가할 때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해당정책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평가요소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바라고 있었다. 즉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우수기관에 대해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해외연수, 평가부진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맞게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청소년정책의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인적, 제도적 환경이 잘 갖춰졌다고 판단할수록 청소년정책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청소년정책의 전문성, 전담조직보유 그리고 청소년정책 홍보와 청소년의 높은 참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앞선 전문가 의견조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높이려면 청소년정책의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VII 장

전문가집단 및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 분석

1. 전문가집단 인터뷰 개요
2. 전문가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3. 공무원집단 인터뷰 개요
4. 공무원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5. 소결

제 VII 장

전문가집단 및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 분석¹⁷⁾

1. 전문가집단 인터뷰 개요

1) 조사 목적

본 연구의 전문가집단 인터뷰는 올해 실시되는 예비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에 전면 시행되는 청소년정책평가의 내실화에 목적이 있다. 이에 정책평가관련 전문가, 청소년학 전문가 그리고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전문가집단 인터뷰에서는 2015년 청소년정책 예비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의 타당성, 내년 전면 평가시에 유의할 점,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부록 5 참조). 특히 본 조사는 참여자의 전문성에 따라 3그룹을 나누었으며, 각 그룹은 최소 2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여 총 10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면접조사는 연구진이 직접 진행하였고, 전자우편을 활용하여 2016년 8월과 9월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전문가집단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참여자에게 조사목적과 내용과 활용 방안 그리고 개괄적인 질문내용을 유선전화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전자우편을 통한 회수 기간은 약 2주에서 3주정도 소요되었다.

17) 이 장은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최용환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3) 인터뷰 참여자 특성

본 연구는 전문가집단 인터뷰의 참여자로 조사목적에 고려하여 전문성별로 정책평가 전문가 3인, 청소년학 전문가 5인 그리고 현장 전문가 2인 등 총 10인을 섭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평가 전문가는 대전광역시의 교수 1인, 경상북도 안동시의 교수 1인, 경기도 안산시의 박사급 연구원 1인으로 구성하였다. 정책평가 전문가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다.

다음으로 청소년학 전문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교수 2인,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교수 1인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교수 1인과 아산시에 거주하는 교수 1인이며 남성이 4인 그리고 여성이 1인이다.

마지막으로 현장 전문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청소년기관에 종사하는 남성 1인과 모 광역시에서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 주무관 여성 1인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들의 나이는 40대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집단 인터뷰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하면 <표 VII-1>과 같다.

표 VII-1 전문가집단 인터뷰 참여자 인적 특성

구분	연번	연령	성별	직업	현거주지	전문분야
그룹1	정책평가 1	40대	남	교수	대전광역시	정책평가
	정책평가 2	40대	남	교수	경상북도 안동시	정책평가
	정책평가 3	40대	남	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정책평가
그룹2	청소년학 1	50대	여	교수	서울특별시	청소년학
	청소년학 2	40대	남	교수	경상북도 경산시	청소년학
	청소년학 3	30대	남	교수	서울특별시	청소년학
	청소년학 4	50대	남	교수	충청남도 천안시	청소년학
	청소년학 5	50대	남	교수	충청남도 아산시	청소년학
그룹3	현장 1	30대	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현장
	현장 2	40대	여	주무관	대구광역시	청소년현장

2. 전문가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1) 시범평가에 활용된 청소년정책평가지표에 대한 개선방안

(1) 정책평가 전문가 : 투입지표보다는 성과지표 위주로 구성

시범평가에 활용된 청소년정책평가지표에 대한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음 3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투입보다는 성과지표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율은 투입지표입니다. 수련시설을 설치했다고 청소년 관련 활동의 증가로 단순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은 요건은 갖추면 만점, 못 갖추면 그에 상응하는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면 거의 만점,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율 역시 투입지표입니다. 더구나 이 지표는 모든 위원회에 청소년이 참여를 해야만 한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이런 지표를 제시하면 각 기관은 무늬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다수 설치하고 말 것입니다(정책평가 1).

둘째는 일부 청소년정책평가지표는 최소기준 충족시 인정하는 지표로 바뀌어야 함을 지적한다.

아동청소년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면 만점을 주어야 합니다. 교육 참여율 지표는 피평가자입장에서 보면, 가장 충족이 용이한 지표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교육의 성과는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책평가 1).

셋째는 시범평가 때 활용된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들이 시계열적 특성을 간과하고 평가대상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한 부분균형의 논리에 빠진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평가를 위해 금년도에 시범 적용한 지표들은 대체로 연도 간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 예상되는 지표들입니다.(중략)..... 예를 들어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율’이 그렇습니다. 이때, 분모인 시군구수는 연도간 변이가 없을 것이므로, 당연히 분자인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수에 따라 이 측정지표의 평가점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포함된 것은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에 이해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지표가 매우 중요한 지표인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의 연도 간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지표의 변별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정책평가 3).

전년대비 청소년 정책 자체사업 예산증가율, 이런 지표는 청소년 정책에만 국한된 부분균형의 논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 정책예산이 매년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고,(중략)..... 청소년 전담 부서 운영여부, 역시 부분균형의 논리입니다. 기관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청소년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정책평가 1).

한편, 일부 정책평가 전문가는 청소년정책평가의 시범평가에 활용한 지표의 지적사항이 내년에 모두 수정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하였다.

(실제 예비로 실시된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지표에 관한 문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타당성이 떨어지더라도 대안이 없다면 대안이 있는 아주 일부만 수정하여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정책평가 2).

(2) 청소년학 전문가 : 청소년중심의 평가지표 설정

다음으로는 청소년학 전문가들이 제시한 청소년정책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점이며 이는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표간의 가중치 문제가 조정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핵심평가지표들의 점수를 총합적으로 환산할 때 가중치 배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시설설치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설치율, 청소년유해환경적발건수 등을 동일한 비율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정책기본계획의 초점을 맞추어 특정 지표에 가중치를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청소년학 3).

둘째, 청소년유해환경지표는 실제 정책내용을 반영하는지 의문임을 지적한다.

청소년유해환경 적발 건수는 적발 건수가 많은 것이 좋은 지표인지 아니면 적은 것

이 좋은 지표인지 모호합니다. 적발 건수가 많다는 것은 유해환경이 많아서 일수도 있고 노력해서 발굴을 많이 해서 일수도 있으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청소년학 1).

또한 유해환경 적발 건수의 경우 적발이 많이 되지 않을 때 점수를 잃게 되는데, 이는 적발노력을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실제 관리가 잘 되어 적발이 안 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포함시켜야 할 지표로 사료됩니다(청소년학 3).

셋째,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가 보다 청소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함을 피력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율을 보면, 청소년의 수가 지역마다 다르고 감소율도 다르므로 분모를 시군구수로 하지 말고 지역의 청소년 수로 하면 어떨지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교육에 참여한 아동, 청소년의 수와 더불어 관련자의 교육참여도 함께 고려하면 어떨까합니다(청소년학 1).

방과후아카데미도 설치율과 더불어, 참여 청소년수, 만족수준 정도, 프로그램 개발 실적 등과 같이 내용적 측면의 지표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사업 취지가 취약 계층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통한 가정, 사회, 학교 복귀라는 점에서 볼 때, 가정, 사회 또는 학교 복귀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청소년학 2).

넷째, 보다 중장기적 차원의 지표로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 방과후아카데미 설치율과 같은 지표는 청소년정책 초기 단계에서는 의미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나, 향후 이러한 시설이나 위원회 등의 설치를 통해 나타나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청소년학 4).

다섯째, 핵심평가지표를 범주화 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핵심평가지표를 범주화 해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청소년정

책 인프라와 추진체계(수련시설 설치율, 방과후 아카데미 설치율, 전담부서 운영여부, 육성위 설치율 등), 청소년참여정책(청참위, 청운이), 지역사회 청소년지원정책(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유해환경, 성폭력예방교육 등), 소수 청소년지원(학교밖청소년), 청소년 예산(예산증가율) 등이 사례입니다(청소년학 5).

(3) 현장 전문가 : 급감하고 있는 청소년인구를 반영

현장전문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법령에 있다는 이유로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부적합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의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심의에 있다는 점에서, 광역단위를 제외한 구군에서는 순수 청소년 사업과 예산이 일정규모 이상 될 경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법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평가 항목에 넣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향후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현장 2).

이와 더불어 현장 전문가들은 청소년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지표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돼 ‘전년대비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과 더불어 (이와 관련한) 정성지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현장 1).

2) 청소년정책평가의 전면 시행시 우려되는 점과 기대되는 점

(1) 정책평가 전문가 : 평가의 중복성

정책평가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평가의 전면 시행 시에 ‘정부합동평가와의 중복성’, ‘평가관련 인센티브의 불명확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자체 등에 대한 각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합동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평가와의 조율을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정책평가 1).

현재 청소년 정책평가는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상 불이익, 정책적 비난 부여, 성과인센티브 등 동기유인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기 평가실효성 담보에 실패하는 경우 동 평가제도가 사문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익년도 이후 평가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므로, 초기 평가시행에 있어 평가의 효과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정책평가 3).

반면에 관료들의 청소년정책 이해도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정책평가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하는 자체로 정책을 검토하게 되고 문제점을 되짚게 되어 향후 긍정적인 정책수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해를 높이는 역할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정책평가 2).

(2) 청소년학 전문가 :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이와 더불어 청소년학 전문가는 ‘평가지표에 대한 피평가자의 공감’ 그리고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수긍여부’를 우려하였다.

평가지표와 그에 따른 지표 산식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의 여부가 우려됩니다. 아무리 타당한 평가라고 해도 피평가자의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청소년학 1).

평가자료 준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예시 등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청소년학 2).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책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지자체 이해당사자들의 승복 여부

입니다. 올해 대표사업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결과, 지자체별로 이 평가의 중요도, 몰입도, 관심도 등이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청소년정책 담당자들의 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과정 도출의 체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 설명회, 정책평가 갈등요인에 대한 합의를 위한 핵심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이 실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았다고 생각될 때 평가의 결과가 좀 더 널리 홍보되고 전체 시·도정에 반영되어 나갈 것입니다(청소년학 3).

또한 예비평가에 나타난 피평가자들의 소극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금년도 시범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하여 서면평가 결과의 타당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회를 주요 권역별로 개최하거나, 지표별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여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등을 통하여 지자체가 청소년정책평가에 보다 협조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청소년학 4).

더불어, 적절한 보상체계마련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가급적 합의 가능한 지표와 평가방식이 아니라면 그리고 개선을 위한 적정 보상체제가 마련되지 않고 평가만 이루어진다면 수많은 공공기관 평가의 하나로 머물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전자를 위해 지표와 함께 평가 전반에 대한 사전설명회와 공유의 자리가 필요하며 이런 평가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체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소년학 5).

하지만, 평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가장 기대되는 점은 중앙정부차원의 개선이 아닌 청소년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청소년학 5).

(3) 현장 전문가 : 청소년정책의 관심 제고

현장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평가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청소년정책을 위해 기대되는 바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정책에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하였다.

(청소년정책평가의 전면 실시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적나라한 현 시점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전국의 모든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현장 1).

(앞으로 청소년정책평가의 전면실시를 통해)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의 관심은 제고될 것입니다(현장 2).

3) 청소년정책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1) 정책평가 전문가 : 평가결과에 따른 엄격한 상벌 제공

정책평가 전문가들은 앞으로 청소년정책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상벌을 엄격히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이익이 보장되는 정책과정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평가의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상벌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명확한 방법은 예산상의 인센티브제공이라고 생각되며 매우 미흡의 지자체나 사업은 반드시 불이익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될 것이고 정책개선 목표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정책평가 2).

청소년 정책평가는 본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평가의 목적 자체가 정책과정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와, 청소년의 이익이 정책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평가를 통해 청소년의 이익이 긍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정책평가 3).

(2) 청소년학 전문가 : 명확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청소년학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앞선 정책평가 전문가들의 의견과 같이 상벌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지자체는) 국비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정책 평가 업무(준비) 담당자에 대한 해외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이 실질적인 보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청소년학 2).

평가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에 제공하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차등분배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평가결과와 공개를 통해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평가 업무는 별도의 귀찮은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포상이나 승진 가산점 등의 부여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청소년학 4).

그러나 일부 청소년학 전문가는 긍정적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고 부정적 피드백은 차후로 미루어 현장의 불만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정책평가가 타당하다고 해도 전면적인 실시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청소년학 1).

청소년학 전문가 5는 평가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의 경우 결과를 통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타 지역 벤치마킹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들이 고려됐으면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상체계가 이뤄질 것을 강조했다. 가령, 정부 훈포장 등 상훈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우수공무원 장관표창과 같은 격려와 지지의 보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청소년학 전문가 5 인터뷰 내용).

(3) 현장 전문가 :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활용

이에 반하여 현장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평가의 결과가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상벌보다는 보다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하였다.

정책평가를 하여 단순 순위가 나오고 우수하면 상 받고, 미흡하면 죄인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치단체별로 재정이나 환경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불가결한 요소에 대해 정부 또는 광역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내에서는 청소년정책 평가 결과를 가지고 지자체와 지역의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고정적으로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현장1).

4)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요인들

(1) 정책평가 전문가 : 정책홍보와 관심

특히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정책평가 전문가들은 ‘평가에 대한 관료의 관심과 이에 대한 홍보’, ‘공식적 제도로서의 인센티브’, ‘피평가기관의 평가관련 인력활용’ 등을 제언하였다.

담당자의 관심과 충실한 보고서 작성이 중요하며(중략)..... 조례를 통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수행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홍보를 통한 정책의 인식확대와 참여 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정책평가 2).

공식영역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제정 및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 평가는 시행에 대한 당위성 또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나, 결과에 대하여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명시성이 부족합니다. 낮은 평가를 받은 피평가기관, 높은 평가를 받은 피평가 기관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는 공식적 제도로서의 인센티브 제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정책평가 3).

평가 전문가 확보를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을 (피평가기관이)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학/연구소 등에 있는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정책평가 3).

(2) 청소년학 전문가 : 평가전문인력의 다양성 확보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청소년학 전문가들은 ‘평가관련 전문인력을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 ‘피평가자들과의 평가지표에 대한 공감’, ‘청소년정책평가 주무부처의 적극적 개입과 조정’, ‘지역구성원의 협조’ 등을 꼽았다.

청소년학, 행정(정책)학, 교육학, 심리학 등에서 측정 및 평가를 전공한 전문 인력들이 어우러져 지표에 대한 검토, 평가과정의 체계성 및 신뢰도 상승을 위한 방안, 결과 활용의 적절한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청소년학 3).

피평가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정책평가지표를 정한다면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공적 안착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학 1).

청소년정책평가의 진행 과정에서 청소년정책 총괄 부서(여성가족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및 조정 필요합니다(청소년학 4).

제도적 영역에서 조례의 제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관련 사업을 얼마나 잘 지역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협력을 구하느냐에 있습니다(청소년학 5).

한 청소년학 전문가는 정책평가가 지역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가를 통해 지역 청소년정책이 사람에 우선 집중하도록 견인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청소년시설(청소년활동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 지도자 처우개선 시스템 마련을 지역차원에서 유도하도록 하고, 이런 점들을 평가의 영역으로 고려하면 좋겠습니다(청소년학 5).

(3) 현장 전문가 : 청소년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현장 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현재 명확하지 못한 역할을 내포한 청소년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의 청소년기본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법령, 조례로 제/개정되어야 합니다. 예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분명치 않은 역할, 현실적이지 못한 육성위원들 구성, 계획과 실행, 평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평가를 준비하고 평가결과에 대해 수렴하는 과정이 담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현장 1).

3. 공무원집단 인터뷰 개요

1) 조사 목적

본 연구의 공무원 인터뷰는 올해 시범 실시된 청소년정책평가제도체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면접조사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6 참조). 먼저, 청소년정책평가가 어떤 점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질문하였다. 이어 올해 시범평가 때 사용된 11개 핵심평가지표의 적절성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대표사업평가지표나 영역에 관한 공무원들의 의견도 들었다. 이어서 청소년정책평가결과가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는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청소년정책평가의 방향이나 개선점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이 6곳의 광역시도를 정한 뒤 해당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 소요시간은 1시간 안팎이었다. 대부분 각 시도마다 2명의 공무원이 인터뷰에 응했고 이 중 한군데에서는 3명이, 또 한군데에서는 1명의 공무원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에 걸쳐 이뤄졌다. 인터뷰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돼 전사됐다.

3) 인터뷰 참여자 특성

본 연구는 올해 실시된 시범평가를 경험한 17개 광역시도의 공무원 중 1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2명 중 9명은 여성, 3명은 남성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많았다. 연령은 30대 2명, 40대 5명, 50대 5명이었다. 근무지를 살펴보면 광역시에 근무하는 경우가 5명, 광역도에 종사하는 경우가 7명이었다. 청소년정책부서에서 일한 경험은 1년 남짓이 가장 많았고 2개월이라고 응답한 공무원도 2명이었다. 청소년정책부서의 경우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2명에 불과했다.

표 VII-2 공무원집단 인터뷰 참여자 인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근무지	청소년 정책 부서경험
공무원 1	여	30대	000 광역시	1년
공무원 2	여	50대	000 광역시	1년
공무원 3	여	30대	000 광역시	2개월
공무원 4	여	50대	000 광역시	1년 8개월
공무원 5	여	40대	000 광역도	8개월
공무원 6	여	40대	000 광역도	1년 6개월
공무원 7	여	40대	000 광역도	2개월
공무원 8	남	50대	000 광역도	1년
공무원 9	여	40대	000 광역도	3년
공무원 10	남	50대	000 광역시	5년
공무원 11	남	50대	000 광역도	3개월
공무원 12	여	40대	000 광역도	1년

4. 공무원집단 인터뷰에 대한 분석

1) 청소년정책평가의 필요성

청소년정책평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응답자들에게 물었다. 많은 응답자들이 평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였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는 지금 당장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평가의 방식이 현실과 잘 맞지 않아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더러 나왔다.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청소년의 달, 5월에 청소년팀이 바쁘거든요. 그 때 맞물려있어서 업무가 과중되고,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광역시, 도도 있지만 저희는 직원이 3명밖에 없거든요. 3명에서 기존에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평가를 준비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어요. 나중에 평가가 정착화 되면 피드백이 되어서,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도 어차피 평가에 들어

가니까 조금 더 충실하게 작성하고 이런 쪽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딱히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이 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공무원 1).

앞으로 필요는 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각 시도별로 평가하기엔 좀 이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공무원 2).

내년에 청소년정책평가의 본 평가를 바로하지 말고 예비평가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중략).....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준비 역시 많이 미흡할 것이라 생각합니다(공무원 10).

제 개인적으로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평가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시 군이 엄청 바쁠거라는거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평가서를 제출할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공무원 4).

평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가의 방식이 지자체 현실하고는 잘 안맞아 많이 힘들었어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논문쓰는 줄 알았어요(공무원 7).

한편 올해 예비평가를 실시한 청소년정책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의견을 제기하며 정책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저는 굳이 (청소년정책평가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포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단체에서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방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율성을 기반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고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더구나 지자체별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여가부에서 정책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입장에서는 획일적인 평가를 토대로 데이터를 산출하고 싶겠지만 아시다시피 정량적인 지표보다 정성적인 지표가

많아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굳이 평가를 한다면 기본적인 사항만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치단체 별로 특성이 있어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잣대로 세부적 평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공무원 10).

일부 공무원은 정부합동평가 영역과 청소년정책평가 영역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평가자체의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이 청소년 지금 관련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거든요.(중략)... 지금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이렇게 시도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정부합동평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정책평가가 결국은 이와 같은 정부합동평가와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가부의 평가가 합동평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합동평가 항목으로 맡기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공무원 8).

2) 핵심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

올해 시범평가 때 사용된 11개 핵심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일부 공무원들은 핵심평가지표의 항목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지만 이 지표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핵심평가지표는 괜찮은 것 같아요(공무원 2).

지자체합동평가지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니까 합동평가지표는 아는데 다른 지표들은 기억이 사실 잘 안나요. 현안문제가 너무 많고, 다급하게 수련관 짓는 거 때문에 제출하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청소년업무는 거의 저 혼자하고 있어요(공무원 3).

또다른 공무원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 11개 핵심지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도 말했다.

우리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감준비에, 예산작성에 저희가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거만 머릿속으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공무원 7).

반면에 핵심평가지표들이 정량적 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청소년정책이 지향하는 목표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았다.

(핵심평가지표를 보면) 정량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수월은 하겠죠. 그러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그 자체와 본질적인 목적이랄까 이런 걸 보면, 어떤 조금 더 우수한 사례라고 할까 이런 걸 좀 확대를 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자체의 특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할 때 (정량적 비교는 어려워) 여기가 잘했다, 여기가 못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면) 그런 게 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공무원 9).

정량 지표로 평가할 때 가장 놓치는 부분들이 무조건 숫자들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참여 인원수, 참여율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큰 행사 할 때 10,000명, 5,000명하면 실제로 그 5,000명을 세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담당자가 그냥 쓰는 숫자입니다.(중략)..... 이 평가를 안 하더라도 저는 정말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숫자만 강조하는 정량지표를 만들어버리면 앉아서 숫자놀이만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거든요(공무원 12).

3) 대표사업평가지표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

올해 대표사업평가로 지정된 '위기청소년지원강화사업'에 관한 평가지표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 달라고 인터뷰참가자들에게 요구하였다. 그 결과, 활동이나 참여 쪽으로 대표사업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가령, 한 공무원은 내년에는 청소년활동쪽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청소년활동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기청소년지원사업을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청소년활동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발전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공무원 2).

또 다른 공무원은 지자체가 위기청소년사업과 청소년활동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 대표사업에 관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타 지자체도 업무 분장이 위기 쪽, 진흥 쪽으로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쉼터, 보호가 위기청소년 지원강화사업에 들어간다고 보면 청소년 업무가 크게 위기청소년지원과 청소년활동진흥 이 두 가지 맥락으로 분리될 수 있잖아요. 위기파트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청소년들의 육성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도별로 사정도 있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너희 하고 싶은걸 해서 내라고 하면 절반/절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공무원 1).

지금 현재 이 대표사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자체 선정한 대표정책이 평가대상이었으면 합니다(공무원 8).

위기청소년은 극히 일부분이니까 포괄적인 청소년정책사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도 물론 중요한데 수많은 청소년 중에서 위기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잖아요. 그걸 굳이 그렇게 나눈다면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대표사업을 위기라고 하면은 위기에 처해있는 아이들 물론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 되지만 그 나머지 청소년들도 같이 영향력 있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위기를 올해 대표사업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쪽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공무원 7).

한편, 대표사업보고서 작성을 힘들어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보고서작성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이 진행되다보니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몰라서 물어보고, 여쭙봤거든요. (어디에 물어

보셨어요?) 타시도에 교육 다녀오신 분들에게 물어도 자기들도 직접 가서 회의를 참여하고 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공무원 2).

저는 서식 자체에 대한 담당자 이해가 좀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담당자 스스로도 가설을 세워가면서 설명을 하고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웠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실무담당자들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자주 바뀌거든요. 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충분히 이런 평가의 당위성이라던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작성요령, 평가를 하는 의도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을 주고 그걸 작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를 위한 평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담당자가 연구분석자도 아닌데 그런 취지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써야 하니까 그게 굉장히 일을 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또 다른 일이 되어 버렸어요(공무원 6).

대표사업 평가지표 항목들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정책형성과정에서 사전분석·의견수렴의 적정성 부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타시도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얼마나 의견수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소년팀하고 제일 맞지 않는 항목이어서 작성이 제일 어려웠고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든 청소년위기사업에 대해 실시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현실과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공무원 1).

따라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자주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교육이라도 한 번씩 접해봐야 직접 듣는 거하고, 옆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둘러 듣는 거랑 틀리거든요. 교육하면 두 명 정도 가서 하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 보면 서로 인지하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많이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부의 경우 직접 담당자를 불러서 하는 교육은 많이 없더라고요. 복지부는 일이 엄청 많거든요. 따라서 시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직접 와서 듣게 해요...올해 보고서 중에 괜찮았던 것을 골라 담당자에게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공무원 2).

4) 청소년정책평가결과의 활용방안

청소년정책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방안을 질문하였다. 가령, 평가결과에 따라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컨설팅을 실시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었다.

한 공무원은 예산이 많이 없는 여성가족부의 상황을 잘 아니까 청소년의 달 행사와 같이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라도 인센티브로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몇 십억의 특별교부금을 인센티브로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담당자 해외연수 보내는 것 정도야 그 다음해에 담당자가 바뀌어버리면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일 뿐이어서 의미가 없어요. 청소년팀 와서 보니까 해외인솔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서 인솔프로그램 다녀오는 것도 버거운데 인센티브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청소년의 달 행사가 지자체별로 다 있거든요. 청소년 달 행사비로 100만 원을 주더라도 우수 지자체에 청소년의 달 행사를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해외 연수 보내주는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공무원 1).

또 다른 공무원은 해외연수가 좋겠다고 말했다.

일반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라고 하면 그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승진이 가장 중요한데, 어차피 그건 못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페이도 더 해주실 수 있는게 아니라면 방법은 그것밖에. (바람이라도 쐬고) 그게 아마 가장 제 생각에는 피부에 닿는, 그러면서 가서 공부만 하지 말고 바람도 쐬으면서 선진국의 것은 조금만 보고 시도 공무원들끼리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공무원 4).

그리고 청소년정책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신규 사업의 신청을 받아 여성가족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관련 신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할 때, 여성가족부는 항상 예산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 선정을 할 때의 평가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점을 준다고 한다면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듯합니다(공무원 9).

마지막으로 표창의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표창은 다소 인센티브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군청이나 대통령 표창 정도의 그것을 표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장관님 상이나 지사님 상이나 우리가 크게 이렇게 뭐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인센티브는 아닙니다(공무원 8).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서열화보다는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컨설팅을 하는 데 초점을 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열화하는 거 자체를 저희 지자체 공무원들은 별로 원치 않고요. 잘된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잘됐다고 선별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전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센티브가 크면 저희 서열에 따른 강박감이나 부담, 그런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평가를 하면서 잘된 사례를 전파하고 홍보하는데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공무원 5).

정책평가결과를 가지고 17개 시도를 1위부터 17위까지 늘어놓는 그런 것 안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다 뿌려가지고 이랬다 이거는 좀 안했으면 좋겠고요. 우수사례가 뭐가 있고 부진사례가 또 뭐가 있는지 그 정도해서 그걸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그걸 내려 보내 주시면 아 이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업무를 다 같이 순환하면서 공유할 수 있으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시는 게 더 좋을 거구요(공무원 7).

컨설팅의 경우 평가위원들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에서 오신다하면 아무것도 준비안하더라도 조금 마음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타시도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타시도가 새로운 시책을 하면 어떻게 하는

지 물어보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타시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후 컨설팅이 꽤도 괜찮을 것 같고요(공무원 1).

컨설팅이 필요한 한 것 같아요. 저희시가 000평가에서 올해 1등을 했는데 그 컨설팅의 힘도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위원들이 이렇게 청소년정책에 관해서 시도에 컨설팅해주시면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위기청소년 같은 경우 우리가 아직까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주시고, 그 시도의 실정에 맞게 약간의 컨설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공무원 4).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컨설팅을 위한 별도의 시간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희는 일단 거의 시간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대면하거나 시간을 내서 워크숍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죠. 저희는 조금 더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길 사실 바라고 있죠. 가족정책연구원이랑은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룹으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나중에 메일을 지정해가지고, 어느 메일로 주고받기로 해가지고(공무원 6).

워크숍 행사 때 담당공무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워크숍 같은 경우도 시간만 할애가 된다면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받고 끝낼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공무원 5).

5) 현행 청소년정책평가의 방향이나 개선점

현행 청소년정책평가는 개별사업평가, 핵심지표평가, 대표사업평가로 구성돼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자는 이러한 평가체계의 개선사항이나 향후 청소년정책평가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개별사업과 대표사업만 평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별사업은 매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게 돼 있으니까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대표사업평가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CYS-Net, 학교밖청소년지원노력, 청소년유해환경정적발견수,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참여율 등은 지자체합동평가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공무원 1).

한 공무원은 지금처럼 별도로 청소년정책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에 포함시켜 청소년정책평가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공무원 3 인터뷰 내용). 즉 기존 정부합동평가에 한 두 개 더 추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공무원(공무원 5)은 평가의 신뢰성이나 대표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즉 지자체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공무원 7)은 평가지표들이 너무 중복되고 모호한 것들이 많아 평가지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앞선 청소년정책담당 공무원들의 청소년정책 업무경험은 1년 내외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어떤 공무원은 청소년정책평가 지표에 청소년전담 부서 운영보다 청소년담당 전담공무원을 활용하는 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청소년정책) 전담부로서 청소년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담 공무원을 두는 것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나와 있는데 이를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는 청소년 전담 전문관을 두고 있고 몇 년전 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정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잣대이기에) 이를 강조하기 위한 노력의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공무원10).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의 특수성을 가진 시도의 경우 평가의 기준을 보다 현실화해주었으면 하는 요청도 있었다.

저희는 ○○○○도 라고 해가지고, 전부 행정시 입니다.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입니다. 그 래가지고 우리 시군구할 때 우리 ○○○는 시군구를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략)..... 평가할 때 이런 점이 감안이 돼야지, 안 그러면 우리 만약 위원회 같은 경우 행정시에는 설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위원회 설치가 어떤 곳은 어쩔 수 없이 0점 나오고 합니다(공무원 11).

5. 소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청소년정책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들은 올해 실시된 시범평가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전문가들은 청소년정책평가지표가 장기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1개의 핵심성과지표들 상당수가 설치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평가지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한 평가지표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더불어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도 철저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직접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은 청소년정책평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인지 평가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쓸 여유가 없어 다소 평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업무에 쫓겨 평가지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더러 있었다. 특히 공무원들은 대표사업평가지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잘 모르는 평가항목들도 있었고 현실과 맞지 않는 항목들도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사업평가지표들을 보다 단순화하고 공무원들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표창이나 해외연수 등을 인센티브로 많이 바라고 있었지만 서열화된 평가보다는 컨설팅위주의 평가에 초점을 뒀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무원들도 일부 있었다.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지자체의 합동평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평가가 중복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즉 지자체합동평가가 진행되는 데 굳이 청소년정책평가를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고 지자체합동평가에 일부 평가항목을 포함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정책평가전문가들과 실제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 사이에는 평가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범평가를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책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피평가자들에게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정책평가를 왜 실시해야 하는지, 정책평가가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잘 판단해서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내년도 평가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VIII 장

정책제언

1. 법제도영역
2. 평가지표영역
3. 환류체계
4. 평가체계

제 VIII 장

정책제언¹⁸⁾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평가의 체계화를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를 분석하였고 전문가, 중앙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정책전문가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아래 <표 VIII-1>과 같이 법제도, 평가지표, 환류체계, 평가체계 등 네 영역에서 청소년정책평가체계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표 VIII-1 주요 영역별 정책제언 내용

대영역	소영역	정책방향
법제도	청소년기본법	－ 정책평가와 관련된 청소년기본법의 보완
평가지표	개별사업평가지표	－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배점 확대
	대표사업평가지표	－ 피평가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지표내용을 단순화 － 대표사업보고서작성요령에 대한 교육 강화 － 청소년참여 및 활동영역에 대한 대표사업평가 강화
	핵심평가지표	－ 설치율 위주의 평가가 아닌 성과위주의 평가 － 청소년활동이나 참여와 관련된 평가지표의 확대
환류체계	보상	－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보상체계 강화
	컨설팅	－ 지자체방문컨설팅 강화
평가체계	평가대상	－ 시군구 단위까지 평가를 확대
	평가방식	－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등 수용자 평가 강화
		－ 중앙부처의 경우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률 점검
		－ 평가대상의 그룹화를 통한 평가방식의 유연화
	평가운영	－ ‘평가운영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운영을 내실화

18) 이 장은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최용환 부연구위원, 도수관 교수가 집필함.

1. 법제도영역

1) 정책평가와 관련한 청소년기본법의 일부보완

(1) 제언배경

앞서 언급한 심층면접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일선 관료들은 청소년정책평가의 전면 실시가 우리의 청소년정책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작업이며, 청소년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임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소년정책평가의 피평가자들은 평가의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과 시행령은 법률적으로 큰 흠결이 있지는 않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권고, 재평가 등 평가절차와 과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평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향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 청소년정책평가의 제도적 체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은 정책관련 법체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행정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법조항의 개선점을 수렴하였다.¹⁹⁾ 특히 청소년정책평가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실효성, 실행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청소년정책평가법령의 형성방식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은 평가업무 추진에 큰 법적 흠결을 갖고 있지 않지만 보다 실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할 여지가 있다(2016년 9월 20일자 자문회의). 이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방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안은 같은 부처이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대한 권고를 규정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가의 이의가 있을 시에 여성가족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재평가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여 보다 유연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표 VIII-2> 참조).

19) 본 연구진은 2016년 9월 20일, 서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으며(활동참여연구실-1235, 2016. 0919), 별도의 서면자문을 2016년 9월 27일 이메일로 수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적시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은 2016년 9월 27일에 이메일로 수신한 서면자문을 바탕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과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등이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진실적과 관련한 권고를 행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와 관련권고 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와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및 재평가 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및 재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와 재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2016년 9월 20일자, 000 박사 자료회의 청소년기본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400&efYd=20160302#00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기본법의 시행령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본법의 시행령은 앞선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발맞추어 재평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보호복지 등의 주요 청소년정책목표를 기술하여 평가추진실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방향은 다음의 <표 VIII-3>과 같다.

표 VIII-3 바람직한 청소년정책평가를 위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방향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 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재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④ <u>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함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 청소년활동과 그 지원(청소년창업을 포함함),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자질향상,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확충 및 기타 필요한 분야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항 신설).</u>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여성가족부 소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의2(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재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이하 재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2016년 9월 20일자, OOO 박사 자문회의 청소년기본법시행령(<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744&efYd=20150504#0000>)

(3) 추진체계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대하여 부처에 대한 평가권고의 규정과 재평가 그리고 개별 청소년사업을 명시한다면 더 원활한 정책평가의 토대가 된다. 이와 같은 법제도

개선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위의 개정초안 혹은 새로운 법률개정안을 바탕으로 수정법령의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계 전문가, 청소년계 전문가 그리고 관료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수정된 개정 법안을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앞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제도적 요인은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과를 높이는 가장 큰 영향요인이다. 특히 청소년정책평가에 있어 제도적 요인의 영향력은 인적 요인의 영향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상의 평가절차와 내용을 보다 상세히 규정한다면 이는 평가의 안정성을 높이고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본법은 정책평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은 법적 제도의 공고화는 내년 전면 실시되는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피평가자의 불확실성을 보다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평가지표영역

1) 개별사업평가지표: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에 대한 배점 확대

(1) 제언배경

앞서 2장에서 살핀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개별사업을 평가할 때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예산집행률, 성과지표의 적절성, 목표달성률 등 모두 7가지의 평가지표가 사용되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하지만, 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지 않더라도 그 목표만 달성하면 20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앞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전문가들은 목표달성도보다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성과달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현행 20점으로 돼 있는 성과지표의 적절성 항목배점을 30점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달성률의 경우 피평가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이에 대한 배점은 10점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표 VIII-4 개별사업 평가배점 조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개선안
1. 사업기획(30점)	- 기본계획에의 부합성 (10) -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사업내용의 적합성 (10)	- 기본계획에의 부합성 (10) -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 사업내용의 적합성 (10)
2. 사업집행(30점)	-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 예산집행률 (20)	- 추진일정의 적정성 (10) - 예산집행률 (20)
3. 성과달성도(40점)	- 성과지표의 적절성 (20) - 목표달성률 (20)	- 성과지표의 적절성 (30) - 목표달성률 (10)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청소년정책분석·평가 가이드라인, 13쪽.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대한 출처임)

(2) 정책방향

공무원들이 정책사업의 추진실적을 제출할 때 목표치를 유리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목표치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했느냐이다. 따라서 목표달성률보다 성과지표의 적절성 부분이 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성과지표의 적절성 부분에 대한 배점을 현행보다 늘려야 하는 것이다.

(3) 추진체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제출한 개별사업에 대해 평가단에서 목표치를 일일이 설정해주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과지표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비중을 많이 뒤서 평가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성과지표를 어떻게 적절하게 설정할 것인지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4) 기대효과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의 경우 목표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과지표의 적절성 항목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대표사업평가지표: 피평가자가 이해하기 쉽게 평가지표항목의 단순화

(1) 제언배경

대표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성평가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앞서 본 연구의 2장에서 제시한 대로 모두 11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하지만, 공무원 인터뷰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담당자들은 대표사업평가지표를 이해하는데 힘들어했다. 너무 학술적이고 난해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지표항목끼리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무원도 많았다.

따라서 피평가자들이 알기 쉽고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항목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과감히 중복되는 부분은 없애고 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항목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책방향

대표사업평가 지표가 너무 복잡하고 중복된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표 VIII-5>와 같이 제시하였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평가항목이 11개 지표에서 7개 지표로 줄어들었고 정책형성에 있던 성과지표적정성 항목의 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먼저, 정책기획의 타당성은 정책수립계획을 얼마나 적절하게 했느냐와 차별적으로 했느냐로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정책집행의 적절성은 추진일정의 적절성, 예산집행, 정책소통 및 홍보로 평가하였다. 공무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느끼는 자원배분의 적정성과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대응성 항목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항목은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달성정도로 바뀌 성과지표를 얼마나 적절하게 설정하고 달성했느냐로 평가하였다. 앞서,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정책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 바 있어 이 항목의 배점을 높였고 목표치와 달성정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같은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 특히 공무원들은 기존의 평가항목으로 있었던 정책효과성에 대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즉 실제로 청소년정책이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효과성에 대한 항목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달성정도로 단순화 하였다.

표 VIII-5 대표사업 평가항목 개선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정책기획의 타당성(30점)	- 정책계획수립의 적절성 (20) - 정책기획의 차별성 (10)
2. 정책집행의 적절성(30점)	-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준수 (10) - 적절한 예산집행 (10) - 정책소통 및 홍보 (10)
3.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달성(40점)	- 성과지표의 적절성 (20) - 성과지표의 달성도 (20)

7개 각 평가지표별로 체크해야 할 리스트는 다음 <표 VIII-6>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 번째 정책계획수립의 적절성지표에는 대표사업의 정책계획수립을 위한 외부환경의 반영, 인력계획 및 조직체계 구성 등을 세부평가항목으로 넣었다. 두 번째 정책기획의 차별성은 지자체가 다른 기관과 차별되는 정책을 얼마나 수행했느냐가 주요 평가항목이다. 세 번째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준수평가항목은 해당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을 얼마나 잘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이러한 일정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로 평가된다. 네 번째 적절한 예산집행은 주어진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집행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다섯 번째 정책소통 및 홍보 지표는 정책에 대한 소통과 홍보노력을 측정하는 평가항목이다. 여섯 번째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는 성과지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평가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기관이 설정한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로 평가된다.

표 VIII-6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1. 정책계획수립의 적절성	
지표 정의	기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적절한 예산반영과 사업운영 전략 등 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평가 내용	○ 기관 대표사업의 계획수립 및 실현가능성 - 외부환경 변화의 반영 및 대응방안 모색 활동 등 - 대표사업의 계획달성을 위한 외부와의 협력 활동(관계부처 등 관련 기관 및 상위

	기관과의 협의 노력 등) - 대표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관계부처 등 관련 기관 및 상위 기관 목표와의 연계성 강화 등) - 대표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부구성원의 참여 활동 - 대표사업계획 실천을 위한 인력계획 및 조직체계 구성 여부 ○ 기관 대표사업계획의 추진 관리와 관련된 노력 및 활동 - 기관 대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구체적인 계획과 과업성취도 평가 여부 -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계획의 수정·보완 여부와 그 방법의 타당성 여부 - 기관 대표사업계획의 상위기관 운영계획과의 연계 여부
2. 정책기획의 차별성	
지표 정의	다른 기관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기관 고유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내용	- 기관 고유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해 외부환경 분석과 정책대상집단의 욕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다른 기관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기관 고유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 다른 기관과는 달리 평가대상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장기적 계획과 연도별 구체적 계획 그리고 과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
3. 추진일정의 적정성 및 준수	
지표 정의	기관의 대표사업 추진과정이 적정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일정을 준수하면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내용	- 기관 대표사업 추진일정 - 기관의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율
4. 적절한 예산집행	
지표 정의	기관이 대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대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평가 내용	- 기관의 대표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 집행지침 준수 여부 - 기관이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대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 - 기관의 대표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5. 정책소통 및 홍보	
지표 정의	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표사업 설정, 추진, 성과평가, 환류 과정 전반에서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와 기관 대표사업에 대한 홍보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 내용	- 기관 대표사업의 설정, 추진, 성과평가, 환류 과정 전반에 걸쳐 내·외부 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있는지 여부

	- 기관 대표사업에 대한 홍보를 내·외부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홍보 횟수
--	--

6.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표 정의	기관 대표사업의 성과지표가 기관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달성가능성, 구체성, 측정가능성, 시간과 비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평가 내용	○ 기관 정책목표와의 연계성 - 기관의 목표체계(미션-전략목표-성과목표)하에서 기관 대표사업이 상위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기관 대표사업의 목표와 기관 대표사업의 성과지표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선정되었는지 여부 ○ 기관 대표사업 성과지표의 달성가능성 - 기관 대표사업의 내용과 성과지표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 - 기관 대표사업 성과지표의 변화를 사업의 내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대표사업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대표사업 성과지표의 구체성 - 기관 대표사업 성과지표의 의미가 명확하여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외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해당 사업만의 성과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대표사업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 기관 대표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인 방식으로 지표값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대표사업 성과지표의 시간·비용의 적절성 - 기관 대표사업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한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환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과 비용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지 여부

7. 성과지표의 달성도

지표 정의	기관의 대표사업 수행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 성과목표 달성 및 향상 정도를 평가하고, 대표사업 수행에 대한 사업대상집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내용	○ 기관 대표사업 목표의 달성도 및 대표사업 수행의 기관생산성 개선도 - 기관 대표사업의 목표치 설정 이후 달성 여부를 평가(특정 목표치 설정의 경우) - 전년대비 기관 대표사업의 실적(기관 생산성) 향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전년대비 향상 정도를 목표치로 설정할 경우) ○ 기관 대표사업 수행에 대한 사업대상집단의 만족도 - 기관 대표사업 수행 이후 사업대상집단의 만족도 향상 정도(사업 수행 이후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 기관 대표사업 수행 이후 사업대상집단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사업 수행 이후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처: • 경상북도 (2013). 2013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편람, 52-58쪽.
• 김영준 (2011). 관광단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87-89쪽.
• 김현규, 박희정 (2003).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체제의 실증분석, 305쪽.
• 한국기업평가원 (2012). 지역특구 성과평가를 통한 지역특구제도 발전전략, 43쪽. 등을 종합해 재구성함.

(3) 추진체계

본 연구가 위에서 개선사항으로 제기한 새로운 대표사업평가지표는 공무원들의 의견에 기초해 연구자의 판단으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평가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지표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평가전문가와 청소년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선된 평가지표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몇 차례 대표사업평가를 통해 지표를 개선, 보완하는 노력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기대효과

위에서 제안한 새로운 지표들은 다시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계속 보완해야 할 항목들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올해 시범평가 때 사용된 대표사업의 평가지표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보다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된 지표들이 평가에 활용된다면 피평가자들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평가보고서 작성시에도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대표사업평가지표: 평가지표 및 평가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 강화

(1) 제언배경

개별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연 초 제출한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 중 전년도 추진실적을 근거로 평가를 시행해서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대표사업보고서의 경우 위기청소년지원강화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A4 15매 내외로 작성하도록 요구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다. 공무원들과의 인터뷰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피평가자들은 평가지표가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처음 써보는 평가보고서 작성에도 힘들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표사업평가항목 및 보고서작성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자주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방향

올해 시범평가의 경우 지난 4월에 한 차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평가설명회를 가졌다. 이 때 시범평가체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표사업평가항목 및 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여 대표사업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담당자 교육이 1년에 최소한 두 차례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11월경에 예정돼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때 교육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또한 연 초에 공무원 정기 인사로 담당자가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월초 정도에 다시 한 번 교육이 실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을 강화하여 담당공무원들이 대표사업평가항목들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3) 추진체계

먼저, 매년 11월 중에 실시되는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대표사업평가지표항목을 설명하고 보고서작성요령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 때 공무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마련해 피평가자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 늦어도 2월초에는 다시 한 번 대표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청소년학 4)의 지적대로 권역별로 평가설명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4) 기대효과

대표사업의 평가틀에 관한 교육이 강화된다면 피평가자들이 대표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대표사업평가지표: 청소년참여 및 활동영역에 대한 대표사업평가 강화

(1) 제언배경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실시된 청소년정책시범평가에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위기청소년 보호·지원강화’ 과제에 대한 대표사업평가가 이뤄진바 있다. 하지만, 청소년정책영역이 보호 뿐 아니라 청소년참여나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나 정치사회적 참여 등을 대표사업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외국의 청소년정책평가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유럽 국가들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참여,

정치사회적 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 스포츠 활동 등 청소년활동이나 참여에 대한 지표들을 중요시 하고 있다. 공무원들 역시 청소년정책평가시 필요한 지표로 청소년참여와 활동 등을 꼽았다.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된 지표 역시 청소년보호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참여 및 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2) 정책방향

청소년정책을 크게 분류해보면 보호영역과 참여 및 활동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지원사업을 대표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청소년참여나 활동에 대한 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앞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공무원들은 위기청소년지원강화 과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청소년참여활성화나 진로체험 등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인터뷰결과에서도 청소년활동부분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3) 추진체계

청소년들의 참여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표사업평가로 설정하여 이를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2 참조)에 나와 있는 15대 중점과제 중 청소년의 참여활성화나 청소년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등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제 중 하나가 대표사업으로 선정되면 대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와 기준 등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4) 기대효과

청소년참여나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 각 지자체가 청소년들의 참여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5) 핵심평가지표: 설치율위주의 평가가 아닌 성과위주의 평가

(1) 제언배경

올해 시범평가 때는 부록에 있는 설문문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11개의 핵심평가지표가 사용되었다. 이 중 네 개 지표는 지자체 합동평가 때 사용된 것들이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많은 전문가들은 단순히 설치율 보다는 해당 지표가 나타난 성과위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설치율과 같은 평가지표가 지속되어 활용될 경우 정책투입지표가 바로 정책성으로 이어지는 평가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성과가 청소년정책에 대한 개선노력보다 지자체 재정규모에 좌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지자체입장에서 한 개의 수련관을 짓는데도 수십억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11개의 지표 중 청소년유해 환경적발건수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적절성 정도는 낮게 나타난바 있어 이 지표들에 대한 보완도 시급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유해환경적발건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개선노력과 무관한 변수이어서 평가지표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청소년유해환경적발건수’는 청소년정책의 개선노력보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인구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는 핵심평가지표가 아니라 통제요인에 가깝다.

(2) 정책방향

앞서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설치율 보다는 참여 청소년 수, 만족정도, 프로그램개발실적 등 운영실적 위주로 평가지표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가령,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수 보다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지자체에 건의한 청소년정책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었는지와 같은 산출지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3) 추진체계

현재 설치율 위주로 구성된 투입지표 중심의 핵심평가지표를 산출지표 중심의 평가지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표에 부합하는 세부 평가지표항목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개선될 평가지표 안은 정책평가 전문가들과 청소년학 전문가들의 검토로 몇 가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지자체 공무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기대효과

기존 투입지표위주의 핵심평가지표를 성과위주의 지표로 전환하면 단순히 설치율로 평가하기 보다는 운영성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위원회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핵심평가지표: 청소년활동이나 참여와 관련된 평가지표의 확대

(1) 제언배경

11개의 핵심평가지표를 보면 CYS-Net 운영이나 유해환경적발과 같이 보호위주의 평가지표가 눈에 많이 띈다. 하지만, 본 연구가 분석했듯이 유럽의 경우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청소년정책평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정책방향

보호위주의 평가지표에서 활동이나 참여위주의 평가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현재는 청소년정책인프라구축차원에서 청소년관련 시설이나 위원회의 설치정도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문화활동이나 정치사회적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평가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청소년문화활동이나 스포츠활동에 각 지자체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지도 평가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정도도 평가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참여 활동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치활동 수준에 한정하기보다는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시민의식 함양’, 그리고 청소년정책수립·집행 및 평가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청소년 참여 개념의 폭을 넓히고, 이들 활동을 보장·지원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추진체계

현행 핵심평가지표는 청소년정책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 장기적으로 많은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자체합동평가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네 가지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 중 적절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표들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남은 지표들을 가지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참여 개념을 확장시키고 이를 보장·지원하기 위한 성과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생적 청소년조직(동아리)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 제공, 근린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청소년 참여사업 실적 및 시민조직에 청소년 및 청소년조직의 참여율 등이 점진적으로 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책개발·평가·환류단계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나 형식적 참여에 그치기보다는 프로그램 기획·자문·운영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청소년의 참여나 활동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핵심평가지표로 삼는다면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환류체계

1) 보상: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보상체계 강화

(1) 제언배경

공무원들에게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은 매우 중요하다(Matthews and Dickinson, 2000; Milgrom and Roberts, 1992). 본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중앙부처에 비해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평가환류체계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았다. 올해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여성가족부에서도 특별한 보상체계를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해외연수를 고려하고 있을 뿐이다. 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향

담당공무원들과의 인터뷰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공무원들은 여성가족부장관표창보다는 대통령표창을 많이 바라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장관보다는 격이 높은 대통령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어떤 식으로든 청소년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인터뷰결과에서도 언급됐듯이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청소년정책신규사업선정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른 부처가 하는 것처럼 큰 지원은 바라지 않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평가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포상이나

지원과 같은 보상체계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센티브의 금전적 보상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3) 추진체계

먼저, 평가기관은 일선공무원들을 상대로 인센티브에 대한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몇 가지 인센티브 안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평가결과에 따라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상체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기대효과

평가를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평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매우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확립해 놓으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든 평가를 준비하는데 많은 신경과 노력을 쓸 것으로 기대된다.

2) 컨설팅: 지자체방문컨설팅 강화

(1) 제언배경

올해 시범평가 때는 12월초로 예정된 우수사례발표워크숍 때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이다. 즉 평가위원들이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정책방향

담당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들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직접방문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접방문하지 않고 컨설팅자료만 주면 공무원들이 해당 자료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평가결과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을 적절히 제기하기가 어렵다. 즉 컨설팅자료를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같은 컨설팅방안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추진체계

평가에 투입된 모든 평가위원들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일일이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2~3명 정도가 한 조가 되어 평가기관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다. 미리 해당지자체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받아 컨설팅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수한 컨설팅 평가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들이 다른 부처의 평가업무에 준하는 수당제공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위원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5년 예비평가 시에 평가위원들의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4) 기대효과

컨설팅위원들이 직접 해당지자체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면 피평가자들과의 충분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입장에서는 평소 평가결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을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며 향후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 차년도 평가체계를 세우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평가체계

1) 평가대상: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평가범위를 확대

(1) 제언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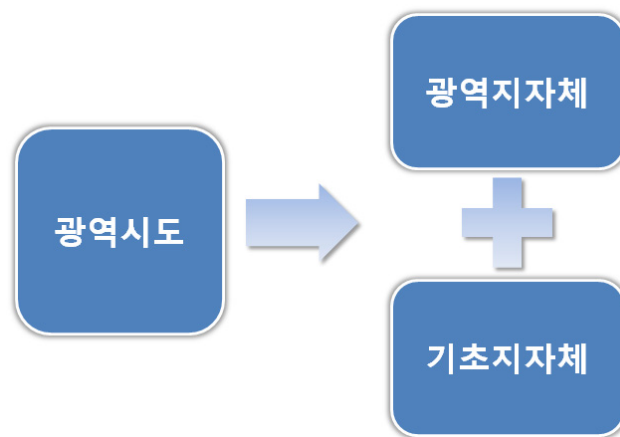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시행된 청소년정책시범평가에서는 17개 광역시도만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평가대상을 확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국민안전처의 재난관리평가의 경우 17개 광역시도 뿐 아니라 우수 시군구 등 총 47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2) 정책방향

올해 실시된 지자체평가는 개별사업평가, 핵심지표평가, 대표사업평가로 이뤄졌다. 기초자치단체까지 평가대상을 넓힐 경우 개별사업평가나 핵심지표평가가 아닌 대표사업평가위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추진체계

250여개에 달하는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광역시도에서 두 세 개 정도의 시군구를 선정해 평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광역시도에 요구해 두 세 개의 시군구를 선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평가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해당 기초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 같이 평가대상인 기초지자체가 결정되면 17개 광역시도 뿐 아니라 선정된 기초단위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사업에 대한 평가가 실시 될 수 있다.



【그림 VIII-1】 평가대상의 확대

(4) 기대효과

이처럼 기초단위 지자체에까지 평가대상이 확대되면 광역시도의 청소년정책사업 뿐 아니라 시군구단위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할 수 있어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사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평가방식: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만족도 등 수용자평가 강화

(1) 제언배경

앞서 살폈듯이, 올해 실시된 시범평가에서는 청소년이나 학부모 등 정책수용자들이 청소년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논의했듯이 보건복지

부의 경우 실적평가뿐 아니라 효과성평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즉 관련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학부모와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앞서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공무원들 또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일반국민의 정책인지도나 학부모, 청소년 등의 만족도조사가 청소년정책사업을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한 지표라고 응답하기도 했다. 즉 정책수혜자들이 관련정책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그 정책에 얼마나 만족하는 지를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정책방향

실질적인 청소년정책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정책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또는 성공적인 정책달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등 수용자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평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청소년정책평가의 필요성이 공무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청소년정책평가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수요자들의 만족도 조사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추진체계

정책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조사방법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설문문항과 표집 수, 표집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조사예산도 충분히 확보돼야 할 것이다. 가령, 17개 시도별로 각 200명가량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표집 하여 조사를 한다면 3,400명의 청소년집단과 3,400명의 부모집단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1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체계화된 조사를 위해서는 몇 차례 시범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다듬고 조사의 틀을 확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림 VIII-2】 청소년평가 추진체계

(4) 기대효과

정책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청소년정책이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3) 평가방식: 중앙부처평가의 경우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률 점검

(1) 제언배경

앞서 국내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많은 정부부처평가가 핵심성과지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로 이뤄지고 있다. 가령, 보건복지부 주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평가의 경우 각 소관부처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치가 정해져 있어 이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외국인정책시행계획평가의 경우에도 소관부처가 달성해야 할 핵심지표들이 있었다. 이러한 평가체계의 경우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각 연도에 해당부처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들을 설정해 놓는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느냐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추진된 청소년정책시범평가에서는 중앙부처의 경우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만 이뤄졌다. 청소년정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몇 개 부처에 대부분 몰려 있어 이러한 개별사업 평가방식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다른 부처들의 평가방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대표적인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그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2) 정책방향

청소년정책의 경우에도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5년마다 추진돼 시행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실시돼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소관부처가 각 연도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한 뒤 이에 대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정책평가에 필요한 핵심평가지표들이 설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정책평가에 꼭 필요한 대표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3) 추진체계

소관부처가 달성해야 할 핵심평가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뿐 아니라 공무원들로부터의 의견수렴과정이 중요하다.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핵심지표로 선정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과정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핵심지표가 선정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전문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도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기대효과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달성여부를 점검하면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중앙부처의 경우 한두 개의 청소년정책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청소년정책사업이 일부 부처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는 각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4) 평가방식: 평가대상의 그룹화를 통한 평가방식의 유연화

(1) 제언배경

현실적으로 청소년정책은 정책결정의 우선순위 상 정부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재정을 배정받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성과의 총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전체 인구 또는 청소년인구가 많고, 지방재정 수준과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자연스레 청소년관련 정책과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내실화 노력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 및 재정규모가 크면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무원 대상 심층인터뷰의 다수 의견은 예비평가 때 활용된 정량지표를 연속형 지표로 측정하기보다는 청소년인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준을 분모로 하는 비율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 정책방향

앞서 언급한 지자체의 규모를 통제한 비율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내실화 노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의 수준이 월등히 차이가 나면 집단의 이질적 특성을 배제하는 차분법이 아니고서는 그 지자체의 규모를 통제한 비율변수도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지자체의 규모를 통제한 비율변수를 활용하더라도 규모수준에 따른 집단별 평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수준과 인구규모에 따라 지자체를 약 3~4집단으로 구별하고 이들에 대한 각각의 평가를 실시하면 지자체 규모에 따른 성과측정의 오류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

(3) 추진체계

이와 같은 평가대상의 그룹화에 대하여 정책평가 전문가, 청소년학 전문가 그리고 일선의 업무담당자간의 워크숍이나 토론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평가 전문가는 2015년 예비평가 결과와 지자체의 규모, 행정력 자료를 시뮬레이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그룹화한 몇 가지 대안을 미리 제시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이 변경이 확정되면, 여가부 정책평가 담당자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이를 수렴하고 자문회의를 통한 보완을 거쳐 평가방식을 확정하면 된다. 또한 이는 평가방식의 변화이므로 피평가자들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4)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룹별 정책평가는 예비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는 피평가자들에게 보다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평가는 기존 평가방식에 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평가 노력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룹별로 평가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일률적 순위를 부여받는 피평가자의 부담감도 완화할 수 있다.

5) ‘평가운영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

(1) 제언배경

청소년정책평가는 2105년 예비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에 대한 일선 현장의 생소함과 지표 및 평가방식의 의견 차이를 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소년정책평가를 집행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는 평가전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실무자 문기구가 구성되지 못하였다. 이는 평가의 내실화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차년도에는 평가지표 및 평가현장의 문제를 모니터링하는 평가실무위원회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내에 설치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2) 정책방향

평가운영실무위원회는 크게 평가체제 개선 모니터링 업무와 정책평가 실무개선 업무 그리고 청소년정책평가관련 의사결정 등을 담당한다(<표 VIII-7> 참조).

첫째, 평가운영실무위원회는 ‘평가체제 개선 모니터링’을 한다. 구체적으로 ‘당해 년도 정책평가지표에 대한 검토 및 확정’, ‘정책평가지표에 대한 오류수정 및 타당성 검증’, ‘정책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평가지표에 대한 신설 및 삭제의 의사결정’ 등이다.

둘째, 평가운영실무위원회는 ‘정책평가 실무개선’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정책평가 실무개선은 ‘일선 평가준비 공무원들의 문제점 모니터링’, ‘평가절차와 서식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안 마련’, ‘평가위원 추천 및 인력풀 구성’등의 업무이다.

셋째, 평가운영실무위원회는 ‘정책평가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즉,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며 그 밖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소장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위원회는 위의 내용을 약식으로 정리하여 연말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표 VIII-7 가칭 ‘평가운영실무위원회’의 기능

주요업무	정책방향	비고
평가체제 개선 모니터링	- 당해 년도 정책평가지표에 대한 검토 및 확정 - 정책평가지표에 대한 오류수정 및 타당성 검증 - 정책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수렴 - 평가지표에 대한 신설 및 삭제의 의사결정	- 연말에 결과보고 서 작성
정책평가 실무개선	- 일선 평가준비 공무원들의 문제점 모니터링 - 평가절차와 서식에 대한 의견수렴 및 개선안 마련 - 평가위원 추천 및 인력풀 구성	
정책평가관련 의사결정	- 최종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 기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안	

(3) 추진체계

청소년정책평가센터 내의 평가운영실무위원회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밑에 참모(staff) 조직으로 한다. 평가실무위원들은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분들로 구성한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연초에 구성한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실무협의회를 갖는다. 평가운영 실무위원회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며 청소년학 전문가와 정책평가 전문가평가 각각 5인으로 구성한다. 또한 위원회 간사 1인, 위원장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물론 청소년 현장 전문가도 추천을 받아 위원직을 역임할 수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장 전문가이어야 한다.

(4) 기대효과

평가위원회가 구성되면 평가지표의 설정과 평가결과의 확정을 한 번 더 검토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는 평가의 질을 높이고 평가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재평가 혹은 평가에 관한 혼선 시에 공식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 평가운영에 공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 고 문 헌

- 경상북도 (2013). 2013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평가편람.
- 관계부처합동 (2016. 4. 29). 제2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안건 자료.
- 교육부 (2015). 2016년('15년 실적)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안).
- 국민안전처 (2016). 국민안전처, 2015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결과공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보도자료(<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에서 2016년 3월 18일 인출.
- 김승권, 김미숙, 강은정, 배화옥, 황옥경, 김형욱, 김효진 (2008). 참여정부 아동종합대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2008-6).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김영모, 류중석 (200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 2003-20). 서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영준 (2011). 관광단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현구, 박희정 (2003). 광역자치단체 합동평가체제의 실증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3(2), 125~148.
- 김형주, 김영애, 조선희 (2009).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고객지향평가모형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09-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화준 (2003). 정책학원론. 서울: 박영사.
- 류지성 (2010). 정책학. 서울: 대영문화사.
- 박수정, 김인규, 김태성, 이준우 (2013). 청소년사회안전망 사업(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과평가 지표개발 (연구보고 2013-48). 서울: 여성가족부.
- 박홍윤 (2012). 정책평가론: 실제와 사례. 서울: 대영문화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 사회보장위원회 (2016. 1).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20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계획.
- 사회보장위원회 (2016. 3).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중간평가 제안요청서.
- 성운숙, 임희진 (2007).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청소년 2007-34).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안전행정부 (2014). 2015년('1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 여성가족부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2017).
- 여성가족부 (2015a). 2015년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2015b).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백석대 산학협력단 (2015).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평가체계 구축 연구.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청소년정책분석·평가 가이드라인.
- 외국인정책위원회 (2015). 2014년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작성 및 자체평가지침.
- 이승중, 강명구, 강철구, 금재덕, 김익식, 김혜정, 노승용, 소순창, 소진광, 손희준, 오승은, 윤두섭, 이기우, 이재성, 임석준, 임승빈, 임정빈, 장원호, 정의창, 최미옥, 홍진이(2008).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 이윤식 (2011). 정책평가론. 서울: 대영문화사.
- 최재성, 노충래, 강철희, 최수찬 (2004).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운영평가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청소년보호 2004-38). 서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5년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
- 한국기업평가원 (2012). 지역특구 성과평가를 통한 지역특구제도 발전전략. 서울: 한국기업평가원.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2015).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온라인 자료>

스페인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평가지표. (<http://siapjove.udg.edu/>) 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33조 2항. 로앤비 웹사이트(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D695BB2F16874DD5BE92A88C8EFBB170|0|K)에서 2016년 3월 18일 인출.

청소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400&efYd=20160302#0000>)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0744&efYd=20150504#0000>)에서 2016년 10월 18일 인출.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로앤비 웹사이트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C1C5652070EE46339207542472C8AB18|0|K) 에서 2016년 1월 21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9조 2항. 로앤비 웹사이트(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09422974FA684F12A9DADB5B1416CAF1|0|K) 에서 2016년 2월 17일 인출.

Cavet, J., & Sloper, P. (2004).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decisions about UK service development.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0(6), 613~621.

Checkoway, B., Dobbie, D., & Richards-Schuster, K. (2003). Involving young people in community evaluation research. *Community Youth Development*, 4(1), 32~37.

De Anda, D. (2001). A qualitative evaluation of a mentor program for at-risk youth: The participants' perspectiv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8(2), 97~117.

Dietrich, H. (2013). Youth unemployment in the period 2001~2010 and the European crisis—looking at the empirical evidence.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19(3), 305~324.

European Commission (201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On EU

- indicators in the field of youth. http://ec.europa.eu/youth/library/publications/indicator-dashboard_en.pdf에서 2016년 3월 28일 인출
- Gilbert, N. (2012). A comparative study of child welfare systems: Abstract orientations and concrete resul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3), 532~536.
- Gilsing, R. (2007).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effectiveness of local governance the case of Dutch youth policy.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3(1), 45~64.
- Head, B. W. (2011). Why not ask them? Mapping and promoting youth particip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4), 541~547.
- Hotz, V., Imbens, G., & Klerman, J. (2006). Evaluati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alternative welfare-to-work training components: A reanalysis of the California GAIN program.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3), 521~666.
- Hwang, H. S., Moon, C., Chuang, C. L., & Goan, M. J. (2005). Supplier selection and planning model using AHP.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Information Systems for Logistics and Management*, 1(1), 47~53.
- Korpela, J., & Tuominen, M. (1996). Benchmarking logistics performance with an application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ngineering Management, IEEE Transactions on*, 43(3), 323~333.
- Krenichyn, K., Schaefer-McDaniel, N., Clark, H. and Zeller-Berkman, S. (2007). Where Are Young People in Youth Program Evaluation Research?.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17(2), 594~615.
- Matthews, G. A., & Dickinson, A. M. (2000). Effects of alternative activities on time allocated to task performance under different percentages of incentive pa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Management*, 20(1), 3~27.
- Milgrom, P., & Roberts, J. (1992). *Economics, Organization & Management*. NY: Prentice Hall.
- Morciano, D., Scardigno, A., Manuti, A. and Pastore, S. (2014). An evaluation study of youth participation in youth work: a case study in Southern Italy.

- Educational Research for Policy and Practice*, 13(1), 81~100.
- Planas, A., Soler, P., & Vila, M. (2014). Assessing youth policies. A system of indicators for local government.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45, 22~28. doi:10.1016/j.evalprogplan.2014.03.003
- Riggs, N., & Greenberg, M. (2004). After-school youth development programs: A developmental-ecological model of current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7(3), 177~190.
- Saaty, T. L. (1990).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1), 9~26.
- Saaty, T. L. (2008). Relative measurement and its generalization in decision making why pairwise comparisons are central in mathematics for the measurement of intangible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network process. *RACSAM-Revista de la Real Academia de Ciencias Exactas, Fisicas y Naturales. Serie A. Matematicas*, 102(2), 251~318.
- Scriven, M. (1995). The logic of evaluation and evaluation practice. *New Directions for Evaluation*, 1995(68), 49~70.
- Sinclair, R. (2004). Participation in practice: Making it meaningful, effective and sustainable. *Children & Society*, 18(2), 106~118.
- The European Youth Forum (2011). '11 indicators of a (national) youth policy.' http://www.un.org/esa/socdev/unyin/documents/CoE_indicators.pdf에서 2016년 3월 30일 인출.
- Tiffany, J., Exner-Cortens, D., & Eckenrode, J. (2012). A new measure for assessing youth program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0(3), 277~291.
- Tilbury, C. (2004). The influence of performance measurement on child welfare policy and practic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4(2), 225~241.
- Vashist, J. K and Dey, A. K. (2016). Selection Criteria for a Mode of Surface Transport: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pproach. *Amity Global Business Review*, 11, 86~95.

- Vijayvargiya, A., & Dey, A. K. (2010). An analytical approach for selection of a logistics provider. *Management Decision*, 48(3), 403~418.
- Wilcox, A. (2003). Evidence-based youth justice? Some valuable lessons from an evaluation for the Youth Justice Board. *Youth Justice*, 3(1), 21~35.
- Youth Partnership (2014). *Country Sheet on Youth Policy in Sweden*. http://pjp-eu.coe.int/documents/1017981/7110688/Country_sheet_Sweden_2014.pdf/d041be2a-b579-4fc7-b02c-6c1284caacd0에서 2016년 3월 25일 인출
- Yuldashev, F., & Sahin, B. (2015). Evaluating youth policy reform in Kyrgyzstan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rames: A Journal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9(3), 273~288.

부 록

1. 스페인 지방자치단체 주요 평가지표²⁰⁾

영역 4	건강
목적 4.1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강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치료를 실시하는 지자체의 활동을 조사한다.
지표 4.1.2	지자체에 속한 전체 청소년 인구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에게 실시한 개별 치료 비율
산식	$(\text{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1년 동안 건강 문제로 청소년에게 실시한 치료 횟수} / \text{전체 청소년 인구}) \times 100$
구조와 기술 정보	본 지표는 건강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들에게 개별화된 치료를 제공하는 지자체 활동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치료를 받은 청소년 수를 파악하는 데 이용된다. 개별화된 청소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 정부가 관리하거나 지원을 받은 지자체 내 중등 교육 센터의 보건소. -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 부문 혹은 제3섹터가 관리하는 곳. - 청소년 정보 센터 및 청소년 사무소의 전문 인원이 관리하는 곳.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분야의 지원을 받는 지자체 보건 기관 혹은 민간 보건 서비스 기관. 수치가 작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지표는 청소년 100명당 치료 횟수로 제시한다.
용어	청소년인구
해석	빅(Vic), 2009년: 빅 지자체 중등 교육 센터에서 관리하는 건강 문제와 관련해 1년 동안 진찰 공간에서 실시한 청소년 치료 횟수(PIDCES-중등교육센터의 정보 및 활성화 프로그램): 21회 청소년 정보 센터 및 청소년 사무소의 전문 인원이 관리하는 건강 문제와 관련해 1년 동안 진찰 공간에서 실시한 청소년 치료 횟수: 74회

20) 지표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http://siapijove.udg.edu/> 참조, 지표가 스페인어로 돼 있어 여기에 소개된 정량지표 9개는 번역을 의뢰하였음.

영역 4	건강
한계점	본 지표는 지자체의 청소년 인구 수를 치료 받은 청소년 수가 아닌 건강 문제와 관련해 실시한 치료 횟수와 관련한다는 한계가 있다. 가령 후속 치료나 추후 관찰이 필요해 동일한 청소년이 1년 동안 여러 차례 진찰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 수는 치료 횟수보다 적을 수 있다.
관련지표	9.1.1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비율.
목적 4.2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분야에서 실시한 활동을 조사한다.
지표 4.2.3	1년 동안 지자체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증진 교육 활동의 청소년 참여율
산식	(1년 동안 지자체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 정부가 직접 추진한 건강한 생활방식 및 행동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 전체 청소년 인구)×100
구조와 기술 정보	청소년들의 생활방식 및 행동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를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 함양 과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활동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활동을 명시하면 아래와 같다. - 건강한 생활방식 및 행동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행사 - 건강한 생활방식 및 행동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워크숍 - 건강한 생활방식 및 행동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세션 - 건강한 생활방식 및 행동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기타 교육 활동 본 지표는 전술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비율이 아니라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를 계산하는 한계가 있는데, 동일한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경우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수치가 작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지표는 청소년 100명당 참여 횟수로 제시한다.
용어	건강한 생활방식, 건강한 행동 및 청소년 인구
한계점	다른 행정 기관, 교육 센터, AMPA 등이 직접 주관하는 활동처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활동들을 통해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해 교육 받은 청소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세션이나 활동이 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적은 비율의 중학교 학생들만 본 조사에 고려된 연령대(16세~29세)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층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이 "의무적인" 성격으로 추진하는 활동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포함된 활동으로서 청소년 이 반드시 참여하는 경우와 언제든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발적 성격의 활동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지표는 지자체의 청소년 인구수를 참여 청소년의 수가 아닌 교육 활동의 참여자 수와 관련을 지음으로써 중복을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동일한 청소년이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경우 참여 청소년의 수는 교육 활동의 참여자 수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중복은 특히 단일 행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이 전개되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
관련지표	9.1.2 청소년 관련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진행되는 기타 활동.

영역 5	참여와 협력
목적 5.2.1	개인 혹은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조사한다.
지표 5.2.1	개별적 성격의 참여에 기초한 기관 주도 사업의 평균 참여 비율
산식	$(\text{개별적 성격의 참여에 기초한 사업의 참여 청소년 수} / \text{전체 청소년 인구}) \times 100$ 1년 동안 개별적 성격의 참여에 기초해 전개된 모든 참여 과정의 평균을 산출해야 한다.
구조와 기술 정보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집단적 청소년 참여, 나아가 지자체가 이러한 기관 및 단체와 나누는 대화는 단체나 기관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년들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략들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화 활동 또는 상담 과정에 대한 개별적 성격의 참여는 지자체 정부가 추진하는 참여 과정에 대해 청소년들이 품고 있는 신뢰 및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자체의 능력을 부각시킨다. 개별적 성격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설문 조사, 건의 양식 또는 건의함을 통한 상담 과정 - 지자체의 모든 청소년을 소집하는 청소년 회의나 포럼 - 지자체 모든 청소년에게 개방하는 지역청소년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가령 청소년 회의와 같이) 청소년 주도의 협의 또는 투표 - 기타 새로운 기술을 통한 대화 방식 -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기타 참여 과정 개별적 성격의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메커니즘은 전체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청소년 단체의 회원이나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참여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개인 자격의 참여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추진된 다양한 활동의 참여 비율을 계산한 후 평균을 산출한다.
용어	청소년과의 대화 활동, 지역청소년협의회, 청소년 회의, 개별적 성격의 참여
해석	결과 데이터는 전술한 목적을 위해 전개된 메커니즘의 수를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결과 분석 시 이러한 메커니즘의 양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한계점	본 자료는 지자체가 청소년 인구에 다가가는 능력 및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개별적인 성격의 참여 사업이 거둔 평균적인 성공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 기관의 관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구현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높은 참여율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보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지표	11.3.1 청소년 정책에 대한 청소년 참여를 장려하는 방법 11.3.2 청소년 참여 과정에 통합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 비율.

영역 6	문화
목적 6.1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 문화 활동 및 이 같은 활동을 조직하고 촉진하기 위한 지자체 전략을 조사한다.
지표 6.1.1	지자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연례 청소년 문화 활동 비율
산식	$\left(\sum \text{지자체가 주최하는 교육적 성격의 청소년 문화 활동} + \text{지자체가 주최하는 청소년 문화 보급 활동} / \text{전체 청소년 인구} \right) \times 100$
구조와 기술 정보	본 지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제삼자가 주최하는 연례 문화 활동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문화 활동이란 주로 지자체의 청소년 인구(16세~29세)를 위해 주최되는 문화 행사 전체를 일컫는다. 하지만 청소년 문화 활동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타겟 삼는 문화 활동의 설계, 청소년위원회의 개발 단계 참여, 이 연령대의 관심을 반영한 콘텐츠, 행사, 개최 장소 및 확산 채널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키는 방법 등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라 간주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문화 제안에 속하는 주요 활동이나 계획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교육 문화 활동 (워크숍, 강좌, 세미나, 행사 등). 예술 활동을 익히거나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모든 활동. - 문화 보급 활동: 공연 활동 (연극, 음악, 무용, 서커스, 영화 상영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사나 활동) 및 전시 활동 (주로 청소년 대중을 타겟으로 삼거나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전시회, 청소년 문화 축제, 청소년 라디오 프로그램 등) 교육 문화 활동과 문화 보급 활동을 구분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각 활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및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제3섹터는 민간 부문의 제3섹터 또는 기타 공공 행정기관을 의미한 다. 수치가 작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지표는 청소년 1,000명 단위로 진행된 문화 활동 횟수로 제시한다.
용어	청소년 문화 활동, 교육 문화 활동, 문화 보급 활동, 전략 및 청소년 인구
해석	본 지표와 비교하거나 기준이 될만한 구체적인 기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지표를 체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준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지표를 통해 전체 청소년 문화 활동에서 교육 문화 활동과 문화 보급 활동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해 보다 완벽한 문화 제안을 하고 싶은 경우, 양자의 적절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계점	본 지표는 지자체가 관여하는 청소년 문화 활동만 집계해 나머지 민간 부문이나 제3섹터가 제공하는 문화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들을 정확하게 추려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제다. 정해진 기준을 고려해 각 활동의 포함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지표는 청소년 문화 활동의 양적 측면만을 다루기 때문에 (참여자 수를 비롯한) 질적 성공 여부 및 문화 제안의 품질을 평가하지 않는다.

영역 6	문화
관련지표	1.2.1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기타 사회교육 기관이나 주체가 협력해 조직하는 교육 활동 5.1.1 청소년 협회에 대한 지자체 지원 활동 5.1.2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 12.1.1 지자체의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지자체 청소년 시설로 확보한 면적 비율
지표 6.1.3	지자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연례 청소년 문화 활동 비율
산식	$\{ \Delta(\text{지자체가 주최하는 교육적 성격의 청소년 문화 활동} + \text{지자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 문화 보급 활동}) / \Delta(\text{지자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교육 문화 활동} + \text{지자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문화 보급 활동}) \} \times 100$
구조와 기술 정보	본 지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주최하는 연례 문화 활동들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문화 활동이란 주로 지자체의 청소년 인구(16세~29세)를 위해 주최되는 문화 행사 전체를 일컫는다. 하지만 청소년 문화 활동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모호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청소년을 타겟으로 삼는 문화 활동의 설계, 청소년위원회의 개발 단계 참여, 이 연령대의 관심사를 반영한 콘텐츠, 행사, 개최 장소 및 확산 채널에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포함시키는 방법 등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라 간주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문화 활동과 문화 보급 활동을 구분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각 활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및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다.
용어	청소년 문화 활동, 교육 문화 활동, 문화 보급 활동, 전략 및 청소년 인구
해석	본 지표와 비교하거나 기준이 될 만한 구체적인 기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지표를 체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준 정보를 생성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지표를 통해 전체 청소년 문화 활동에서 교육 문화 활동과 문화 보급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 가능한 한 모든 범위의 오류 가능성을 제외한 수치로서, 카탈루냐의 청소년 인구는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이 지역 전체 인구의 18.1%를 차지한다.
한계점	본 지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문화 활동들은 집계하지 않는다. 한편 문화 활동을 추려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제이며, 특히 청소년 문화 활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활동들을 정확하게 추려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해진 기준을 고려해 각 활동의 포함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본 지표는 청소년 문화 활동의 양적 측면만을 다루며 문화 제안의 질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본 지표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한층 높은 수준의 복잡성을 제기한다.

영역 6	문화
관련지표	
지표 6.1.4	지자체의 전체 문화 활동 대비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혹은 청소년 단체가 조직한 문화 활동의 비율
산식	$\{ \text{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혹은 청소년 단체가 조직한 교육 문화 활동} + \text{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혹은 청소년 단체가 조직한 문화 보급 활동} \} / \{ \text{지자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교육 문화 활동} + \text{지자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는 문화 보급 활동} \} \times 100$
구조와 기술 정보	본 지표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이 주최하는 지자체 연례 문화 활동들의 비중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달리 말해, 어느 정도까지 청소년들이 지자체 문화 활동을 주관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교육 문화 활동과 문화 보급 활동을 구분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각 활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및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다.
용어	청소년 문화 활동, 교육 문화 활동, 문화 보급 활동, 일반 문화 활동, 지자체 지원 및 전략
해석	본 지표는 문화 소비자 외에 문화 촉진자로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을 파악하게 해준다.
한계점	문화 활동을 정확하게 추려내는 작업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본 지표는 지자체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문화 활동은 집계하지 않는다. 또한 본 지표는 문화 활동들의 양적 측면만 평가할 뿐 질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지표	5.1.1 청소년 협회에 대한 지자체 지원 활동 5.1.2 청소년 단체 또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
목적 6.2	청소년 문화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진흥 노력을 조사한다.
지표 6.2.2	지자체가 추진하는 청소년 창작 진흥 및 지원 활동으로 혜택을 입은 수혜 청소년 비율
산식	$(\text{진흥 및 지원 활동으로 혜택을 입은 수혜 청소년 수} / \text{전체 청소년 인구}) \times 100$
구조와 기술 정보	지자체가 청소년 창작 진흥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혜택을 입은 수혜 청소년 수를 집계한다. 이 같은 활동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교육 보조금 - 청소년 창작 개발을 위한 지자체 공간 할애로 혜택을 입은 수혜 청소년 수 (리허설 룸, 워크숍 장소, 비디오 창작실 등) - 청소년 작가를 위한 보조금 혜택을 입은 수혜 청소년 수 - 청소년 작가 또는 신홍 그룹을 위한 공쿠르상 - 기타

영역 6	문화
용어	청소년 문화 창출
해석	본 지표는 청소년 창작에 대한 지원 활동 및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입은 수혜 청소년의 비율을 파악하게 해준다.
한계점	동일 청소년이 한 가지 이상의 창작 진흥 활동에서 혜택을 입은 수혜자일 수 있으나, 본 지표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
관련지표	6.2.1 청소년 문화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진흥 및 지원 활동
영역 8	스포츠
목적 8.1	지자체가 청소년을 위해 직접 조직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스포츠 활동들을 조사한다.
지표 8.1.3	1년 동안 연속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지자체가 직접 조직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비율.
산식	$(1년\ 동안\ 연속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지자체가\ 직접\ 조직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스포츠\ 활동들의\ 혜택을\ 받은\ 수혜\ 청소년\ 수 / 전체\ 청소년\ 인구) \times 100$
구조와 기술 정보	공공 행정은 지자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본 지표의 목적은 연속적인 형태의 스포츠 활동에서 혜택을 받는 지자체 청소년의 비율을 평가하는 데 있다. 연속적인 형태의 스포츠 활동이란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일시적 활동이 아닌 1년 동안 일정 주기로 지속적으로 한 스포츠 활동을 지칭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일반적인 활동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1년 동안 제공되는 다양한 스포츠 강좌 (수영, 육상, 농구 등) -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 스포츠 클럽 - 기타
용어	지자체 지원
한계점	지자체가 직접 조직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만 집계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 활동을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일시적 혹은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지표	8.1.1 지자체가 청소년을 위해 직접 기획한 연간 스포츠 활동 제안 8.2.1 청소년 인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활동 제안

영역 9	청소년 정보 및 안내
목적 9.1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정보 및 오리엔테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공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계획 및 자원을 분석한다.
지표 9.1.1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은 비율
산식	$\{ \text{1년 동안 PIJ(청소년 정보 안내소)를 통한 청소년 정보 제공 횟수} + \text{1년 동안 PIDCES(중등교육센터의 정보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정보 제공 횟수} + \text{1년 동안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타 청소년 정보 서비스를 통한 청소년 정보 제공횟수} \} / \text{전체 청소년 인구} \times 100$
구조와 기술 정보	본 지표를 통해 지자체 청소년 인구가 다양한 청소년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곳에서 청소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도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청소년 정보 안내소(PIJ) - 중등교육센터의 정보 및 활성화 프로그램(PIDCES). -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타 일반적인 성격의 청소년 정보 제공 서비스 (예: 청소년 여가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 수치가 작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지표는 청소년 100명당 정보 제공 횟수로 제시한다.
용어	중등교육센터의 정보 및 활성화 프로그램(PIDCES), 청소년 정보 서비스, 청소년 정보 안내소(PIJ) 및 프로그램
해석	2009년 기준 빅(Vic)의 경우 청소년 100명당 정보 제공 횟수가 232회였으며, PIJ에 접속하는 청소년(12세~30세)을 집계했다. 2008년 기준 만예우(Manlleu)의 경우, PIJ만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100명당 정보 제공 횟수가 43회였으며, PIDCES를 통해 진행된 정보 제공 서비스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계점	본 지표는 정보 제공 서비스 횟수를 단순 집계한 결과로, 동일한 청소년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동일 서비스를 한 차례 이상 이용해 중복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는다.
관련지표	1.3.2 학술 정보 및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해 청소년에게 제공된 맞춤 정보 서비스 비율 2.1.2 지자체의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근로와 관련해 청소년에게 제공된 정보 서비스 비율 3.1.2 주택과 관련해 청소년에게 제공된 정보 서비스 연간 비율 4.1.2 지자체에 속한 전체 청소년 인구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에게 실시한 개별 치료 비율

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전문가 설문지)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전문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청소년정책평가의 타당한 근거개발 및 지표검증을 위하여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설문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의 평가기준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설문은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청소년정책평가의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가중치를 산출하는데 활용됩니다. 이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가중치 산정의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오니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 항목의 질문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점수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예) 본 문항은 평가항목(A)가 평가항목(B)에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는 묻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능력(A)보다 업무태도(B)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과 같이 “①동등하다”를 기준으로 업무태도(B) 쪽의 “⑤중요” ✓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 ① : 동등하게 중요 (두개의 요소가 동등하게 중요)
- ③ : 약간 더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약간 중요)
- ⑤ :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강하게 중요)
- ⑦ : 아주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매우 강하게 중요)
- ⑨ : 절대적으로 중요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

 번호가 클수록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문 1.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관료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년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느 항목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인적 역량** : 인력의 규모, 청소년분야의 전문성

물적 역량 : 예산확보, 전문조직운영, 부서장 리더십, 부서의 자원확보 능력

제도적 역량 : 법적 지원체계, 지역사회와의 참여, 청소년 참여제도, 홍보

평가항목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B)
인적 역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물적 역량
인적 역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적 역량
물적 역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제도적 역량

문 2. 청소년정책평가에 정책과정의 어느 영역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책형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정책기반 확보수준

정책집행 : 정책추진 과정의 효율성, 정책소통 노력

정책성과 : 추진된 정책의 성과 및 효과성

평가항목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B)
정책형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집행	
정책형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성과	
정책집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정책성과	

문 3. 청소년정책평가의 내실화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사업개요 평가지표** 중에서 어느 항목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 청소년역량 증진활동, 다문화 역량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의미함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참여 활성화, 건강권 보호 및 권리증진의 기반조성
3.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청소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 범부처 정책기능 강화,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평가항목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B)
다양한 역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참여 및 권리증진
다양한 역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복지 및 자립지원
다양한 역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친화적 환경조성
다양한 역량강화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참여 및 권리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복지 및 자립지원
참여 및 권리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친화적 환경조성
참여 및 권리증진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복지 및 자립지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친화적 환경조성
복지 및 자립지원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친화적 환경조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문 4. 청소년정책평가의 내실화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청소년정책평가에 대한 성과달성도 평가지표 중에서 어느 항목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또는 정책의 효과성까지 감안하고 있는가?, 성과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가?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 과거 수년간의 추세를 보아 적극적 목표인가? 사업의 난이도를 고려한 적극적 목표인가?
목표달성도 : 계획한 목표치에 대한 달성수준

평가항목 (A)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동등하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B)
성과지표의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목표달성도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목표달성도

문 5. 다음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 시범평가 때 사용된 핵심평가지표(구체적인 산식은 아래 참고)입니다.

핵심평가지표	지표 산식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율	$= \left\{ 0.3 \left(\frac{\text{청소년수련관개소수}}{\text{시군구수}} \right) + 0.7 \left(\frac{\text{청소년문화의집개소수}}{4 \times \text{시군구수}} \right) \right\} \times 100$
2.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율	$= \frac{\text{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3.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율	$= \frac{\text{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수}}{\text{청소년수련시설 개소수}} \times 100$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율	$= \frac{\text{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소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5. CYS-Net(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율	$= \frac{\text{CYS-net 운영 개소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노력도 (정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한 개인성취 및 사도(사군구 포함)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노력(지원 우수사례 1건 제출)
7. 청소년유해환경 적발 건수	$= (\text{청소년 유해환경 적발건수}) \times (\text{적발유형별 가중치}) \times (\text{유해업소별 가중치}) \times 100$
8. 아동·청소년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 \frac{\text{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아동, 청소년 수}^*}{\text{아동, 청소년 수}} \times 100$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시·도 자체 발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수
9. 전년대비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	$= \frac{\text{당해년도 청소년정책 예산} - \text{전년도 청소년정책 예산}}{\text{전년도 청소년정책 예산}} \times 100$ ※ 해당지표의 청소년정책 자체사업예산은 지자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임 ※ 집행액 아닌 교부액 기준
10.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여부	5점: 독립된 과 단위의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4점: 독립된 과는 아니나 부서명칭에 ‘청소년’ 이 포함된 전담부서 운영 3점: 계 단위의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2점: 청소년전담부서는 없으나, 청소년정책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1점 :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으며, 청소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기타 업무를 함께 담당
1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율	$= \frac{\text{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출처: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청소년정책분석 · 평가 가이드라인, 27쪽.

해당 지표가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지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적절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적절 하다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CYS-Net 운영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아동·청소년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전년대비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6. 위에서 열거한 11가지 핵심평가지표 외에 귀하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평가지표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통계처리를 위한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문 3. 귀하의 어느 분야의 전문가이신가요?

- ① 정책평가에 대한 학술전문가
- ② 청소년학에 대한 학술전문가
- ③ 청소년정책 현장 전문가
- ④ 기타

3.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중앙부처 담당자 설문지)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에 관한 인식 조사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관련 업무담당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정책평가의 기본적인 틀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원은 청소년정책평가의 타당한 준거개발 및 지표검증을 위하여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를 확립하는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오니 솔직하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 1.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 ① 전혀 모른다
- ② 거의 알지 못한다
- ③ 약간 알고 있다
-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 ⑤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

문 2. 아래에 열거된 내용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명시된 15대 중점과제입니다. 각 영역이 청소년정책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청소년 역량증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참여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청소년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범부처 정책총괄·조정기능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청소년지원 인프라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3. 아래에 열거된 지표는 2016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 시범평가 시 각 개별사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지표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지표가 중앙행정기관의 개별 청소년정책사업을 분석·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전혀 적절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적절 하다
1) 사업목적 및 내용이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목적 및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사업추진체계가 사업목적 및 내용달성에 적합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사업내용의 구성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사업추진일정이 사업목적 및 내용달성에 적합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된 정도(예산집행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정도(목표달성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4.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귀하가 중앙행정기관의 개별 청소년정책사업을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문 5. 다음은 청소년정책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필요 하다
1)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수 공무원 포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평가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6. 최근 귀하의 부서에서 추진된 청소년정책관련 사업이 얼마나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구분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함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루어 짐
1) 청소년사업의 비중이 높은 정책 기획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정책 의제의 중요도를 높게 설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적정한 청소년정책 목표의 설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적절한 청소년정책 추진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정책 추진계획에 따른 정책집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계획된 목표치의 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질적 우수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추진된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정책기획 시 의도한 정책효과가 발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성과에 대한 확산 노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청소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7. 청소년정책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래 열거된 항목들이 얼마나 잘 지원됐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구분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함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루 어짐
1)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업무량에 적합한 인원배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부서의 효율적 업무분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업무담당자의 적극적 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담당 부서장의 성공적 리더쉽 발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관련 예산의 충분한 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전문가의 참여 및 활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정책의 부작용 발생에 대처 가능한 신속한 의사결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정책 추진 시 타 부처와의 협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정책집행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청소년들에게 관련 정책을 충분히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유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정책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정책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8. 귀하께서는 청소년정책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모색을 위해 필요한 조치나 개선방안이 있다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배문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배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배문 3. 귀하는 지금까지 얼마나 공무원 생활을 했나요? (년 개월)

배문 4. 귀하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정책관련부서에서 얼마나 일했나요? (년 개월)

배문 5. 귀하가 속해있는 정부부처는? _____

4.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지자체 담당자 설문지)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에 관한 인식 조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관련 업무담당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정책평가의 기본적인 틀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원은 청소년정책평가의 타당한 준거개발 및 지표검증을 위하여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를 확립하는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오니 솔직하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응답하신 내용은 학술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 1. 2015년 2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귀하는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 ① 전혀 모른다
- ② 거의 알지 못한다
- ③ 약간 알고 있다
- ④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 ⑤ 매우 자세히 알고 있다

문 2. 아래에 열거된 내용은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명시된 15대 중점과제입니다. 각 영역이 청소년정책 전반에 얼마나 중요한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중요 하다
1) 청소년 역량증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글로벌, 다문화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참여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한부모, 저소득, 취약계층,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청소년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혀 중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중요 하다
13) 범부처 정책총괄·조정기능 강화 (지자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청소년전담공무원제추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청소년지원 인프라 강화 (청소년지도자역량강화및처우개선, 청소년정책전달체계정비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도입, 청소년정책재정기반확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다음은 201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 시범평가 때 사용된 핵심
평가지표(구체적인 산식은 아래 참고)입니다.

핵심평가지표	지표 산식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율	$= \left\{ 0.3 \left(\frac{\text{청소년수련관개소수}}{\text{시군구수}} \right) + 0.7 \left(\frac{\text{청소년문화의집개소수}}{4 \times \text{시군구수}} \right) \right\} \times 10$
2.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율	$= \frac{\text{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3.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율	$= \frac{\text{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수}}{\text{청소년수련시설 개소수}} \times 100$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율	$= \frac{\text{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소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5. CYS-Net(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비율	$= \frac{\text{CYS-net 운영 개소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노력도 (정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한 개인성취 및 사도(사군구 포함)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노력(지원 우수사례 1건 제출)
7. 청소년유해환경 적발 건수	$= (\text{청소년 유해환경적발건수}) \times (\text{적발유형별 가중치}) \times (\text{유해업소별 가중치}) \times 100$
8. 아동·청소년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 \frac{\text{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아동, 청소년 수}^*}{\text{아동, 청소년 수}} \times 100$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시·도 자체 발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수
9. 전년대비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	$= \frac{\text{당해년도 청소년정책 예산} - \text{전년도 청소년정책 예산}}{\text{전년도 청소년정책 예산}} \times 100$ ※ 해당지표의 청소년정책 자체사업예산은 지자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임 ※ 집행액 아닌 교부액 기준

핵심평가지표	지표 산식
10.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여부	5점: 독립된 과 단위의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4점: 독립된 과는 아니나 부서명칭에 '청소년' 이 포함된 전담부서 운영 3점: 계 단위의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2점: 청소년전담부서는 없으나, 청소년정책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1점: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으며, 청소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기타 업무를 함께 담당
1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율	$= \frac{\text{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출처: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청소년정책 분석 · 평가 가이드라인, 27쪽.

문 3. 해당 지표가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지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혀 적절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적절 하다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CYS-Net 운영비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청소년유해환경 적발건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아동·청소년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전년대비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4. 위에서 열거한 11가지 핵심평가지표 외에 귀하가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평가지표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문 5. 아래 지표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 시범평가 시 지자체의 대표사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 지표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지표가 청소년정책을 분석·평가하는데 얼마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참고로 2006년 시범평가 때는 여성가족부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15개 중점과제 중 ‘위기청소년보호·지원강화’에 관련된 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제출하도록 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전혀 적절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적절 하다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관계부처, 1) 이해관계자, 정책수요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 적 배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지역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의 기획 및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추진계획상의 일정 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정책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정책내용의 적극적 대국민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계획된 예산을 실제 달성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당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실제 달성한 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정책이 청소년에게 실제로 미친 효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6. 위에서 열거한 지표 외에 귀하가 지자체의 대표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문 7. 2016년 시범평가 시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핵심지표평가(정량지표)와 대표사업평가(정성지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각각의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세요.

핵심지표 평가 () % + 대표사업 평가 () % = 100%

문 8. 다음은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는 아래에 열거된 내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필요 하다
1)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우수 공무원 포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평가가 부진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9. 최근 귀하의 부서에서 추진된 청소년정책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구분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함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루어 짐
1) 추진계획에 따른 정책집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계획된 목표치의 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실적 우수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구분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함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루어 짐
4) 추진된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발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정책기획시 의도한 정책효과가 발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추진된 청소년정책의 성과에 대한 확산 노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지역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청소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10. 귀하의 부서에서 최근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아래 열거된 항목들이 얼마나 잘 지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구분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함			보통 이다			매우 잘 이루어 짐
1) 정책추진 인력의 전문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업무량에 적합한 인원배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부서의 효율적 업무분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업무담당자의 적극적 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부서의 높은 업무추진력 발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담당 부서장의 리더십에 따른 업무성과증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관련 예산의 충분한 편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전문가 조언 및 TF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신속한 의사결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부서는 정책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자원을 동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청소년들에게 관련 정책을 충분히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유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정책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정책집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중앙부처의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배문 1.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배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배문 3. 귀하는 지금까지 얼마나 공무원 생활을 했나요? (년 개월)

배문 4. 귀하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정책관련부서에서 얼마나 일했나요? (년 개월)

배문 5. 귀하가 속해있는 행정구역은?

- ① 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 ② 광역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등)
- ③ 시 단위 (화성시, 용인시 등)
- ④ 군 단위 (봉화군, 하동군 등)
- ⑤ 구 단위 (서초구, 동래구 등)

5.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안내

본 인터뷰는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를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요구를 듣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은 정책평가관련 전문가, 청소년학 전문가, 일선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은 기록되어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오니, 성의있는 응답 부탁드립니다.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올해 시범평가 때 사용된 청소년정책평가지표(아래 참조)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핵심 평가지표	지표 산식
1.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율	$= \left\{ 0.3 \left(\frac{\text{청소년수련관개소수}}{\text{시군구수}} \right) + 0.7 \left(\frac{\text{청소년문화의집개소수}}{4 \times \text{시군구수}} \right) \right\} \times 100$
2.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율	$= \frac{\text{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3.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율	$= \frac{\text{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수}}{\text{청소년수련시설 개소수}} \times 100$
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율	$= \frac{\text{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소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5.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비율	$= \frac{\text{CYS-net 운영 개소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노력도 (정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통한 개인성취 및 사도(사군구 포함)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 노력(지원 우수사례 1건 제출)
7. 청소년유해환경 적발 건수	$= (\text{청소년 유해환경 적발건수}) \times (\text{적발유형별 가중치}) \times (\text{유해업소별 가중치}) \times 100$
8. 아동·청소년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 \frac{\text{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아동, 청소년 수}^*}{\text{아동, 청소년 수}} \times 100$ ※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시·도 자체 발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동·청소년 수
9. 전년대비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증가율	$= \frac{\text{당해년도 청소년정책 예산} - \text{전년도 청소년정책 예산}}{\text{전년도 청소년정책 예산}} \times 100$ ※ 해당지표의 청소년정책 자체사업예산은 지자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자체사업 예산” 임 ※ 집행액 아닌 교부액 기준
10.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여부	5점: 독립된 과 단위의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4점: 독립된 과는 아니나 부서명칭에 ‘청소년’ 이 포함된 전담부서 운영 3점: 계 단위의 청소년 전담부서 운영 2점: 청소년전담부서는 없으나, 청소년정책업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1점 :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으며, 청소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기타 업무를 함께 담당
11.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율	$= \frac{\text{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수}}{\text{시군구수}} \times 100$

출처: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6. 5). 청소년정책 분석 · 평가 가이드라인, 27쪽.

2. 내년에는 청소년정책평가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말씀해주십시오.
3. 청소년정책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4. 청소년정책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분야별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 1) 인적 영역(인력수급, 전문성확보, 근무형태 등)
 - 2) 물적 영역(재정, 개별사업, 부서 간 협의 등)
 - 3) 제도적 영역(관련법, 조례, 홍보 등)
5. 청소년정책평가의 방향과 관련하여 자유의견이 있다면 서술하여주십시오.

6.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공무원 인터뷰 질문지)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을 위한
공무원 인터뷰 안내

본 인터뷰는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를 위해 공무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듣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범평가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을 자유롭게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돼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올해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평가가 이뤄졌습니다. 귀하는 청소년정책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세요. (필요하다면 어떤 점에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필요하지 않은지 질문함)
2. 올해 시범평가때 사용된 11개 핵심평가지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주시길 바랍니다.
3. 대표사업평가영역인 ‘위기청소년지원강화사업’ 평가지표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를 해 주세요. 또한 내년에 어떤 영역이 대표사업평가 영역이 됐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4. 청소년정책평가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내용, 컨설팅 방안 등).
5. 현행 청소년정책평가는 개별사업평가, 핵심지표평가, 대표사업평가로 이뤄집니다. 향후 청소년정책평가의 방향이나 개선점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이 있다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Abstract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Analysis and Evaluation System of Youth Policy

The institutional framework was establish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master plans on youth policies conducted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reformed in 2015. Accordingl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nducted a pilot evaluation in 2016 in accordance with the self-developed evaluation indicator. In the course of the evaluation, there was not precise examination of the evaluation method, the subjects, whether the evaluation indicator is appropriate or not.

In this context, the study is designed to find the way of prioritizing the indicators, eliciting feedbacks from the evaluation results, formulating the compensation system based on a concrete analysis. In short, this focuses on how to devise the system for analysing and evaluating the youth polic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405 public servants working for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engaged in the survey. In addition to this, after conducting the survey to the 30 professional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used to deduce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youth policies. Furthermore, 10 professionals and 12 public servants were asked to have an interview to give their own opinions about the problems with the evaluation system of youth polici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about the problem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the participants suggested to allocate more marks to “appropriateness of the outcome indicator” ; to enhance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representative projects for the realms and participation of the youth; to improve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higher motivation to the public servants; and to enhance the door-to-door consulting service of the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his, it is argued to extend the subjects of the evaluation to the low tie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o enhance the recipient evaluation such as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parents and adolescents. As the local government lacks of the understanding about the evaluation indicator of the representative project, it is proposed to clarify and simplify the indicators. Th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policies is to prioritize feasible policies, which results in the high level of the rigidity of budgetary allocations; thus, the performance of policies is highly likely to be dependent on the budget that each local government is given. Considering the prediction above, this study suggests to conduct the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each group by controlling the size of the region of the local government

As the person in charge is frequently changed in the public sector, it is integral to conduct the regular training on how to prepare reports to the public servants.

Keyword : Evaluation of the Youth Policies, AHP, Feedback System, Quantitative Assessment, Qualitative Assessment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 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Ⅶ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Ⅶ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Ⅶ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Ⅲ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재중 · 재미동포
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정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 · 이장주 · 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 · 중 · 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 · 박인영 · 이호경 · 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O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 · 백혜정 · 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 · 최정원 · 강지명
-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 · 최정원
-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 · 정은진 · 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 · 정의철
-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 · 강경균
-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 · 김기현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 · 정은진 · 조혜영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 정은진 · 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 · 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 · 유한구 · 채창균 · 오승근 · 김윤나 · 한영근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 · 김경준 · 강경균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 · 황여정 · 정윤미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모상현 · 정은주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16-R40 가출청소년 보호 ·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 · 김승경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 · 백혜정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 · 오해섭 · 윤철경 · 김경준 · 최용환 · 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운주 · 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 · 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 · 모상현 · 유성렬 · 김진석 · 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 · 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 · 김지경 · 이운주 · 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 · 박선영 · 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 · 성은모 · 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장근영 · 김지경 · 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 · 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
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Ⅶ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보고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인 쇄 2016년 12월 30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다원기획 전화 044)865-811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연구보고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073
ISBN 979-11-5654-107-3